

월간

재정포럼

2017. April_Vol.250

4월호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권두칼럼

경제논리 vs 정치논리/ 박종규

현안분석

일본 법인세제 개혁의 시사점/ 김학수

OECD 국가별 재정정책의 경기대응성 추정 및 영향 분석/ 최승문

정책토론포트

제51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 개최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캐나다, 조세회피 방지 권고안 도입계획 및 성과 발표 외

CONTENTS

권두칼럼

경제논리 vs 정치논리 · 박종규 02

현안분석

일본 법인세제 개혁의 시사점 · 김학수 06

OECD 국가별 재정정책의 경기대응성 추정 및 영향 분석
· 최승문 27

정책토론포트

제51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 개최 47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캐나다, 조세회피 방지 권고안 도입계획 및 성과 발표 외 56

정책흐름

1/4분기 재정조기집행 목표 초과달성 83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의결 85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선 방향 논의 93

「2017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수립 96

지출효율화로 4대 핵심분야에 중점 투자 97

경제논리 vs 정치논리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재정학회 회장

“경제문제는 경제논리로 풀어야 한다!” IMF 경제위기 이전(以前)이었던가, 꽤 오래전에 한바탕 유행했던 화두(話頭)였다. “경제문제에 정치논리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말도 항상 같이 따라다녔었다. 경제학자가 아닌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보아도 ‘경제문제는 경제적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는 말의 의미만큼은 충분히 납득할 만했었다. ‘표(票) 계산’을 염두에 두는 정치논리로 경제문제를 다루려다가 엉뚱한 부작용을 빚어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선거가 몇 차례 지나가면 표를 얻고 잃는 것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부터 쉽게 사라져버리지만, 그 과정에서 경제논리를 무시한 채 약속되고 결정된 정책은 비용과 편익, 경제 전체적 후생, 부담의 귀착, 정책 대상자들의 행태 변화 등등의 여러 측면에서 오랫동안 지속되는 뚜렷한 자국을 남긴다.

경제논리만으로 풀리지 않는 재정문제

그런데 정말, 모든 경제문제는 경제논리로만 접근해야 하는가? 정치논리는 언제나 배제되어야 하나? “경제문제는 경제논리로 풀어야 한다”는 말이 처음 나왔던 이후 지금까지 거의 사반세기 동안, 경제정책이 만들어지고 시행되고 평가되는 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봤던 나로서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이 세상에 순수한 경제논리로 풀리는 경제문제가 과연 있거나 한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다. 다른 분야라면 몰라도 재정문제만큼은 경제논리만으로는 좀처럼 풀리지 않는 것 같다. 훌륭한 경제논리의 단단한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어려운 경우가 다반사(茶飯事)다.

재정정책은 순수한 경제문제라기보다는 본질적으로 하나의 정치적 과정(political process)에 가깝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세금문제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났고 의회가 생겨났으며, 세금문제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탄생하지 않았는가?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는 재정문제 때문에 정

권이 바뀌거나 여야의 의석 비율이 달라지곤 한다. 이처럼 본질적으로 정치문제인 재정정책을 순수한 경제논리로 풀려한다면 성공을 기약(期約)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론적으로 아무리 옳고 자명(自明)한 내용이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구현(具顯)되기 위해서는 경제논리만 내세워가지고는 역부족일 때가 많다. 경제논리 운운(云云)하는 논거만으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다. 경제논리만으로는 재정정책을 경제이론이 말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꿀 수 없으며, 경제 전체를 최적(最適)의 방향으로 이끌 수도 없다. 가까운 예를 들어보자.

박근혜 정부는 임기 첫해인 2013년, 근로자 소득공제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다. 경제논리로 따지자면 그것은 물론 만시지탄(晩時之歎)의 당연한 방향이었다. 그러나 2013년의 상황은 상용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5년이라는 사상 최장기간 동안 정체(停滯)를 지속¹⁾하던 시기였다. 생산성에 비해 월급이 오르지 않았던 것은 비단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국한된 얘기가 아니었다. 햇수로 5년 동안이나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았던 것은 개발연대 이후 우리 경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런 답답한 세월을 살고 있던 마당에, 새로 출범한 정부가 첫 작품이라며 내놓았던 세법개정안이 난데없이 세 부담 증가를 요구하는 것이었으니, 근로자들로서는 심하게 반발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근로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국정수행 지지도가 큰 폭으로 하락하자 박근혜 정부는 부랴부랴 세법개정안을 수정하였고, 그러한 혼선(混線)은 당초 의도와 정반대로 면세자 수를 크게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조세이론만을 믿었을 뿐, 정치·사회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했던 것이 패착의 원인이었다.

경제학자, 정치·사회의 흐름을 제대로 읽어야

박근혜 정부는 그다음 해에도 많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공무원 연금 및 사학연금법을 개정하였지만 필요한 만큼의 강력한 개혁이 되지 못했었다. 만약 임기 첫해이던 2013년에 공무원·사학연금을 개정한 뒤 그 다음 해에 근로자 소득공제를 축소시켰더라면 어땠을까? 출범 직후의 여세를 몰아 공무원·군


.....
**경제논리만으로는
 재정정책을
 경제이론이 말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꿀 수 없으며,
 경제 전체를
 최적의 방향으로
 이끌 수도 없다.**

1) 상용근로자들의 전 산업 실질임금의 연평균 증가율은 1997년 4분기~2002년 4분기에 3.6%, 2002년 4분기~2007년 4분기에 3.3%였다가 2007년 4분기~2012년 4분기에는 -0.46%로 갑작스럽게 정체되었다. 참고(拙稿)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임금(賃金) 없는 성장과 기업저축의 역설』, KIF 연구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2013.12 참조

.....
**부디 납세자들의 여건과
 국민의 심정을 충분히,
 그리고 정확하게 헤아려,
 개혁 어젠다의 강약과
 순서를 잘 설계하기 바란다.**

인·사학연금을 보다 강력하게 개편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다음 해에 공제가 축소되어 반발하는 근로자들에게 ‘공무원도, 군인도, 선생님들도 작년에 이미 부담을 늘였잖습니까?’라며 양해를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공무원, 군인, 선생님들이 부담을 감수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더라면, 근로자들도 소득공제의 축소에 대해 것처럼 심하게 반발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더욱 바람직하게는, 소득공제 축소에 앞서 법인세를 인상했더라면, 또는 소득공제를 축소하던 당시에라도 조만간의 법인세 인상을 약속했더라면, 근로자들의 반발은 더 더욱 누그러졌을 것이다.

경제문제는 경제논리로 풀어야 옳지만 재정정책에 관한 정치논리를 완전히 무시해서는 일을 성사(成事)시키기 어렵다. 정치의 압력에 굴복하여 붓을 꺾어도 좋다는 얘기도, 학문을 굽혀 세상에 아부하는 곡학아세(曲學阿世)를 인정하자는 것도 아니다. 정치·사회에 무관심해서는 안 되며, 정치·사회의 흐름을 잘 타야 한다는 말이다. 일찍이 존 메이나드 케인스가 “훌륭한 경제학자는 역사에도 밝아야 하고 정치와 사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잘 알아야 한다”고 말했던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다음 달에 출범할 새 정부는 조세정책의 여러 측면에서 많은 중요한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 우리 경제의 장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변화라 하더라도,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뚫고 그것을 실현시키기란 쉽지가 않을 것이다. 부디 납세자들의 여건과 국민의 심정을 충분히, 그리고 정확하게 헤아려, 개혁 어젠다의 강약(強弱)과 순서를 잘 설계하기 바란다. 경제이론만을 앞세우다가 나무를 보되 숲은 보지 못하는, 그러다가 일을 그르치는 우(愚)를 더 이상 거듭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현안분석 |

■ 일본 법인세제 개혁의 시사점

김학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OECD 국가별 재정정책의 경기대응성 추정 및 영향 분석

최승문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일본 법인세제 개혁의 시사점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hagskim@kipf.re.kr)

I. 서론

2014년 1월 다보스 회의에서 아베 총리는 “법인에 적용되는 세율은 국제적 추이에 비추어 경쟁적인 형태로 바꾸어야 한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 해 6월 일본은 세제조사회(税制調査會)¹⁾를 중심으로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법인세제를 개혁하기 위한 기본 방향²⁾을 설정했다. 국제회의에서 아베총리의 언급과 함께 세제조사회의 조사·심의 및 법인세제 개혁안 발표는 높은 세율로 과세하고 있던 일본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인세율 인하가 절실했다는 점을 방증한다.

이러한 발표가 있기 전인 2013년에 일본 정부는 한 차례 법인세 세율을 인하한 바 있다. 2012년까지 중앙정부 법인세율은 지방정부 법인세분 공제 후 27.99% 수준이었으며 지방정부 법인세율은 11.55%로 합계 39.54%의 법인세율로 법인소득이 과세되고 있었다. 2013년 법인세율 인하로 중앙정부 법인세율은 26.17%로 낮아졌고 지방정부 법인세율은 10.82%로 인하되어 합계 36.99%로 약 2.55%p 인하됐다. 이뿐만 아니라 2015년과 2016년에 추가적으로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하면서 세율 인하를 통한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5년 일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법인세율은 각각 22.55%와 9.56%로 인하되어 총법인세율은 32.11%로 낮아졌다. 이어 2016년에도 일본은 지방정부 법인세율을 7.38%로 2.16%p 인하하여 총법인세율은 30%를 하회하는 29.97%로 낮아졌다.³⁾ 결과적으로 일본의 법인

1) 일본 세제조사회는 내각총리대신의 자문에 따라 조세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해 내각부에 설치된 민간 전문가와 관계 관료들로 구성된 위원회이다(内閣府本府組織令 第三十一条 [平成十二年六月七日政令第二百四十五号]).

2) 税制調査會, 『法人税の改革について(案)』, 2014.6.

3) 일본 중앙정부의 법인세율에서 지방정부 법인세율의 일정비율만큼 공제되기 때문에 중앙정부 법인세율을 인하하지 않고 지방정부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중앙정부 법인세율이 다소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방식은 미국에서도 사용하고 있다.

세율은 2012년 39.54%에서 2016년 29.97%로 총 9.57%p나 낮아졌다.

이러한 일련의 법인세 개혁조치에 앞서서 일본 내각부의 세제조사회가 실시한 사전 조사 및 심의 결과보고서의 형태로 발표된 ‘법인세 개혁(안)’에는 두 가지 목적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목적은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 법인세율이 기업들의 입지선택에 저해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다른 목적은 법인세 부담구조를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의 형태로 개편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흑자기업들이 재투자를 원활히 수행함으로써 보다 성장 지향적으로 만들고 새로운 산업이나 창업에 도움이 되는 기업경영환경을 만들면서 동시에 세수보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법인세제 개혁의 목적은 현재 우리정부가 추진해오고 있는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라는 조세원칙 구현을 위한 비과세감면 축소와 매우 유사하다. 이러한 법인세율 정책방향은 우리나라와 일본뿐만 아니라 여러 주요 선진국에서 추진되어 오고 있기도 하다.

이 글은 일본 세제조사회에서 발표한 법인세제 개혁안과 그러한 개혁안을 도출하면서 수행된 세제조사의 조사·심의 결과 및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법인세제 정책방향과 비교검토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세제조사의 결과보고서인 『법인세 개혁에 대하여(안)(法人税の改革について(案))』에 소개된 분석결과와 분석방법은 우리나라에서 수행하고 있는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및 조세특례제도에 대한 심층평가 연구와 매우 유사하기도 하지만 다소 다른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수행하고 있는 개별제도에 대한 심층평가 작업들이 의미 있는 작업이지만 한편으로는 비효율적인 측면도 있다. 일본 세제조사의 결과

“
이 글은 일본 세제조사회에서 발표한
법인세제 개혁안과
그러한 개혁안을 도출하면서 수행된
세제조사의 조사·심의 결과 및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법인세제
정책방향과 비교검토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보고서에 대한 일독은 우리나라 정책형성 과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개편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II. 최근 일본의 법인세제 개혁

1. 일본 법인세 개혁의 취지

2014년 상반기에 발표된 일본 세제조사의 결과보고서는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낮은 세율이 모든 산업분야에 적용되게 함으로써 새로운 산업의 성장 및 신설법인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율 인하 및 과세베이스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기업이 국가를 선택하는 시대에 일본의 기업 입지 경쟁력을 향상시켜 국내에 성장산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율 인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일본 세제조사의 결과보고서는 물론 법인세율 인하만으로는 기업 입지 경쟁력이나 수익성 제고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기업지배구조 개선, 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대응책 등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높은 법인세율이 해외 직접투자

“
**높은 법인세율이
 해외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만들고
 양질의 고용기회를
 일본 국내에 확보하기 위해서
 법인세율 인하는 불가결한 정책과제라고
 일본 세제조사회 결과보고서는
 명확히 강조하고 있다.**
 ”

를 유치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만들고 양질의 고용기회를 일본 국내에 확보하기 위해서 법인세율 인하는 불가결한 정책과제라고 일본 세제조사회 결과보고서는 명확히 강조하고 있다.

많은 법인세율 인하 국가들이 법인세율 인하와 함께 세원 확대를 위한 노력을 했듯이, 일본 세제조사회 결과보고서는 일본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 구조를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의 성장 지향적 형태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동 보고서는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의 법인세 부담 구조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법인 간의 과세 공평성뿐만 아니라 기업 의사결정에 초래될 조세왜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조세특별조치(우리나라의 조세특례제도)와 같은 정책세제의 항구화 경향을 고려하여, 그 필요성이나 효과를 항상 제로베이스에서 검증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 법인세율이 전체 법인세율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 법인과세를 전면 재검토하고 응익과세의 원칙하에서 모든 기업들에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 동 보고서에 강조되어 있다.

일본 세제조사회 결과보고서(2014)는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와 일본 인구 감소라는 정책 환경변화

에 대응하기 위해 오랜 기간 법인세제 개혁의 필요성은 인식되어 왔으나 다음의 요인들에 의해 충분히 검토되거나 개혁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법인세 개혁의 제약요인으로 일본의 재정여건, 조세특별조치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상충, 법인세 개혁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의 어려움을 적시하고 있다.

먼저 GDP 대비 국가채무가 200%를 상회하는 일본 재정상황은 세수확대를 통한 재정재건과 법인세제 개혁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의 양립을 어렵게 할 수 있으나 법인세 개혁에 의해 초래되는 법인세수의 감소를 짧은 기간 안에 보완하려는 단기적 세수중립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다른 세목의 세수 확보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동 보고서는 명시하고 있다.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단기 세수감소는 일정 부분 감수하고 법인세 내에서의 세수중립을 추구하기보다는 법인세율 인하라는 항구적 감세조치에 대응하는 항구적인 재원을 준비하는 일환으로 소비세와 같은 다른 세목의 세수확대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제약요인인 조세특례조치의 항구화 및 기득권화에 따른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이해상충은 정치적 리더십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기본방향을 밝히고 있다. 동 보고서는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의 기본 원칙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세율인하에 대응하는 과세베이스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도의 구조적 검토 작업이 수행되어야 하나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해 그러한 구조적 재검토가 수행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일본의 아베 노믹스 추진을 통해 20년 이상 지속되어온 긴 정체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인구 고령화 및 인구 감소라는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다시 아시아 및 세계를 리드하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 단기적 이해상충을 극복하고 법인세 인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하

고 있다.

마지막 제약요인은 일반 국민들이 법인세 인하와 같은 세제개혁에 대한 우려로 인해 충분히 논의되거나 추진되지 못했던 점은 현재 일본 경제가 직면한 위기요인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극복되어야 한다고 동 보고서는 설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법인세 개혁은 국민전체의 이해를 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높은 법인세율에 의한 기업의 세부담이 가계로 전가됨에도 불구하고, 법인세율 인하가 가계의 세부담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일반 국민들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세계경제 구조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위기감을 공유하면서 법인세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2. 일본 세제조사회의 구체적 개혁 방안

일본 세제조사회 법인과세 논의(discussion) 그룹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일본경제의 선순환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 법인세율의 인하가 불가결하므로 법인세율을 25% 수준까지 과감하게 낮추어야 한다는 기본 방침과 함께 다음의 다양한 과세베이스 확대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 세제조사회는 기본적으로 세율 인하에 따른 단기적 세수 감소는 일정 부분 감수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조세특례제도과 같은 법인관련 조세특별조치를 재검토하고 결손금 이월공제제도나 익금불산입제도의 재검토와 함께 지방정부의 법인과세에 대한 검토의견을 내놓았다. 더불어 항구적이며 넓은 세원 확충 방안도 제시하였다.

가. 조세특별조치의 재검토

특정 산업지원과 같은 정책목적의 특례제도들은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성과 효과성을 검

“
**세율 인하와 함께 기존 산업에 대한
 편향적 정책지원을 축소해야 한다는
 일본 세제조사회의 정책방향은
 기존 투자에 대한 지나친
 세제상의 혜택으로 새로운 산업의
 생성 및 성장을 위축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한
 정책의지로 볼 수 있다.**
 ”

중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한정해야 함이 동 보고서에 강조되고 있다. 세율 인하 시, 특정 산업에 국한되는 우대조치는 가능한 한 폐지 또는 감축해가며 기존 산업에 대한 편향적 정책지원을 시정함으로써 새로운 산업이 생성 및 성장하는 데 우호적인 경영 환경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되어 있다. 이처럼 세율 인하와 함께 기존 산업에 대한 편향적 정책지원을 축소해야 한다는 일본 세제조사회의 정책방향은 기존 투자에 대한 지나친 세제상의 혜택으로 새로운 산업의 생성 및 성장을 위축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한 정책의지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세율 인하는 새로운 투자에 대한 세후 수익률 제고 효과로 신규투자를 촉진할 수 있지만 기존에 투자한 자본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한 과세도 완화해 주기 때문에, 기존 산업에 대한 조세특별조치에 의해 특정 기존 산업에 국한되는 세제상의 우대조치는 해당 산업의 세후 수익률을 더욱 높아지게 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존 산업의 투자 수익률은 새로운 산업에 대한 신규투자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세율 인하로 인해 촉진될 새로운 투자가 새로운 산업의 생성 및 성장에 투입되기보다는 세후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존 산업으로 쏠리는 문제점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특정 기존 산업에 주어지

“
일본 세제조사회는 「조세특별조치의 적용 상황의 투명화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적용 실태를 조사하고 세 가지의 기준으로 법인관련 조세특별조치들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던 조세특별조치들을 폐지 또는 감축해야 한다는 점을 일본 세제조사회가 제기한 것이다.

일본 세제조사회는 「조세특별조치의 적용 상황의 투명화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적용 실태를 조사하고 다음의 세 가지의 기준으로 법인관련 조세특별조치들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첫 번째 기준은 일본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기본적으로 공평과세, 조세중립성, 세제 간소화라는 일반적 조세이념에 반하는 조세특별조치들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도입된 조세특별조치가 항구화되며 정책수단으로 작동하기보다는 조세왜곡을 한층 더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일몰 도래 시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일몰 도래 시 원칙적 폐지 기준은 2013년에 도입된 우리나라의 조세특례제도 정비의 기준과 유사하다.⁴⁾ 또한 일본 조세특별조치 투명화법⁵⁾에 따라 일몰기한이 없는 정책세제의 일몰기한을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그 효과성과 정책 타당성의 검토가 제안되고 있다. 끝

으로 동 보고서는 조세특별조치는 불특정 다수의 활용을 전제로 도입되었으나 소수의 법인에 대다수의 조세혜택이 귀착되거나 소수의 기업만 활용하는 경우 폐지를 포함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실시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 법인세 관련 조세특별조치 재검토 기준>

- (기준 1) 일몰 연장을 통한 정책세제의 항구화는 정책수단으로서 기능하기보다는 한층 더 조세왜곡을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일몰 도래 시 원칙적으로 폐지
- (기준 2) 일몰기한이 없는 정책세제의 경우, 정책수단으로서의 효과를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몰기한을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검증을 실시
- (기준 3) 불특정 다수의 정책세제 활용을 전제로 도입하였으나 상위 10개 법인이 전체 혜택의 80%를 초과하거나 수혜 법인이 10개 미만인 정책세제의 경우 폐지를 포함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실시

이러한 재검토 기준들을 이용하여 일본의 조세특별조치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꼭 필요한 제도라고 판단되는 연구개발 지원세제도 과거 연구개발 지원세제의 확대 과정을 고려하여 재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일본 세제조사회의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연구개발 지원세제의 중요성은 매우 크지만 과거 세율 인하를 시도했던

4) 우리나라의 조세지출제도 정비 원칙은 2013년 3월 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잘 나타나 있다.
 5) 특정한 정책목적 위해 기업들의 과세 공평성과 조세의 중립성을 훼손하면서 도입된 기업관련 조세특별조치가 한번 도입되면 항구화되고 기득권화되는 문제점을 보였다. 또한 특별조치들이 정책수단으로 작동하기보다는 단순한 보조금의 형태로 작동하여 이해관계자를 형성하고 개선하지 못하는 힘으로 작동하는 현상은 일본에서도 나타났다. 따라서 일본의 조세특별조치 투명화법은 특별조치들의 존속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서 기업관련 특별조치 항목별로 적용 실태를 분석하고 제도의 적절성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공식 명칭은 「조세특별조치의 적용상황의 투명화 등에 관한 법률」이며 2010년 최초로 도입되었고 2013년 3월에 최초의 투명화 관련 보고서가 발표된 것으로 파악된다.

2003년(평성 15년) 세제개편 과정에서 법인세율 인하가 보류되면서 대안적으로 총액방식의 연구개발 지원제도가 큰 폭으로 확충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향후 법인세율 인하 시 지원제도의 혜택을 축소하고 지원 대상을 중점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더불어 총액방식보다는 증가분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연구개발 지출을 확대할 인센티브로 작용하도록 하고, 여러 국가에서 지원 대상이 되는 시험연구비를 제한하고 있는 사례를 참고하여 지원대상 비용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나. 결손금 이월공제제도의 재검토

9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는 결손금 이월공제제도는 기업의 영속성을 고려하여 소득과 손실을 보다 대칭적으로 취급하는 법인세제로 개편하기 위해서 이월공제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나 안정적인 법인세수 확보를 위해서 공제 상한액을 현행 보다 낮게 설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기업은 활동기간을 정하지 않고 영속적으로 기업 활동을 수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은 매년 과세하지만 결손이 발생한 경우 장래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기업행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보다 조세중립적인 형태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이월공제기간을 보다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해서 연간 공제 상한액을 2014년 기준 현행 80%보다 낮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자본금 1억엔 이하의 중소기업은 소득의 전액까지 공제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 수취배당금 등의 익금 불산입 제도의 재검토

법인이 수취하는 배당금의 익금 불산입 한도는

“
**법인이 수취하는 배당금의 익금 불산입 한도는
 기업 지배관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자산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익금 불산입 제도의 대상이 될
 배당의 범위나 익금 불산입 비율도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기업 지배관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자산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익금 불산입 제도의 대상이 될 배당의 범위나 익금 불산입 비율도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유 주식비율이 25% 이상의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전액을 익금 불산입하고 소유 주식비율이 25% 미만인 기업의 경우 배당금의 50%를 익금 불산입하고 있으나 기업 지배관계의 목적 여부 또는 자산운용 목적의 여부는 익금 불산입 제도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에 기초하여 익금 불산입 비율이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 지배관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경영 형태의 선택이나 기업 그룹의 구성에 세제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배당 수익을 과세대상으로부터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자산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현금, 채권 등 다른 자산운용 수단들 사이의 기업선택이 왜곡되지 않도록 적절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본 세제조사회의 검토의견이다. 이러한 검토의견은 순수한 자산운용 목적에 의해 발생한 수취배당수익은 법인과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수동적 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과세를 강화함으로써 기업 본연의 기업경영활동을 강조하는 세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
**자본금 1억엔 이하인
 중소기업의 800만엔 이하의
 소득에 경감세율 19%가 적용되지만
 고액의 소득을 얻으면서
 중소기업 전용 우대세제를 받고 있는
 기업이 존재하므로 중소기업의 대상을
 축소하고 경감세율 적용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이 제시됐다.**
 ”

라. 감가상각 제도의 재검토

기계장치 등의 감가상각방법으로 정액법과 200% 정률법⁶⁾ 사이에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러한 감가상각제도 선택의 유연성은 자산의 사용 실태에 맞춘 적절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도록 하는 제도 본연의 목적과는 달리 손익 상황에 따른 절세 효과의 수단으로 오남용되고 있으며 저금리, 기업의 자금 잉여의 경영환경에서는 정률법에 의한 경영상의 메리트는 거의 없는 것으로 일본 세제 조사회는 평가했다. 또한 과세베이스의 확대를 위해 독일은 2008년 법인세 개혁을 통해 정률법을 폐지하고 정액법으로 단일화했으며 IFRS 도입이나 사업의 글로벌화에 따라 그룹내 회계의 일관성 확보 등을 배경으로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환원시키는 움직임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경영환경 변화와 오남용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감가상각방식을 정액법으로 통일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마. 지방세 손금 산입의 재검토

지방정부가 과세하는 법인 사업세나 고정자산

세 등은 소득으로부터 납부하는 세금과 달리 사업 행위에 관련해 발생하는 세금이지만 손금 산입함으로써 국세 수입의 과세베이스에 연계되어 있고 다른 지방정부의 세수입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동 결과보고서는 법인부담 지방세를 손금 불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법인세율 인상은 국세 수입의 감소로 연계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지방교부세의 재원을 축소시키며 법인 주민세의 과세베이스도 축소되도록 과세체계가 설계되어 있어서 기업 유치를 위해 지방정부가 특구제도 등을 이용하여 법인사업세나 고정자산세를 감면하는 경우 국세 부담이 확대되며 지방세 경감효과가 상쇄되게 된다. 2008년 세제개편을 통해 지방세인 영업세를 손금 불산입하도록 한 독일의 사례를 인용하며 일본의 지방세 손금 산입을 재검토하여 불산입하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일본 세제조사회는 제안했다.

바. 중소기업 과세의 재검토

자본금 1억엔 이하인 중소기업의 800만엔 이하의 소득에 경감세율 19%가 적용되지만 고액의 소득을 얻으면서 중소기업 전용 우대세제를 받고 있는 기업이 존재하므로 중소기업의 대상을 축소하고 경감세율 적용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이 제시됐다. 기업규모를 정의함에 있어서 자본금 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중소기업의 범위를 좁혀 실제 지원이 필요한 기업으로 대상을 좁혀야 한다는 것이다. 동일한 규모의 소득에는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므로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하는 경우 경감세율의 유지 필요성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또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사이의 세부담

6) 200% 정률법은 초년도 상각액이 정액법 상각액의 2배가 되도록 상각률을 설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며 법인세율 인하에 의해 법인사업자가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게 될 경우 법인사업자를 선호할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조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동족회사⁷⁾의 내부유보에 대한 유보금 과세는 중소기업의 경우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 중소기업의 내부유보에 대한 과도한 유인을 축소하기 위해서 법인세율 인하와 더불어 중소기업도 과세대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세계조사회는 주장했다.

사. 공익법인 과세 등의 재검토

공익목적의 사업과 관련되는 수익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과세되는 공익법인과 협동조합 등의 수익사업의 과세대상 소득에는 중소기업과 같은 경감세율이 적용된다. 공공서비스의 제공 주체가 다양화되어 법인의 형태에 따라서 공익사업을 정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우리나라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산입제도와 유사한 간주기부금제도에 의해 일정 액수까지는 손금 산입하도록 하는 등 당시 시행되던 공익법인에 대한 특례제도는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어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본 세계조사회의 의견이다. 공익법인 등의 수익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는 경감세율로 과세하는 한편 간주기부금제도에 의해 추가적 혜택을 주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는 제한적 열거방식으로 규정되어 왔으나 대가를 얻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과세하고 비과세 대상의 사업의 요건을 정해서 과세대상 사업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공익법인의 수익사업 범위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공익법인이 실제 공익 목적의 사업

“
공익법인의 수익사업 범위는
제한적 열거방식으로 규정되어 왔으나
대가를 얻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과세하고
비과세대상의 사업 요건을 정해서
과세대상 사업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공익법인의 수익사업 범위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을 실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아. 지방정부 법인사업세의 재검토

지방정부 법인사업세의 경우 자본금 1억엔을 초과하는 대기업들에만 부과하고 있는데 다수의 법인이 법인사업세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지방세의 특성상 응익원칙에 따라 그 지역의 행정 서비스를 향유하는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일본 세계조사회의 보고서는 제언하고 있다. 다만 창업회사 등에 대한 우대조치는 유지할 필요가 있으나 자본금 1억엔 이하의 기업들도 과세대상 법인으로 포함해야 하며 지방세 본연의 특성에 맞도록 과도하게 법인소득을 과세베이스로 삼고 과세하기보다는 부가가치 등 기업의 외형이 클수록 해당 지방행정서비스의 혜택을 많이 받는 기업으로 보고 응익원칙에 따라 기업이 지방 법인사업세를 부담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주민세나 고정자산세의 경우도 이러한 응익원칙의 관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7) 일본의 동족회사는 대주주와 그 가족 등의 특수 관계인의 소유주식 비율이 50%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
**일본은 기존 6%이던
 지방법인세소득할 세율을
 2016년부터 3.6%로 2.4%p 인하했으며
 2016년 국세분 법인세율은
 23.4%로 인하고
 2018년에 0.2%p 추가 인하하여
 23.2%의 세율로 과세할
 계획이 발표됐다.**
 ”

자. 기타 검토 사항

세제조사회에서 발표한 법인세 개혁안에는 여타 세목에 대한 검토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동 보고서는 법인세뿐만 아니라 소득세, 소비세, 재산세 등을 포함한 세제 전체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법인소득과세는 개인과세 이전 단계의 과세이므로 법인과세를 완화하는 경우 개인단계의 금융소득과세 등 자본소득 과세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체세원의 발굴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안됐다. 일본에서는 실시하지 않고 있는 법인세 최저한세제도나 국제금융위기 이후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영국이 도입한 은행세⁸⁾ 등을 법인세 인하의 대체세원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OECD BEPS 프로젝트에 대응하여 외국 자회사 배당의 익금 불산입제도에 의해 이중 비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조세제도에 대

한 폭넓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4. 입법 현황

가. 세율 인하

2014년 하반기 일본 세제조사회는 중장기적으로 중앙 및 지방 법인세 실효세율⁹⁾을 25% 수준까지 인하할 것을 제안했다. 2014년 말 의회에서 결정된 2015년 법인세 국세분 세율은 23.9%로 이전보다 1.6%p 인하되었고 지방 법인사업세 소득할 세율은 6.0%로 1.2%p 인하됐다. 2015년 말 일본 의회는 다시 2016년 이후 지방세율 중심으로 법인세율 인하계획을 결정했다. 기존 6%이던 지방법인세소득할 세율을 2016년부터 3.6%로 2.4%p 인하했으며 2016년 국세분 법인세율은 23.4%로 인하고 2018년에 0.2%p 추가 인하하여 23.2%의 세율로 과세할 계획이 발표됐다.

일본 법인세제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통해 국내의 고부가가치 산업이 해외로 이전하지 않고 국내에 남아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해외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향후 지방세율을 포함한 법인세율을 25%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일본 세제조사회의 제안이 상당부분 입법에 반영되어 2017년 현재 29.87% 수준으로 법인소득이 과세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소폭 인하된 29.74%로 과세될 예정이다.

8) 2011년 최초 도입된 영국의 은행세(bank levy)는 영국 내에서 운영 중인 은행, 금융그룹 등의 장단기 총부채를 과세베이스로 삼고 2016년 0.09~0.18%의 세율로 과세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은행세 세율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0.05%~0.1%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을 2015년 하반기에 발표한 바 있다.
 9) 일본의 지방법인세는 국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할(지방법인특별세 포함), 부가가치와 자본의 규모를 과세베이스로 삼는 외형표준과세로 이루어져 있다.

〈표 1〉 일본 법인세율 인하 추이

(단위: %)

	2014		2015		2016~2017	2018
중앙정부 법인세율	25.5	⇒	23.9	⇒	23.4	23.2
지방 법인사업세소득할 (지방법인특별세합)	7.2		6.0		3.6	3.6
중앙·지방의 법인세 실효세율	34.60		32.11		29.87	29.74

주: 중앙·지방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법인소득을 과세베이스로 삼는 중앙정부 법인세율과 지방 법인사업세 소득할의 합계 세율에 자본금 1억엔 초과 법인들이 부담하는 외형표준과세(부가가치 및 자본규모 할)를 합산한 결과임
출처: 일본 재무성, 『平成 28 年度稅制改正の大綱の概要』, p. 2.

지방법인세의 부담을 축소하면서 지방법인세의 구성은 법인소득을 과세베이스로 삼는 소득할 과세 비중을 축소하고 응익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와 자본 규모를 과세베이스로 삼는 외형표준과세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일본 세제조사회의 제안도 상당부분 입법된 것으로 파악된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부가가치와 자본의 규모와 같은 외형표준과세의 2016년 세율을 2014년 대비 2.5배 정도 확대하면서 그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지방법인사업세 소득할 세율은 2014년 대비 2016년 약 1.9~3.6%p 인하했다.

2014년 말에 발표된 2015년(평성 27년) 세제개혁의 대강에는 부가가치할과 자본할 세율을 각각 0.96%와 0.4%로 인상하는 것으로 발표했으나

2015년 말에 확정된 2016년(평성 28년) 세제개혁의 대강에는 각각 1.2%와 0.5%로 인상하는 것으로 발표했다. 이와 반대로 사업세 소득할의 세율은 2016년부터 추가적으로 더욱 인하하며 지방법인세 부담의 구성을 외형표준과세 중심으로 개편했다.

이러한 국세 및 지방세분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 일본 기업들이 부담하던 명목 법인세율 합계는 2014년 이전 35% 수준에서 2016년 29.87% 수준으로 인하됐으며 2018년부터 소폭 추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아베정부에서 추가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일본 세제조사회의 세율 인하 의견이 발표된 이후 상당한 수준의 세율 인하와 함께 지방세 과세원칙인 응익원칙의 구현을 위해서 외형표준과세를 강화하고

〈표 2〉 일본 지방 법인세율 인하 추이

(단위: %)

		2014	2015	2016~
부가가치할		0.48	0.72	1.2
자본할		0.2	0.3	0.5
소득할	연 400만엔 이하 소득	3.8(2.2)	3.1(1.6)	1.9(0.3)
	연 400만~800만엔 이하 소득	5.5(3.2)	4.6(2.3)	2.7(0.5)
	연 800만엔 초과 소득	7.2(4.3)	6.0(3.1)	3.6(0.7)

주: 1. 소득할 법인세율의 괄호 안의 숫자는 지방법인특별세 등에 관한 잠정 조치를 적용한 후의 세율임
2. 2015년 세율은 2014년 말 발표된 2015년(평성 27년) 세제개편 사항이고 2016년 세율은 2015년 말 발표된 평성28년(2016년) 세제개편 사항임
출처: 일본 재무성, 『平成 27 年度稅制改正の大綱』, p. 54.
『平成 28 年度稅制改正の大綱』, p. 42.

지방법인사업세 소득할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는 세제조사회의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세입기반 확대를 위한 제도적 보완

1)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의 축소

2014년 말 결정된 2015년 세제개정안에서는 당시 소득의 80%로 제한되어 있던 결손금 이월공제한도를 2015년부터 65%로 낮추고 2017년부터 50%로 낮추는 것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2015년 말 결정된 2016년 세제개정안에서는 결손금 이월공제한도를 2016년 소득의 60%로 추가 인하하고 이후 매해 5%p씩 추가적으로 축소하여 2018년부터 50%로 낮추는 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했다. 또한 이월기간도 과거 9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면서도 법인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방안의 일환으로서 결손금 이월공제한도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세제조사회의 검토의견이 반영됐다.

2) 수취배당금 등의 익금 불산입 제도 개선

기업 지배목적이 아니고 자산운용의 목적에 따라 발생한 수취배당금의 경우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일본 세제조사회의 개선방향은 2015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파악된다. 과거에는 기업 지배목적 여부에 대한 구분 없이 관계 법인주식 소유비율이 25% 이상인 경우 해당 법인에서 발생한 배당금 등은 100% 익금 불산입되고 이외의 소유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의 50%만 익금 불산입되었으나 소유주식비율이 5% 이하인 비지배적목적의 주식 등에서 발생한 배당금의 20%만 익금 불산입하도록 개정했다. 또한 100% 익금 불산입할 수 있는 주식 소유비율도 과거 25%에서 전체의 3분의 1로 확대함으로써 과세를 소폭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¹⁰⁾

3) 감가상각방법 일원화

기계장치 및 기구·비품 등을 제외한 건물, 건물부속설비 및 구축물 등의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으로 단일화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기계장치 및 기구·비품 등에 적용되는 감가상각방법은 기존과 동일하게 정액법 또는 정률법 중에서 여전히 선택가능하다.¹¹⁾ 이러한 개정은 2015년 말 발표된 2016

〈표 3〉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축소

	이전	2015년 개정	2016년 개정 이후
공제한도 (중소법인 제외)	소득의 80%	2015년 2016년 ⇒ 소득의 65%	2015년 ⇒ 소득의 65% 2016년 ⇒ 소득의 60% 2017년 ⇒ 소득의 55% 2018년 이후 ⇒ 소득의 50%
이월기간	9년	2017년 이후의 결손금 ⇒ 10년	10년

주: 중소기업은 자본금 1억엔 이하의 법인을 말함
출처: 일본 재무성, 『平成 27 年度税制改正の大綱』, p. 49.
_____, 『平成 28 年度税制改正の大綱』, p. 41.

10) 일본 재무성, 『平成 27 年度税制改正の大綱』, p. 52.
11) 일본 재무성, 『平成 28 年度税制改正の大綱』, p. 41.

년도(평성 28년) 세법개정에서 이루어졌다.

4) 조세특별조치의 재검토

2015년 이후 일본의 여러 조세특별조치들이 앞서 언급한 정비기준에 따라 재검토 및 정비되기도 하였다. 많은 제도들은 요건이 강화되거나 대상을 축소 조정하는 등의 제도 재설계를 통해 일몰이 연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특별상각 및 세액공제제도는 2016년 3월 31일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기준 1’에 따라 일몰기한을 연장하지 않았다. 한편 같은 해 환경 관련 투자 촉진세제의 일몰기한은 2018년 3월 말일까지 2년 연장되었으나 특정 에너지 환경부하저감 추진설비 등에 대한 즉시상각제도는 일몰도래로 폐지되고 차량운반구 등 일부 설비의 경우 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등 축소·연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해방지시설의 특별상각제도의 경우 동 제도의 활용 기업이 2015년 3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서 ‘기준 3’에 해당하므로 폐지되는 것이 정비기준에 부합하지만 환경보호라는 정책목적을 고려하여 2017년 세법개정에서 적용요건이 다시 강화되면서 2년간 연장됐다. 이외에도 국가전략특구 설비투자 등에 대한 특별상각과 세액공제의 경우에도 그 대상을 축소하여 일몰기한을 2년간 연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자산의 즉시상각 제도와 이월세액공제는 폐지됐으며 상각비율과 세액공제 비율도 축소됐다.¹²⁾ 이외에도 고용촉진 세제의 대상

“
2015년 이후
일본의 여러 조세특별조치들이
앞서 언급한 정비기준에 따라
재검토 및 정비되기도 하였다.
많은 제도들은 요건이 강화되거나
대상을 축소 조정하는 등의
제도 재설계를 통해
일몰이 연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 및 고용대상을 제한하는 등 다양한 제도의 축소 연장이 2015년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¹³⁾

이처럼 일본의 법인세 관련 비과세감면제도가 축소 내지 폐지되는 조치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2016년 세법개정에서 지역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특정 사업과 관련하여 기부금을 출연하는 법인의 경우 기존의 약 30%의 부담 경감에 해당하는 손금산입 조치 외에 추가적으로 기부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사업세와 20%에 해당하는 법인주민세를 세액의 20% 한도로 공제해주는 제도¹⁴⁾를 2016년 세법개정에서 새롭게 도입하기도 했다. 2017년 세법개정에서는 연구개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총액방식의 시험연구비 세액공제율을 기존 8~10%(중소법인 12%)에서 연구개발 활동의 증감비율에 따라 일반법인은 6~12%, 중소기업은 12~17%로 개편했다. 기존 세액공제율의 범위를 연구개발활동 증가율이 높을

12) 기계장치 및 개발 연구기구 비품의 특별 상각률은 50%에서 40%로 인하하고 건물 등 및 구조물의 특별 상각비율은 25%에서 20%로 인하됐다. 또한 기계장치 및 개발 연구기구 비품의 세액 공제율은 15%에서 12%로, 건물 등 및 구조물의 세액공제율은 8%에서 6%로 축소됐다.

13) 일본 재무성 毎年度の税制改正 웹사이트(http://www.mof.go.jp/tax_policy/tax_reform/index.html)에서 찾을 수 있는 각 연도의 ‘세제개정해설(税制改正の解説)’을 참조하기 바란다.

14) 법인사업세와 법인주민세의 세액공제한도는 각각의 세액의 20%로 설정되어 있다. 법인주민세에서 공제하지 못하고 남은 기부금의 경우 기부금액의 10%와 공제하지 못한 기부금 중 작은 금액은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한도는 법인세액의 5%로 설정되어 있다.

“
**일본의 높은 법인세 부담이
 기업의 입지선택에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OECD 평균 법인세율에 보다 근접하도록
 과감하게 세율을 인하했다.**
 ”

수록 더 큰 공제율을 적용받도록 제도를 재설계함으로써 보다 많은 연구개발 활동이 촉진될 수 있는 인센티브로 세제지원이 작동하게 만든 것이다.

Ⅲ. 일본 법인세제 개혁에 대한 평가와 우리나라와의 비교

1. 일본 법인세제 개혁에 대한 평가

최근 일본의 국세 및 지방세분 법인세율 인하를 비롯한 조세특별조치 등의 개혁 목적은 일본 기업들의 해외투자를 국내로 선회화하고 외국기업들의 투자를 보다 많이 유치함으로써 일본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확보하는 데 있다. GDP의 두 배를 초과하는 국가채무와 지속되는 재정적자를 개선해야 하는 재정재건의 문제와 일반 국민들의 법인세 인상에 대한 부정적 시각 등으로 인해 이러한 일본의 법인세제 개혁은 오랜 기간 논의되어 왔으나 시행되지 못했다. 그러나 일본 경제의 활력제고를 위한 양적 완화, 재정지출 확대, 공격적 성장전략을 일컫는 아베노믹스의 ‘세 개의 화살’ 중 공격적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법인세제 개혁이 시행된 것이다.

일본의 높은 법인세 부담이 기업의 입지선택에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OECD 평균 법인세율에 보다 근접하도록 과감

하게 세율을 인하했다. 그러나 재정건전성과 양립할 수 있도록 조세특별조치의 재검토를 통해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며 과세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세부담의 수평적 형평성 및 세제의 간결성을 확대하고자 했다. 오랜 기간 논의되어 왔던 높은 법인세율의 과감한 인하는 경제 활력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정세율의 인하를 통해 한계세율의 인하는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확대를 유인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세수보완대책과 함께 시행됨에 따라 감세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업의 세 부담이 크게 축소되지 않아서 그 효과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도 함께 제기될 수 있다.

일본 재무성에서 발표한 『평성 27년도 세제개혁의 기본원칙(平成 27 年度税制改正の大綱)』에 제시된 2015년 법인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는 약 2,100억엔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약 1.1조엔에 달하는 국세 및 지방세 세율인하는 이월공제제도 축소, 수취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축소, 연구개발감세 축소, 기타 조세특별 조치의 축소와 외형표준과세의 확대로 거의 상쇄되고 국세 2,060억엔과 지방세 40억엔 수준의 세수손실만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수준의 법인세제 개편은 鈴木將賞(2015)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그 효과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2016년 지방법인사업세 소득할의 세율을 대폭 인하는 추가적인 세율 인하는 전년도 세율 인하 효과와 함께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지방정부의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해서 소득할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부가가치할 및 자본할 외형표준과세를 확대한 것은 응익원칙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방세 과세원칙에 부합하도록 재설

제한 것이다. 소득할 지방법인세율의 인하는 법인 과세에 의해 초래되는 조세왜곡을 통한 경제적 효율성 훼손을 완화하는 한편 Bird(2006)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응익원칙에 따른 과세는 자원배분의 왜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외형표준과세를 강화함으로써 지방의 안정적 세원 확보와 경제의 효율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일본의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의 절반 정도를 외형표준과세 강화를 통해 보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立岡健二郎(2015)은 부가가치의 70%는 인건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건비 비율이 높은 업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기업의 외형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자본금 규모가 적정한지 의문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그는 법인세율 인하정책의 정치적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세수중립성을 지향하는 일본 정부의 정책방향을 비판하고 있다. 특히 외형표준과세의 가장 큰 장점인 경제적 효율성 확대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과세강화 대상에서 제외된 자본금 1억엔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과세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중소법인에 대한 적절한 과세의 필요성은 立岡健二郎(2014) 등 다른 연구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立岡健二郎(2014)은 일본 비상장 중소기업들이 경영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에게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해서 법인세 부담을 축소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과세 공평성 및 세수확보 차원에서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본금 1억엔 이하로 정의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해서도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에 대한 적절한 과세의 필요성은 앞서 살펴본 일본 세제조사회의 조사결과와 그 맥을 같이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강화 방안은 입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일본의 중소기업의 범위 기준과 기업 규모별 차등과세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낮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설정하고 강화하는 것은
 안정적 세수확보라는
 정책목표와 법인세율 인하를 통한
 경제적 효율성 제고라는 정책목표 사이의
 절충안이라 볼 수 있다.**
 ”

은 것으로 김학수(2016b)는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일본 정책입안자들은 정치적 수용성 등을 감안하여 세제조사회나 연구자들의 중소기업 과세강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에도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은 연장하면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공제 전 과세대상 소득의 80%로 2015년부터 제한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축소되어 2018년 이후 50%로 축소하는 것은 비대칭적 법인세제를 더욱 비대칭적으로 만들고 있어서 경제학 이론적으로 긍정적인 세제 개편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흑자가 발생한 과세연도에는 세금을 부과하면서 적자가 발생한 과세연도에는 과거에 낸 세금을 일반적으로 환급해주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영속성 측면에서 법인세제는 비대칭적 과세제도이다. 김학수(2015)에 따르면, 이러한 비대칭성이 확대될수록 법인세제의 경기 자동안정화 기능은 축소되므로 경기 수축기에 기업의 투자를 더욱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 또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설정하고 강화하는 것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창업이나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기 때문에 바람직한 개편방향이라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개편은 안정적 세수확보라는 정책목표와 법인세율 인하를 통한 경제적 효율성 제고라는 정책목표 사이의 절충안이라 볼 수 있다.

“ 일본의 경우 오랜 기간 재정적자가 지속되어 왔으며 국제금융위기 이후에도 재정여건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다. ”

2. 우리나라와의 비교

가. 기본 여건의 차이

일본의 경우 오랜 기간 재정적자가 지속되어 왔으며 국제금융위기 이후에도 재정여건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다. 재정적자의 결과물인 일본 일반정부 부채규모는 2010년 GDP의 2.1배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일본의 재정적자는 2010년 GDP의 8.3% 수준이었으나 2011년 8.8%로 확대된 이후 소폭 개선되는 양상이 2015년까지 지속되어 2015년 일본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GDP의 5.4%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적자 규모는 2015년 OECD 평균 재정수지 적자규모인 GDP의 3.1% 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정부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 등을 제외한 기초재정수지의 경우 수준은 재정수지보다 다소 낮게 나타나지만 OECD 평균 기초재정수지 적자규모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일본의 재정건전화에 대한 필요성은 어느 나라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2010년 이후에도 지속된 일본의 재정적자 기조는 결과적으로 일본 일반정부 부채수준을 2010년 GDP의 210.5%에서 2015년 249.2%까지 끌어올리게 됐다.

한편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금이 상대적으로 젊고 아직까지는 기여금 수입이 연금 지출을 상회하는 수준이어서 재정수지는 여타 국가들보다 양호한 상황이며 2010년 이후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재정수지 흑자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세입예산 대비 세수실적이 2010년 이후 부진하여 일반정부 부채규모는 2010년 GDP 대비 33.3%에서 2015년 44.2%로 확대됐다. 아직 OECD 평균 부채수준인 11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양호하지만 최근 일반정부 부채의 GDP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는 양상은 복지수요 증가와 통일이라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표 4〉 일반정부 재정여건 비교

(단위: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재정수지	일본	-8.3	-8.8	-8.7	-7.7	-6.2	-5.4
	한국	1.0	1.0	1.0	1.3	1.3	1.4
	OECD 평균	-8.2	-6.8	-6.0	-4.2	-3.6	-3.1
기초재정수지	일본	-6.3	-6.7	-6.6	-5.6	-4.1	-3.5
	한국	3.0	3.1	3.2	3.1	3.1	3.0
	OECD 평균	-5.2	-3.7	-2.9	-1.3	-0.8	-0.5
총부채	일본	210.5	226.3	235.3	239.8	246.6	249.2
	한국	33.3	36.0	38.4	40.4	43.6	44.2
	OECD 평균	98.3	102.5	108.7	110.0	113.3	113.2

출처: OECD.Stat(<http://stats.oecd.org>)

비록 재정건전성 확보 및 유지라는 정책목표는 모든 국가에 매우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일본과 우리나라가 법인세율 인하 시점에 처했던 재정여건에는 큰 차이가 있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법인세율 인하라는 정책수단을 시행하는 두 국가의 정책기조에 차이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은 악화된 재정여건으로 인해 법인세율 인하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세율인하 정책은 오랜 기간 논의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일본의 법인세율은 2010년 39.5%에 달하며 주요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세율로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었으며 이후 법인세율 인하를 단행했다. 이처럼 일본이 우리나라나 OECD 평균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높은 법인세율로 과세할 수 있는 것은 GDP 대비 수출 비중이 50% 수준에 달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17% 안팎으로 해외사업 비중이 낮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일본의 법인세 세율이 세율 변화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¹⁵⁾

아베정부의 법인세율 인하정책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단기적 법인세수의 중립성 확보보다는 중장기적 전체 세수의 중립성을 견지하며 시행됐다. 그러나 재정건전성 회복이라는 또 다른 중요한 정책목표를 위해 외형표준과세 강화와 같은 경제적 효율성 훼손을 최소화하는 형태의 기업관련 조세특별조치의 개편을 통해 세입기반 확충을 시도하는 방향으로 법인세율 인하와 함께 법인세제 개편이 수행된 것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재정여건을 갖고 있던 우리나라는 이명박 정부 초기에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과감한 감세정책을 시행했다. 이후 감세효과에 대한 부적절한 정치적 논쟁과 재정수요 확대

“
재정건전성 회복이라는
또 다른 중요한 정책목표를 위해
외형표준과세 강화와 같은
경제적 효율성 훼손을 최소화하는 형태의
기업관련 조세특별조치의 개편을 통해
세입기반 확충을 시도하는 방향으로
법인세율 인하와 함께
법인세제 개편이 수행된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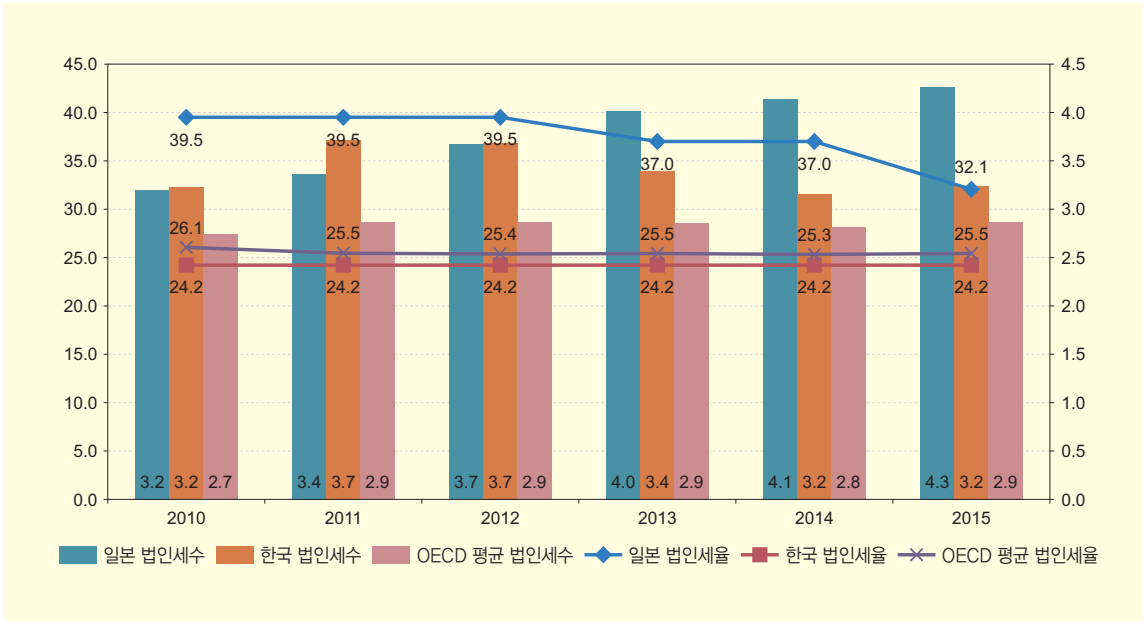
인해 2009년 최고세율을 3%p 인하한 이후 4년 뒤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비과세 감면제도를 정비하고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을 통해 세입기반을 보완하는 일련의 제도개편이 수행됐다.

양 국가의 기본 재정여건과 그에 따른 법인세율 인하정책과 세입기반 보완대책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일본 법인세수의 GDP 대비 비중은 모두 법인세율 인하 이후에도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0년 OECD 평균 법인세수의 GDP 대비 비중은 2.7%이고 이후 2.9% 수준을 2015년까지 유지하고 있다. 일본 법인세수의 GDP 대비 비중은 2010년 3.2%를 보인 이후 최근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2015년 4.3%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3년 이후 법인세율을 인하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일본의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조세원칙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이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법인세수의 GDP 대비 비중도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2010년 이후 3.2~3.7%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5) 김학수(2016a)는 수출 비중이 높을수록 GDP 대비 기업들의 영업잉여 비중이 높고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로 법인세를 과세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154개 국가들의 수출 비중과 법인세 최고세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수출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국세분 법인세율은 19.5% 수준으로 수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림 1] 한·일 법인세율과 법인세수 추이

(단위: %)



최근 법인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경우 지속적으로 법인세수의 GDP 대비 비중이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은 세율 인화와 세입기반 확대 정책을 경제적 효율성 개선에 초점을 맞추며 시행한 결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몇 년간 법인세수의 부진으로 인해 많은 논란이 야기됐지만 여전히 법인세수 비중은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또한 2013년 이후 입법된 여러 세수보완대책으로 인해 2015년 이후 법인세 세입예산을 초과하는 세수실적을 달성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법인세수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 법인세율 인하정책과 세원 확대방안의 차이

우리나라의 2008년 세계개편의 소극적 세원확대 방안과 달리 일본은 다양한 세원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점에서 첫 번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과거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 2008년 세계개편안은 다양한 감세정책과 투자지원 정책을 포괄하고 있으나 감세에 따른 투자확대를 통한 자연적 세원 및 세수 확대를 기대하고 있었다. 당시 법인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감세정책, 중소기업 지원 확대, 서비스산업 지원 확대, 연구개발 지원 확대, 녹색성장 기반구축을 위한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확대의 정책으로 거대한 감세정책 패키지를 시행했다. 그러나 국제금융위기의 발생으로 인해 거시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기대했던 감세 효과를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는 정치적 논쟁이 심화되며 감세정책 기조가 약화된 바 있다.

이러한 한국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은 듯, 일본의 경우 법인세수 자체의 단기적 세수중립성보다는 중장기적 전체 세수중립성을 지향하면서도

법인세율 인하와 함께 다양한 조세특례조치들에 대한 재검토를 동시에 수행하는 방식으로 세율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법인세율 인하정책을 시행하면서 일본은 앞서 언급한 다양한 특례제도들을 정비하는 방안을 비롯하여 다양한 세율 확대방안을 검토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비과세 감면정비 및 지하경제양성을 새로운 정책방향으로 제시한 것이다. 현재 2013년 이후 시행한 다양한 세수보완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불필요할 정도로 과도한 법인세율 논쟁이 지속되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법인세 인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세율은 낮게 가져가되 세율은 폭넓게 확대함으로써 조세왜곡을 축소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정책 목적을 보다 명확히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세수손실을 감수하는 대규모 감세정책을 통한 경제활성화가 정책목적이었다라도 이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산업 간 과세중립성에 대한 시각 차이

법인세제와 각종 조세지원제도에 의해 업종 간 과세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특정 업종에 치우친 조세지원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법인세율 인하와 함께 특정 업종 지원을 위한 제도들이 확충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이 진행됐다. 김학수(2014)는 2000년대 초반 이후 우리나라의 업종 간 세부담 차이가 확대된다는 분석결과와 함께 업종 간 세부담 격차의 축소가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한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세법상 업종차별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으며 2016년 세법개정에

“
**법인세 인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세율은 낮게 가져가되
 세율은 폭넓게 확대함으로써
 조세왜곡을 축소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정책목적보다 명확히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

서 일부 반영되기 시작했다.

일본 세제조사회의 결과보고서는 법인세의 조세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업종 간 과세 중립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업종 간 조세중립성을 훼손하는 조세특별조치들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제조업에 혜택이 집중되는 연구개발 지원세제를 2015년 일본의 법인세 개혁의 일환으로 축소한 이후 지원제도가 인센티브로 충실히 작동하도록 제도 설계를 개선했다. 우리나라는 조세지원제도에 따른 세부담 격차 해소를 위한 세제상 업종별 차등 적용 조항에 대한 개선작업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대부분의 조세지원제도에서 업종별 차등지원 조항이 없지만 우리나라는 세법상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개별 지원제도에서 정책대상 업종을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어서 향후 많은 개선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중소기업 과세에 대한 시각 차이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편해오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중소기업의 범위를 축소해서 세제지원의 대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을 보호육성

“
**기업은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결합체로서
 소득이 각 개별 경제주체들에게 흘러가는
 도관이라는 인식을 확고히 하고
 동일한 소득은 법인의 법정 규모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과세되어야 한다는
 수평적 형평성 제고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
 ”

의 대상으로 여기고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적인 조세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김학수(2016b)는 중소기업 과세체계의 문제점을 중소기업 범위기준과 기업규모별 차등지원에서 찾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여러 연구들의 경우에도 현행 중소기업의 범위 기준인 자본금 1억엔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전반적인 세율인하 기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경감세율을 폐지하고 외형표준과세 강화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 연구계의 정책제언이 아직까지 입법화되지는 않고 있지만 중소기업을 보호육성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중소기업의 범위기준을 낮게 설정해서 보다 많은 기업들이 동등한 세법상의 위치를 갖도록 하려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일본의 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는 자본금 1억엔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원화기준 약 10억원 수준이다. 현행 매출액 기준으로 전환하기 이전 우리나라 중소기업 범위기준 중 자본금 기준은 최대 300억원으로 설정되어 있었다는 점은 한일 양국간의 중소기업 범위기준에 대한 시각 차이를 극명하

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은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결합체로서 소득이 각 개별 경제주체들에게 흘러가는 도관이라는 인식을 확고히 하고 동일한 소득은 법인의 법정규모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과세되어야 한다는 수평적 형평성 제고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

마. 조세특례조치 정비를 위한 평가 기준의 차이

일본의 경우에도 「조세특별조치의 적용 상황의 투명화 등에 관한 법률」¹⁶⁾에 근거하여 기존 조세특별조치의 평가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세 가지의 정비 기준 중 ‘기준 3’은 우리나라의 평가기준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준 3’은 불특정 다수의 정책세제 활용을 전제로 도입하였으나 상위 10개 법인이 전체 혜택의 80%를 초과하거나 수혜 법인이 10개 미만인 정책세제의 경우 폐지를 포함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정비 기준은 특정 정책세제의 혜택이 일부 기업들에 의해 독점적으로 향유되거나 수혜법인의 수가 지나치게 적은 경우와 같이 보편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제도는 정비의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부터 기존제도와 신규제도에 대한 평가의견서를 개별 부처에서 작성하고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평가한 후 전문기관에서 확인점검을 수행하는 자체평가를 조세지출성관리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조세지출 규모 300억원 이상인 제도들의 경우 정책 타당성, 효과성 등의 기준으로 심층평가와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제도의 활용정도에 대한 평가

16) 「조세특별조치의 적용상황의 투명화 등에 관한 법률」(이하 조세특별조치투명화법)은 2010년 입법되었다. 이 법은 다양한 조세특별조치 중에서 법인세의 세수감소와 관련된 조세특별조치에 대한 일괄적인 관리를 통해 산업별, 자본금규모별, 소득계급별, 특별조치항목별 상위 10개 법인의 조세지원 현황을 파악하고 매해 「조세특별조치의 적용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는 명시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지출 규모로 측정된 활용도가 낮은 제도들의 경우에도 폐지 또는 재설계하기보다는 일몰도래 시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조세지출제도는 재정사업과 달리 불특정 다수의 납세자들의 행동변화를 도모하고 긍정적 외부효과가 기대되는 특정 경제행위를 보다 촉진하기 위해서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조세지원의 혜택이 특정 납세자 그룹에 집중되거나 활용하는 납세자의 수가 거의 없거나 매우 제한적이라면 폐지를 고려해야 할 또 다른 근거라 판단된다. 향후 조세지출성과관리제도가 개편되는 과정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다.

IV. 시사점

이 글은 최근 일본에서 추진되어 온 법인세제 개혁의 취지와 주요 개편 내용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및 박근혜 정부의 비과세 감면 정비를 통한 세수보완대책 과정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일본과 우리나라 모두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 평균 실효세율과 한계세율을 낮춤으로써 기업의 입지 선택 및 국내 투자 확대를 기대했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일본의 경우 세수보완을 법인세율 인하와 함께 고려했으나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정치적 논쟁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시작됐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일본이 우리나라의 감세정책에 대한 논란 과정의 교훈을 반영한 결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의 주요 원인으로는 두 국가의 재정여건을 들 수 있다. 일본의 경우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

중이 200%를 초과하는 상황으로 2020년까지 균형재정을 이루며 재정재건을 목표로 하고 있는 아베 정부가 세수보완대책 없이 대규모 감세정책을 시행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중은 40%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일본보다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재정여건을 갖고 있어서 세입기반 확충 없이 대규모의 감세정책을 통해 자연적 세수증가를 기대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법인세제 개혁의 내용 측면에서 일본은 법인세율 인하에 의해 기대되는 경제적 효율성 제고 효과를 상쇄하지 않도록 세입기반 확충도 경제적 효율성 제고에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응익원칙을 준용하고 조세왜곡과 세수손실을 초래하는 조세특별조치들의 축소 내지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세율 인하와 세입기반 확충의 정책방향은 서로 충돌하여 경제적 효율성 제고라는 정책목적 달성이 되지 못하는 부정적 효과를 가능한 한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 경제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했으나 업종 및 기업규모별 세부담 차이를 확대하는 방향의 세입기반 확대 정책은 일정 수준 경제적 효율성 훼손을 초래하며 세율 인하에 의해 유발된 경제적 효율성 제고 효과를 다소 상쇄했을 가능성이 크다. 향후 감세정책을 시행할 때 정책목표를 명확히 하고 세부 정책과제들의 기대효과가 서로 상쇄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조세지출 성과평가제도가 2013년 도입되어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향후 조세지출 성과평가제도의 시행을 통해 나타나는 제도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본 세제조사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조세지원제도 활용 정도에 근거

한 제도의 재검토 기준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정지출과 달리 조세지출제도는 불특정 다수의 납세자의 행동변화를 통해 경제사회적으로 긍정적 파급효과를 유도하는 데 기본 정책 목적이 있다는 점에 유념한다면 특정 소수 납세자에게 거의 모든 혜택이 귀속되거나 제도를 활용하는 납세자가 극히 제한적이라면 폐지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재검토할 필요도 있다. **KIPF**

〈참고문헌〉

기획재정부, 『201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안)』, 2013.

김학수, 『서비스산업의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 연구보고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_____, 『경기국면별 세수 변동성과 세제의 경기조절 기능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_____, 『법인세부담 수준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정책토론회 발제자료, 국민경제자문회의·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a.

_____, 『중소기업 과세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b.

鈴木將賞, 「法人税改革の評価と今後の課題」, みずほ総合研究所, 2015.

立岡健二郎, 「外形標準課税拡大をどう評価するかー応益性の定量的把握と分析の試み」, Japan Research Institute レビュー, Vol. 7, No. 26, 2015, pp. 49~72.

_____, 「法人実効税率引き下げにおける議論のポ

イントー議論を法人税の枠内にとどめず、抜本改革に着手せよー」, 『Research Focus』, 日本総合研究所, 2014.

日本税制調査會, 『法人税の改革について(案)』, 2014.

日本財務省, 『平成 27年度税制改正の大綱』, 2015.

_____, 『平成 28年度税制改正の大綱』, 2016.

_____, 毎年度の税制改正 웹사이트 (http://www.mof.go.jp/tax_policy/tax_reform/index.html).

Bird, M. R, “Local business taxes,” Bird, M. R. and Vaillancourt, F., eds. *Perspectives on Fiscal Federalism*, The World Bank, 2006.

OECD 국가별 재정정책의 경기대응성 추정 및 영향 분석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sungmunc@kipf.re.kr)

I. 서론

재정정책의 주요 역할로는 공공재 공급, 소득재분배, 경제성장 및 경기안정 등을 꼽을 수 있다. 즉 국가는 국민에게 세금을 거두어 그 돈으로 국방, 치안, 교육, 기본적인 행정서비스 등의 공공재를 공급하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초생활보장 등을 통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며, 경제성장을 지원하고 경기변동의 폭을 줄여 경기가 안정화되도록 한다. 적절한 수준의 공공재 공급과 소득재분배 수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며 선거 때마다 끊임없이 쟁점으로 논의된다. 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보수 진영에서는 최소한의 공공재 공급과 소득재분배를 주장하는 반면 큰 정부를 지향하는 진보 진영에서는 그 반대 의견을 주장한다. 반면 경제성장 및 경기안정화 역할 자체에 대한 논쟁은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경기가 불황에 빠졌을 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르지만 거의 모든 유력 정치인들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자신의 정책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한다.¹⁾

반면 경기가 호황일 경우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논의가 부족해 보인다. 경제적으로 여유롭다 보니 서로간의 갈등도 줄어들고, 굳이 새로운 정책으로 호황인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필요도 없는 것이다. 하지만 불황일 때와 마찬가지로 호황일 때도 신중한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 경기가 호황일 경우 정부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늘려 경기과열을 방지하고, 동시에 향후 발생할 불황에 대비해 재정여력을 확보해 두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아도 복지지출, 누진적인 조세구조 등의 자동

1) 전통적으로 진보 진영은 정부지출의 확대를 통해, 보수 진영은 세금 축소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OECD 국가별 재정정책의
 경기대응성을 추정하여 비교하였다.
 추정 결과 주요 선진국에서는
 재정정책이 비교적 경기대응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안정화 장치를 통해 불황일 경우 경기를 부양하고, 호황일 경우 경기과열을 방지하게 된다. 하지만 국가별로 이러한 자동안정화 장치의 크기가 다를 뿐 아니라, 많은 경우 호황 때 늘어난 세수를 아껴두지 않고 선심성 지출, 감세 등으로 즉시 소진해버려 향후 불황이 발생할 경우 경기를 부양할 충분한 재정여력을 쌓지 못하게 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한 재정정책은 경기가 호황일 경우 정부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늘려 경기과열을 방지하고 재정여력을 쌓아두며, 경기가 불황일 경우 정부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줄여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이다. 이와 같은 재정정책을 경기대응적(countercyclical) 재정정책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호황일 때는 개인과 법인의 소득이 높아지고 자산가치가 높아지면서 세수가 증가하게 된다. 동시에 실업급여, 기초생활보장과 같은 정부지출은 줄어들게 되어 재정수지(세입-세출)가 좋아지게 된다. 반면 불황일 경우에는 정반대의 효과로 인해 재정수지가 악화된다. 이러한 자동안정화 장치는 호황일 때는 경기과열되지 않도록 하고, 불황일 때는 경기를 부양하도록 도와주어 경기변동의 폭을 줄여준다. 케인스주의(Keynesian) 경제학자들은 자동안정화 장치뿐만 아니라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즉 경기가 불황일 경우에는 공

공투자 등 정부지출을 늘리며 감세정책을 펼쳐 경기를 적극적으로 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재정정책은 더욱더 경기대응적인 모습을 나타내게 된다. 즉 호황일 경우에는 재정수지가 더욱 좋아지며 불황일 경우에는 재정수지가 더욱 악화되게 되는 것이다. 국가채무를 무한정 증가시킬 수 없기에 바람직한 재정정책은 호황일 때 재정흑자를 통해 재정여력을 확충해두었다가 불황일 때 적극적으로 재정을 사용하여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OECD 국가별 재정정책의 경기대응성을 추정하여 비교하였다. 추정 결과 주요 선진국에서는 재정정책이 비교적 경기대응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특히 최근 들어 재정정책의 경기대응성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 총량적으로 바람직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국가, 특히 최근에 재정위기를 겪었던 그리스 등의 국가에서는 재정정책이 경기순응적(procyclical)이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이러한 국가들에서는 과거 경기가 호황일 때에도 재정수지가 개선되지 않아 재정여력을 축적해두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경기가 불황일 때 경기를 충분히 부양하지도 못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몇몇 국가의 사례뿐만 아니라 재정정책의 경기대응성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재정정책의 경기대응성이 경기안정, 경제성장, 그리고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OECD 국가에 한정되었으며, 엄밀한 인과관계가 아닌 단순 상관관계라는 한계는 있지만 재정정책의 경기대응성이 높은 국가에서 경기변동의 진폭이 작았으며, 경제성장률은 높았고, 국가채무는 덜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제Ⅱ절에서는 재정정책과 경제성장의 상호관계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소개하고, 제Ⅲ절에서는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를 소개하고 기초통계를 제시한다. 제Ⅳ절에서는 국가별 재정정책의 경기대응성을 추정한 방법론과 결과를 제시하고, 제Ⅴ절에서는 재정정책의 경기대응성이 경기변동, 경제성장,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Ⅵ절에서는 분석결과의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에 대해 논한다.

II. 선행연구

본 절에서는 재정정책과 경제성장 간의 상호관계 및 재정정책의 결정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재정정책의 변동성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소개하고, 재정정책의 경기대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경제적 요인에 대한 연구를 소개한다. 그리고 최근 들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주제인 국가채무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소개한다.

1. 재정정책의 변동성이 경제성장 및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

재정정책이 경기에 대응하려면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가져야 한다. 즉 경기가 불황일 때는 정부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줄여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가 호황일 때는 정부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늘려 경기과열을 방지하여야 한다. 하지만 재정정책의 변동성이 지나칠 경우, 특히 경기에 대한 대응과 관련이 없는 변동이 클 경우 경제성장 및 경기안정에

“
**재정정책의 변동성이 지나칠 경우,
 특히 경기에 대한 대응과 관련이 없는
 변동이 클 경우 경제성장 및 경기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많은 연구들이 재정정책의 변동성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 특히 재정정책의 재정적인 요소를 줄이기 위해 설치된 제도적 장치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미국 주정부를 대상으로 분석한 Poterba(1994)의 연구에서는 엄격한 재정규율을 가진 주에서는 예상치 못한 재정적자가 발생할 경우 재정규율을 지키기 위해 더 신속히 재정적 조정(fiscal adjustment)을 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재정규율은 균형예산을 유도하여 재정수지 악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지만, 반면 재정운용의 유연성을 제약하여 경기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실제로 Levinson(1998)의 연구에서는 미국 주정부 중 엄격한 균형예산준칙을 가진 주에서는 경기변동의 폭이 더 컸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Alesina and Bayoumi(1996)는 미국 주정부의 엄격한 재정준칙이 재정수지를 더 양호하게 만들지만, 경기변동의 진폭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Canoba and Pappa(2006)의 연구에서도 미국 주정부의 재정준칙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Fatas and Mihov(2006)의 연구에서는 미국 주정부의 재정준칙이 두 가지 상반되는 효과를 동시에 가짐을 발견하였다. 재정준칙이 재정정책의 변동성을 줄이는 동시에 경기변동에 대한 대응성도 줄이지만, 첫 번째 효과가 더 우세하여 경기변동의 진폭이 줄

“
**Tornell and Lane(1999)의
 논문에서는 이른바 ‘폭식효과’를 주장한다.
 재정정책의 권한이 분산되어 있을수록,
 즉 재정정책에 관여하는
 집단의 수가 많을수록 경기가 호황일 때
 늘어난 세수를 차지하려는
 경쟁이 심해진다는 것이다.**
 ”

어든다는 것이다. 즉 엄격한 재정준칙을 가질 경우 경기대응과 무관한 재량적 재정정책이 경기진폭을 확대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다.

Fatas and Mihov(2003, 2013)에서는 90개 이상의 국가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경기변동에 대한 대응으로 설명할 수 없는 재량적 정부지출의 변화가 클수록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이 커지며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OECD국가 및 미국 주정부를 대상으로 한 Fatas and Mihov(2001)의 연구에서는 정부규모가 클수록 경기변동의 폭이 줄어든다는 점을 발견하였고, 이는 자동안정화 장치의 규모가 커 경기를 안정화시키는 효과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2. 재정정책의 경기대응성에 미치는 정치적·경제적 영향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정정책이 경기를 안정화시키는 효과를 거두려면 경기대응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많은 국가에서 재정정책이 경기순응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자애로운(benevolent) 정부를 가정한 기존 경제학 모형만으로는 이 같은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학자들은 재정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정

치적인 요인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초기연구인 Tornell and Lane(1999)의 논문에서는 이른바 ‘폭식효과(voracity effect)’를 주장한다. 재정정책의 권한이 분산되어 있을수록, 즉 재정정책에 관여하는 집단의 수가 많을수록 경기가 호황일 때 늘어난 세수를 차지하려는 경쟁이 심해진다는 것이다. 특정 이해집단이 정부의 효율적인 재정정책 집행을 위해 경기가 호황일 때 본인들의 몫을 챙기지 않으면 정부가 그 여유분을 아껴두었다가 경기가 불황일 때 쓰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해당사자들이 즉시 그 몫을 챙겨가게 된다. 따라서 각 집단들은 경기가 호황일 때 늘어난 세수를 차지하려는 경쟁이 심해지고 결과적으로 경기가 호황일 때 정부지출이 커지는 경기순응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OECD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Lane(2003)의 논문에서는 경기변동이 심하며 특히 권력이 분산되어 있는 국가에서 재정정책의 경기순응적인 모습이 더 흔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발견하여 Tornell과 Lane의 이론모형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Talvi and Vegh(2005)의 논문에서는 이론모형을 통해 세입이 늘어날 경우 세입에 대한 다양한 집단 간 경쟁의 정도는 세입이 증가한 정도보다 더 커지게 되며, 따라서 경기변동이 심한 국가, 따라서 세입변동이 심한 국가에서 경기가 호황일 경우 세입을 차지하려는 경쟁이 더욱 심해지게 되어 재정정책이 경기순응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56개국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을 통해 경기변동이 적은 선진국보다 경기변동이 큰 개발도상국에서 재정정책이 더 경기순응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Talvi and Vegh(2005)의 이론모형에서 경기순응적인 재정정책은 다양한 집단을 견제하려

는 정부의 선택이지만 Alesina, Tabellini, and Campante(2008)의 논문에서는 이를 부패한 정부(정치인)를 견제하려는 유권자의 선택이라고 주장한다. 부패한 정부(정치인)는 경기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불황에 대비해 아껴두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 또는 정치인과 결탁한 이익집단을 위해 지출할 수 있다. 따라서 경기가 호황일 경우 유권자들은 늘어난 세수가 정치적 지대(rent) 추구행위에 쓰이지 못하도록 더 많은 공공재 공급 및 재분배, 세율 인하 등을 요구하게 된다. 따라서 재정정책이 경기순응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83개국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여 부패 정도가 심한 국가에서 경기순응적 재정정책이 더 자주 나타난다는 점을 발견하여 이론모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Woo(2009)의 논문에서는 양극화가 심한 국가일수록 이상적인 재정정책에 대한 합의가 어려우며, 따라서 경기가 호황일 때 상반되는 정책선호를 가진 집단들이 각자 자신들의 몫을 챙기려고 하기 때문에 재정정책이 경기순응적인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96개국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 소득불평등 및 교육불평등이 심한 국가에서 재정정책이 경기순응적인 모습을 더 자주 나타낸다는 점을 발견하여 이론적 주장을 뒷받침하였다.

3. 국가채무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국가채무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Reinhart and Rogoff(2010)의 논문 이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Reinhart and Rogoff(2010)의 논문에서는 20개 선진국

“
경기순응적인 재정정책은
부패한 정부를 견제하려는
유권자의 선택이라는 주장도 있다.
경기호황 시 늘어난 세수가 정치적 지대
추구행위에 쓰이지 못하도록
더 많은 공공재 공급 및 재분배,
세율 인하 등을
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

의 1946~2009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90% 이하일 때는 국가채무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비율이 90%를 넘어서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t Amherst의 대학원생이었던 Herndon이 Reinhart-Rogoff 데이터의 오류를 발견하였고, 오류를 수정한 결과 90% 한계점의 효과가 사라져 채무비율이 90%를 넘더라도 경제성장률이 저하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얻어 큰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Herndon, Ash, and Pollin(2014)).²⁾

이후 좀 더 다양한 데이터와 정교한 계량분석을 이용하여 국가채무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초기연구에서는 Reinhart-Rogoff의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국가채무가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결과가 주로 발표되었다. 예를 들어, Kumar and Woo(2010)의 논문에서는 지난 40년간의 선진국 및 신흥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국가채무의 증가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GDP 대비 채무 비율이 10%p 증가할 경우 연평균 경제

2) 이에 대해 Rogoff와 Reinhart는 데이터상의 오류는 인정하지만, 오류를 수정하더라도 전체적인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국가채무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명확히 추정하기 어려우며
 방법론과 데이터의 선택에 의해
 추정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

성장률은 0.2%p 낮아지며, 채무 비율이 높아질수록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의 크기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2개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Checherita-Westphal and Rother(2012)와 Baum, Checherita-Westphal, and Rother(2013)의 논문에서는 국가채무의 증가가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지만 채무비율이 높아질수록 효과가 줄어들며 특히 채무비율이 90~100% 수준을 넘게 되면 채무비율 증가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좀 더 최근의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밝힌 부정적인 효과는 명확하지 않으며 사용되는 데이터와 방법론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Panizza and Presbitero(2013, 2014)의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에 대한 엄밀한 검증 및 도구변수를 사용한 새로운 분석 결과 국가채무와 경제성장 간에는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하지만 이를 인과관계로 해석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는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Egert(2015)의 최신 논문에서는 다양한 방법론과 데이터를 사용하여 다양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국가채무가 경

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추정 결과는 연구의 방법론, 데이터상의 국가 및 기간의 설정 등에 크게 좌우된다고 주장한다. 사용되는 방법론과 데이터의 범위에 따라 드물게 국가채무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Reinhart와 Rogoff가 주장한 90%보다 훨씬 낮은 20~60% 비율에서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인다. 요약하면 국가채무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명확히 추정하기 어려우며 방법론과 데이터의 선택에 의해 추정결과가 크게 달라지며,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에도 한계점이 90%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Ⅲ. 데이터 및 기초통계

본 연구에서는 OECD 국가별 재정정책의 경기 대응성을 추정하고, 재정정책의 경기대응성이 경기안정, 경제성장, 그리고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우선 재정정책의 경기대응성은 국가별 아웃풋갭(output gap)³⁾과 기초재정수지(primary fiscal balance)⁴⁾를 바탕으로 계산하였다.⁵⁾ 경기의 (불)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는 경기변동의 폭, 구체적으로 경제성장률의 표준편차를 사용하였다. 또한 재정정책의 경기대응성이 경제 성장과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해 경제 성장률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모든 변수는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를 사용하였다.⁶⁾

3) 실제GDP가 잠재GDP에서 벗어난 정도를 측정. 구체적으로 [(실제GDP-잠재GDP)/잠재GDP]의 공식으로 구함

4) 정부가 보유한 금융자산 및 부채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 재정수지

5) 구체적인 방법론은 제3절 참고

6) <http://www.imf.org/external/pubs/ft/weo/2016/02/weodata/index.aspx>

〈표 1〉에서는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초 통계량을 보여준다. 각 표본의 단위는 하나의 국가이다. 즉, 예를 들어 기초재정수지의 경우 각 국가의 2001~2015년 기초재정수지의 평균치가 하나의 관측치를 의미하며, 35개 국가별 평균치 35개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을 표에서 나타내고 있다. 대부분의 변수는 35개 OECD국가에 대한 통계가 존재하지만 아웃풋갭의 경우 25개국의 통계만 존재하며, 재정정책의 경기대응성 추정을 위해 아웃풋갭 데이터가 필요하기에 본 연구의 실질적인 분석에 포함된 국가는 IMF World Economic Database에서 아웃풋갭 자료가 존재하는 25개국이다.

IV. OECD 국가별 재정정책의 경기대응성 추정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재정정책이 경기대응적인 성격을 가질 경우 경기가 호황일 때는 정부지출이 줄어들고 세입이 늘어나 재정수지가 좋아지며, 경기가 불황일 경우에는 정부지출이 늘어나고 세입이 줄어들어 재정수지가 나빠지게 된다. 이는 복지지출, 누진적 조세구조 등의 자동안정화 장치의 영향일 수도 있고, 정부의 재량적인 정책의 영향일 수도 있다.⁷⁾ 따라서 경기변동과 재정수지와의 관계를 통해 재정정책의 경기대응성을 측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아웃풋갭(output gap)을 사용하였고, 정부재정정책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기초재정수지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기초재정수지의 경우 국가별로 경기상황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지속성을 가지기에 재정정책의 기초로 기초재정수지 자체 대신 전년 대

〈표 1〉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

	표본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아웃풋갭(잠재GDP 대비 %) (2001~2015년)	25	-0.208	0.631	-1.662	1.392
기초재정수지(GDP 대비 %) (2001~2015년)	35	-0.409	2.604	-6.205	9.902
실질 경제성장률 표준편차 (2001~2015년)	35	2.763	1.574	0.789	7.237
연 평균 실질 경제성장률(%) (2001~2015년)	35	2.179	1.261	-0.059	4.350
연 평균 실질 경제성장률(%) (1996~2000년)	35	3.927	1.595	1.034	9.739
2000년 국가채무 비율 (GDP 대비 %)	34	49.518	31.489	5.114	143.778
2015년 국가채무 비율 (GDP 대비 %)	35	71.728	47.418	9.741	247.9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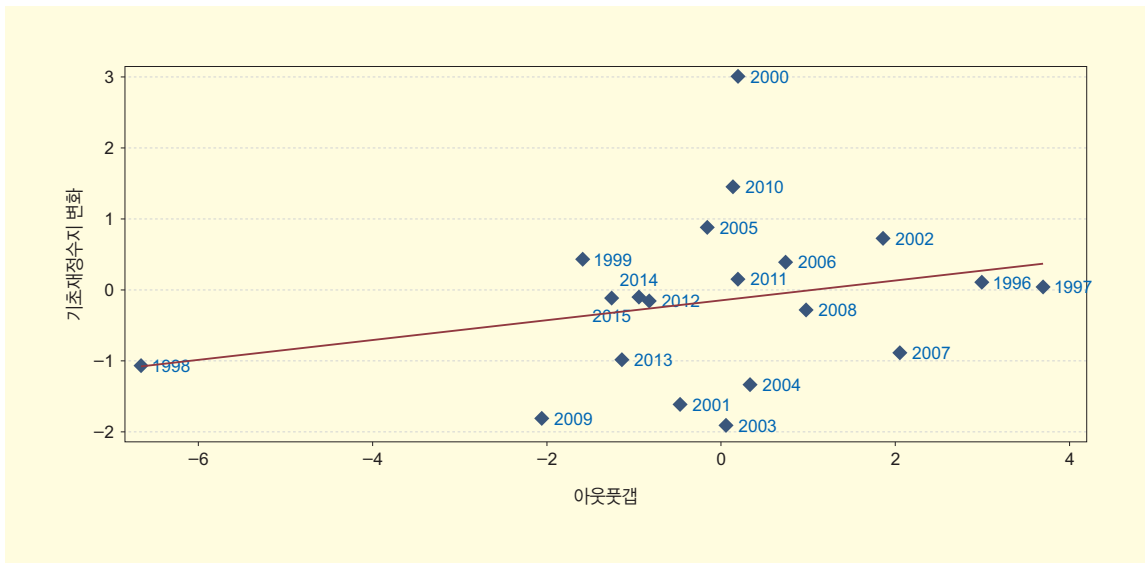
7) 일반적으로는 자동안정화 장치와 정부의 재량적 노력이 동시에 발생한다.

비 기초재정수지의 변화를 사용하였다. 즉 어떤 국가에서는 경기순환주기와 관계없이 대체로 재정적자가 지속되기도 하며, 어떤 국가에서는 재정흑자가 지속되기도 한다. 따라서 특정 연도의 재정수지 자체보다는 과거 대비 재정수지의 변화가 현재의 경기상황에 대응한 정부의 재정적 노력을 더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다.⁸⁾

[그림 1]은 우리나라의 1996년 이후 연도별 아웃풋갭 및 전년 대비 기초재정수지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빨간색 직선은 선형 적합선(fitted line)이며, 기울기가 양수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경기가 좋을수록, 즉 아웃풋갭이 커질수록 기초재정수지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기간 우리나라의 재정정책은 전반적으로 경기대응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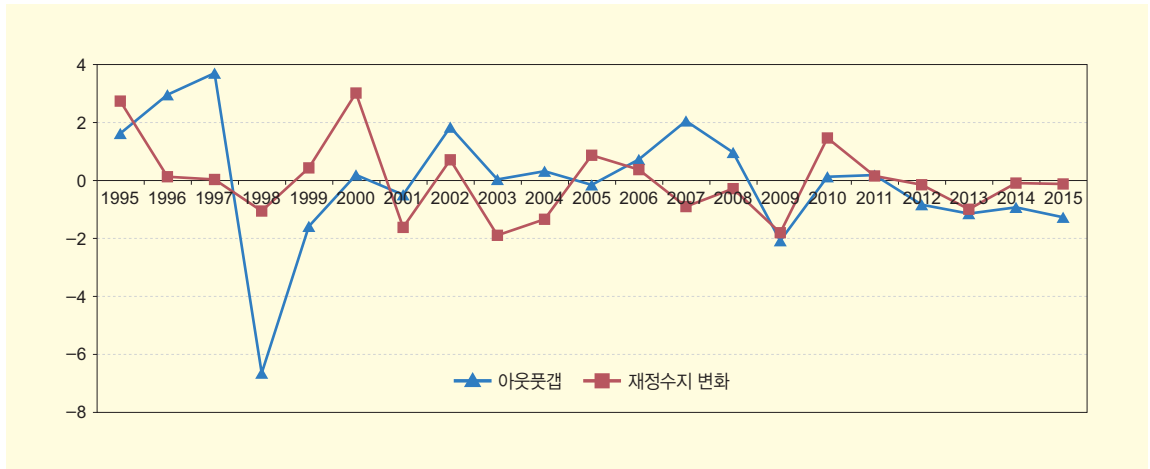
[그림 2]는 우리나라의 아웃풋갭과 그에 따른 기초재정수지의 전년 대비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전반적으로 아웃풋갭과 기초재정수지 변화가 같은 패턴을 보여 재정정책이 경기대응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2007년과 2008년의 경우 아웃풋갭은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으나 기초재정수지는 전년에 비해 악화되어 재정여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일부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림 1]의 그래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에서 2007년과 2008년은 적합선의 아래 부분에 위치하여 기초재정수지가 필요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우리나라 연도별 아웃풋갭 및 기초재정수지 변화



8) 재정정책의 경기대응성을 추정하는 문헌에서도 종속변수, 즉 재정정책의 기초를 나타내는 변수로 정부지출 또는 재정수지의 전년 대비 변화량을 사용한다(Lane(2003), Alesina et al.(2008)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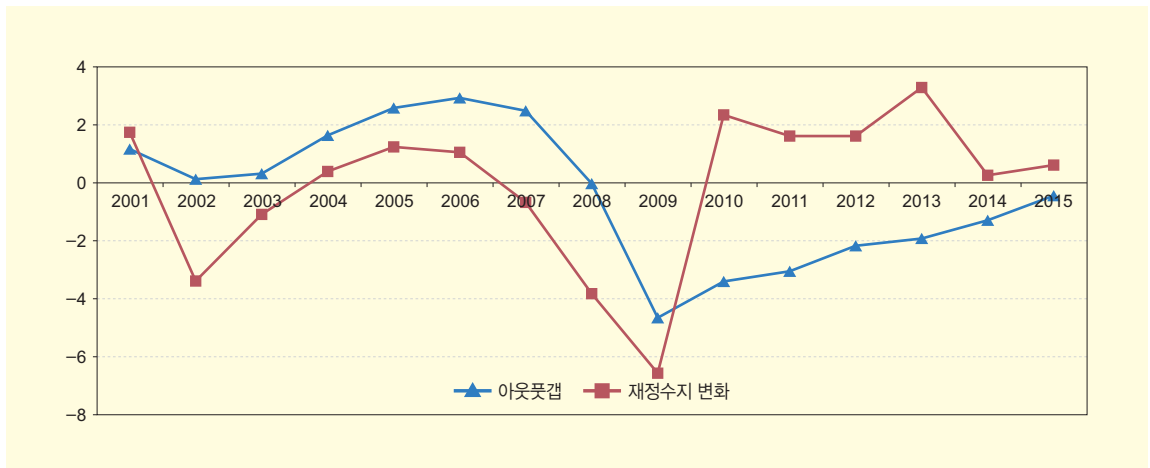
[그림 2] 아웃풋갭과 기초재정수지 변화: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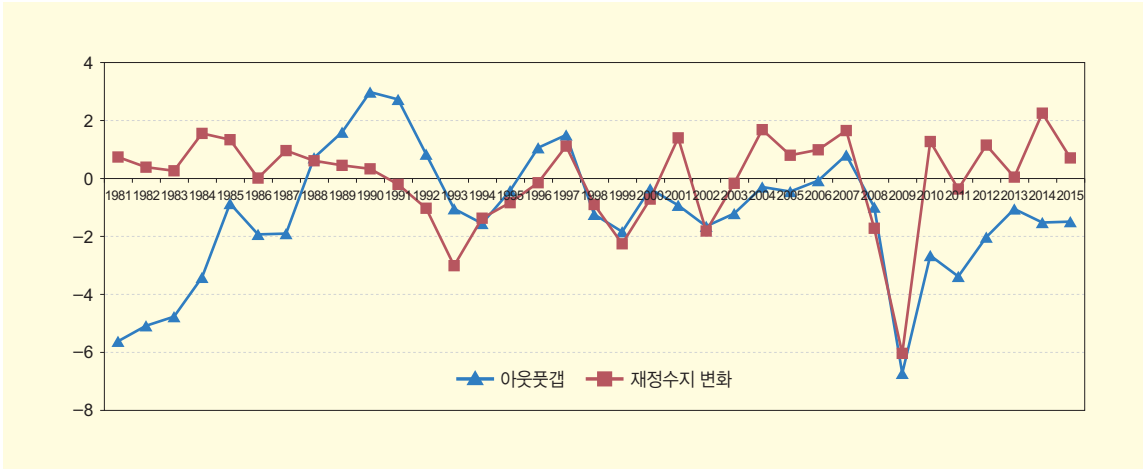
[그림 3]~[그림 6]은 해외 주요국의 시계열 그래프이다. [그림 3]의 미국, [그림 4]의 일본의 경우 시기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재정정책이 경기대응적인 모습을 나타낸다. 하지만 최근에 재정위기를 겪었던 국가, 예를 들어 [그림 5]의 그리스, [그림 6]의 스페인을 살펴보면 아웃풋갭과 기

초재정수지 변화가 상반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즉 재정정책이 경기대응적이지 아니라 경기순응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들에서는 경기가 좋을 때 재정여력을 쌓지 못하고 방만하게 재정을 운용하여 향후 경기가 어려워졌을 때 재정정책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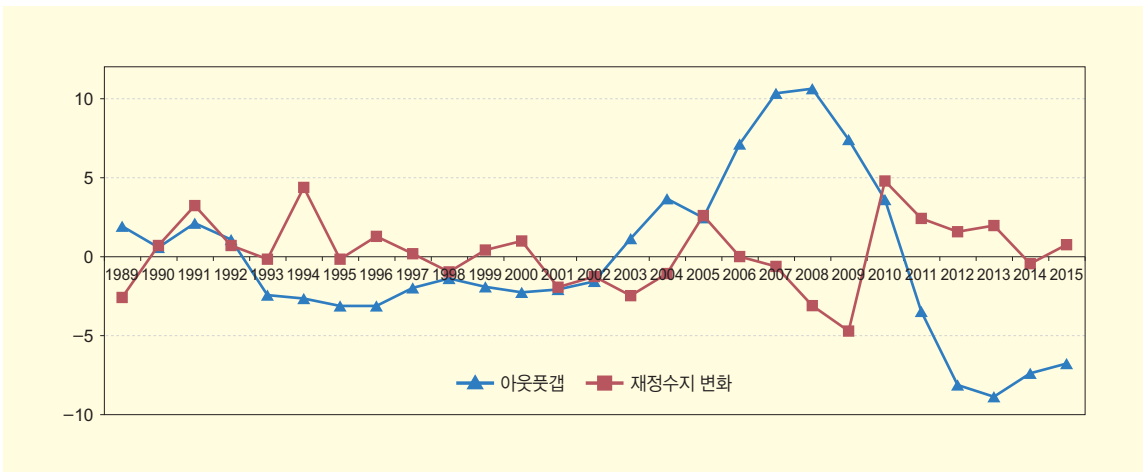
[그림 3] 아웃풋갭과 기초재정수지 변화: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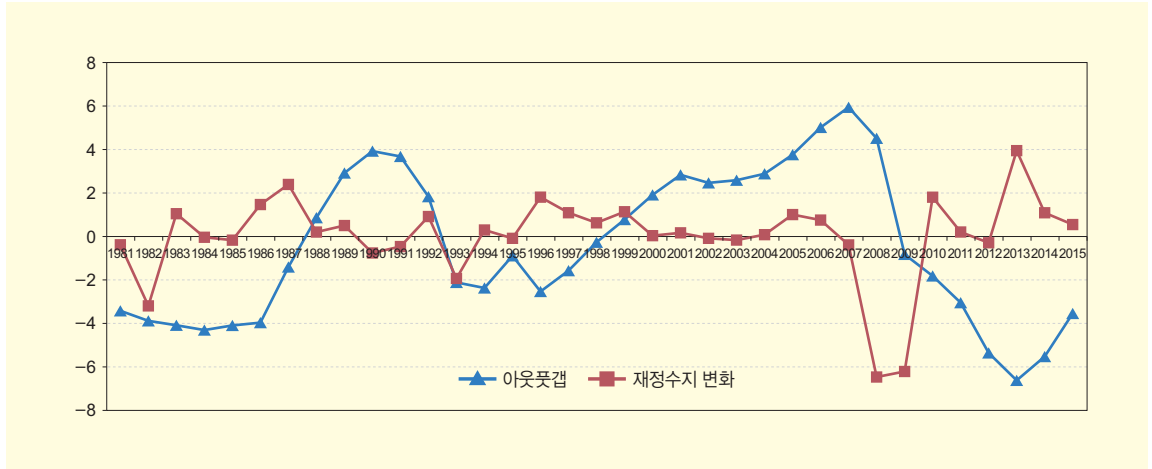
[그림 4] 아웃풋갭과 기초재정수지 변화: 일본



[그림 5] 아웃풋갭과 기초재정수지 변화: 그리스



[그림 6] 아웃풋갭과 기초재정수지 변화: 스페인



좀 더 정량화된 비교분석을 위해 국가별 재정정책의 경기대응성을 추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회귀계수를 추정하였다.

$$\text{기초재정수지}_t - \text{기초재정수지}_{t-1} = \alpha + \beta \times \text{아웃풋갭}_t + \epsilon_t$$

t 는 연도를 나타내며 α 는 상수, ϵ 는 오차항 (error term)이다. 재정정책이 경기대응적인 성격을 가질 경우 경기가 호황일 경우, 즉 아웃풋갭이 양수이며 크기가 클수록 재정수지가 높아지며, 경기가 불황일 경우, 즉 아웃풋갭이 음수이며 크기가 클수록 재정수지는 낮아진다. 따라서 β 가 재정정책의 경기대응성을 나타내는 계수이며, β 의 값이 클수록 재정정책의 경기대응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의 회귀분석을 국가별로 실시하

였으며, 국가별로 아웃풋갭과 기초재정수지 데이터가 존재하기 시작하는 연도는 다르지만 2001년 이후에는 모든 국가⁹⁾에서 해당 자료가 존재하기에 2001~2015년 재정정책의 경기대응성을 추정하였다. 또한 1995~2015년을 삼등분하여 1995~2001년, 2002~2008년, 2009~2015년 시기별 재정정책의 경기대응성도 추정하였다.¹⁰⁾ <표 2>는 위 회귀분석을 국가별·시기별로 실시하여 얻은 β 값, 즉 국가별·시기별 재정정책의 경기대응성을 보여준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의 경우 OECD국가 평균보다 재정정책의 경기대응성이 더 높으며, 시기별로 나누어볼 경우 최근 들어 경기대응성이 더욱 높아지는 추세이다. 또한 최근 재정위기를 겪었던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의 국가에서 재정정책의 경기대응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9) 아웃풋갭 또는 기초재정수지 데이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10개국 제외

10) 1995~2001년 추정치의 경우 일부 국가에서 데이터가 1996년 이후에 존재하기 시작하여 이들 국가에서는 적은 연도 샘플을 바탕으로 한 추정치기에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낮음

〈표 2〉 국가별·시기별 재정정책의 경기대응성

	2001~2015년	1995~2001년	2002~2008년	2009~2015년
Australia(AUS)	-0.422	-0.26	-1.075	-1.516
Austria(AUT)	0.206	-1.227	0.189	0.938
Belgium(BEL)	0.405	-0.092	0.392	1.138
Canada(CAN)	0.137	-0.585	0.744	1.339
Denmark(DNK)	0.167	-0.123	-0.189	1.885
Estonia(EST)	-0.1	0.504	-0.058	-0.176
Finland(FIN)	0.255	0.052	0.313	1.478
France(FRA)	0.184	-0.215	0.278	2.564
Germany(DEU)	0.333	-1.669	0.142	1.032
Greece(GRC)	-0.147	-0.802	-0.073	-0.149
Ireland(IRL)	-0.242	-0.382	-0.33	0.304
Italy(ITA)	0.159	-0.696	0.574	0.523
Japan(JPN)	0.893	0.613	1.527	1.281
Korea(KOR)	0.266	0.123	0.201	1.093
Luxembourg(LUX)	0.346	0.172	0.273	0.693
Netherlands(NLD)	-0.166	-1.183	-0.143	0.337
New Zealand(NZL)	0.149	0.02	-0.84	2.486
Norway(NOR)	0.911	-0.911	0.586	0.34
Portugal(PRT)	-0.107	-0.182	0.738	-0.411
Slovak Republic(SVK)	0.143	0.747	0.07	2.049
Slovenia(SVN)	0.107	-1.031	0.004	1.024
Spain(ESP)	-0.217	-0.23	-0.368	-1.019
Sweden(SWE)	0.324	-0.629	0.422	0.731
United Kingdom(GBR)	0.069	-0.983	1.21	1.265
United States(USA)	0.141		1.394	1.262
평균(표준편차)	0.152 (0.307)	-0.374 (0.614)	0.239 (0.610)	0.820 (0.983)

V. 재정정책의 경기대응성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본 절에서는 OECD 국가별 재정정책의 경기대응성을 추정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재정위기를 겪었던 국가들 중 상당수는 재정정책의 경기대응성이 매우 낮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기대응적인 재정정책은 경기변동의 폭을 줄여 경기를 안정화시키고, 호황일 때 재정여력을 쌓아두어 불황일 때 경기부양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본 절에서는 이와 같은 경기대응적인 재정정책의 장점이 현실에서 나타났는지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재정정책의 경기대응성이 경기안정, 경제성장,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분석한다. 다만 자료의 한계로 인해 재정정책의 경기대응성을 추정한 국가의 숫자가 많지 않기에 엄밀한 통계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인과관계를 증명하였다기보다 단순 상관관계를 통해 가능성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이해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1. 재정정책의 경기대응성이 경기안정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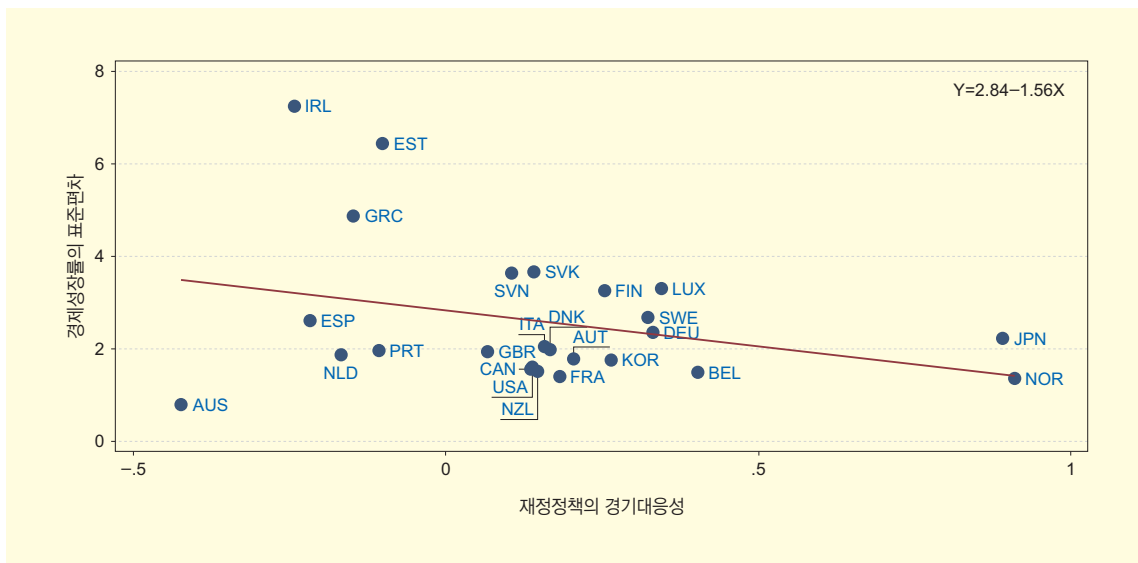
재정정책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경기변동의 진폭을 줄여 경기를 안정화시키는 것이다. 즉 호황일 때는 정부지출을 줄이고 세입을 늘려 경기가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고, 반대로 불황일 때는 정부지출을 늘리고 세입을 줄여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다. 정부의 복지지출과 누진적 조세체계와 같은 자동안정화 장치로 인해 정부의 재량적인 노력 없이도 재정정책의 체계 자체가 자동적으로 경기안정화 역할을 하게 되며, 이에 정부의 재량적인 노력을 더하여 더욱 적극적인 경기대응을 할 수도 있

“
**자동안정화 장치와 정부의 재량적 노력이 올바른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불황일 때는 정부지출이 늘고
 세입이 줄어 재정수지가 나빠지며,
 호황일 때는 정부지출이 줄고 세입이 늘어
 재정수지가 좋아진다.**
 ”

다. 자동안정화 장치와 정부의 재량적 노력이 올바른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불황일 때는 정부지출이 늘고 세입이 줄어 재정수지가 나빠지며, 호황일 때는 정부지출이 줄고 세입이 늘어 재정수지가 좋아진다. 이러한 경기대응적 재정정책은 경기변동의 진폭을 줄여 경기를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림 7]에서 이 같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에서 가로축은 2001년에서 2015년 사이 재정정책의 경기대응성을 나타내고, 세로축은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의 표준편차를 나타낸다. 경제성장률의 표준편차가 클수록 경기변동의 폭이 커 경기가 불안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정정책의 경기대응성이 높은 국가일수록 경제성장률의 표준편차가 작아 경기가 안정적이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 재정정책의 경기대응성이 경기안정화에 미치는 영향



주: 국가 영문명은 <표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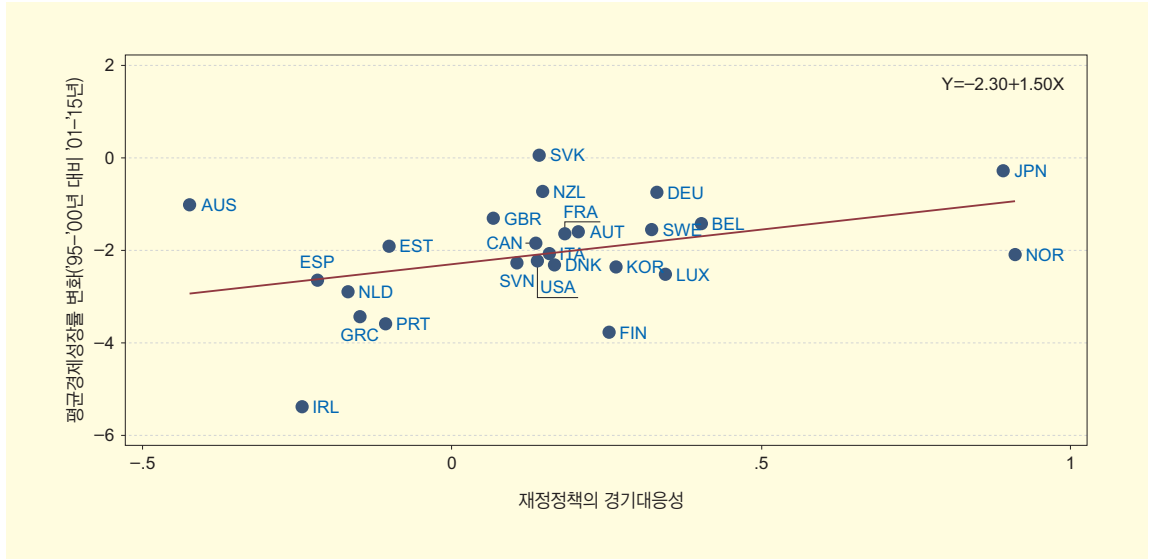
2. 재정정책의 경기대응성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재정정책이 경기대응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면 경기가 호황일 때는 재정수지 흑자를 통해 재정여력을 쌓아두었다가 경기가 불황일 때 더욱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을 펼칠 수 있다. 따라서 급격한 경기하락을 방지하고 경기회복의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다. 또한 경기대응적인 재정정책으로 인해 경기가 안정적인 국가에서는 경기변동에 대한 불확실성이 적기에 민간투자도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재정정책의 경기대응성은 경기변동의 진폭뿐만 아니라 경제성장 자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림 8]에서는 이 같은 점을 확인하기 위해 재정정책의 경기대응성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보여준다. 가로축은 2001~2015년 재정정책의 경기대응성이며 세로축은 2001~2014년 연간 경제성장률의 평균과 1995~2000년 연간 경제성장률 평균의 차이이다. 즉 2001년을 기준으로 전 시기와 이후 시기의 경제성장률 차이이다.¹¹⁾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정정책의 경기대응성이 높은 국가에서 경제성장률 증가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11) 경제성장 속도의 국가 간 차이는 최소한 단기 또는 중기에서는 크게 변하지 않고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국가별 고유한 경제성장 속도를 통제하기 위해 2001~2015년 경제성장률 자체 대신 1995~2000년 평균 경제성장률 대비 2001~2015년 평균 경제성장률이 증가한 정도를 사용하였다.

[그림 8] 재정정책의 경기대응성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주: 국가 영문명은 <표 2> 참조

3. 재정정책의 경기대응성이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

재정정책이 경기대응적일 경우 호황일 때 재정여력을 쌓아두었다가 불황일 때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을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호황일 경우 재정수지 흑자로 인해 국가채무가 다소 줄어들고, 불황일 때 재정수지 적자로 인해 국가채무가 다소 늘어나지만 중기적으로 볼 경우 국가채무 수준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물론 호황 때 아껴두는 정도와 불황 때 사용하는 정도가 비대칭적일 수 있어 정확히 서로 상쇄되지는 않을 것이며, 인구고령화로 인한 지출이 늘어나는 등 국가채무가 일정 수준에서 머무르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른 조건이 비슷하다면 경기대응적인 재정정책을 펼치는 국가에서는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낮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는 재정정책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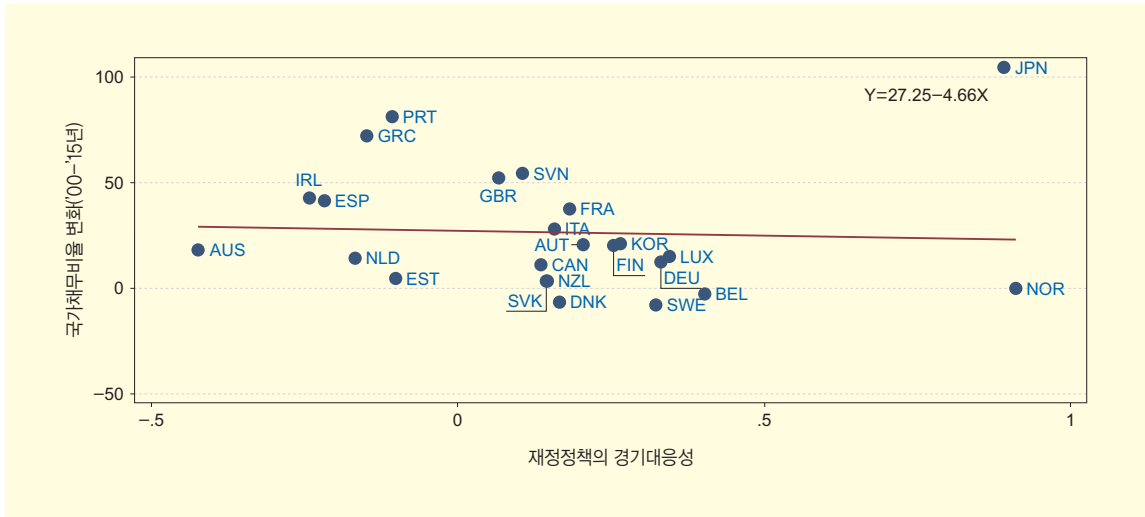
경기대응적일 경우 호황 때 재정을 낭비하지 않고 아끼기 때문이며, 또한 경기대응적 재정정책이 경기를 부양하며 장기적인 경제성장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면 GDP 자체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되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줄이는 데 또는 덜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림 9]에서는 이 같은 점을 확인하기 위해 재정정책의 경기대응성과 국가채무비율의 증가 사이의 관계를 보여준다. 가로축은 2001~2015년 재정정책의 경기대응성이며 세로축은 2000년 대비 2015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의 증가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정정책의 경기대응성이 높은 국가에서 국가채무비율의 증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본은 재정정책의 경기대응성이 높으면서 국가채무비율 증가가 다른 국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특이값(outlier)으로 보이기에 [그림 10]에서는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재정정책의 경기대응성과 국가채무비율 증가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림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을 제외할 경우 재정정책의 경기대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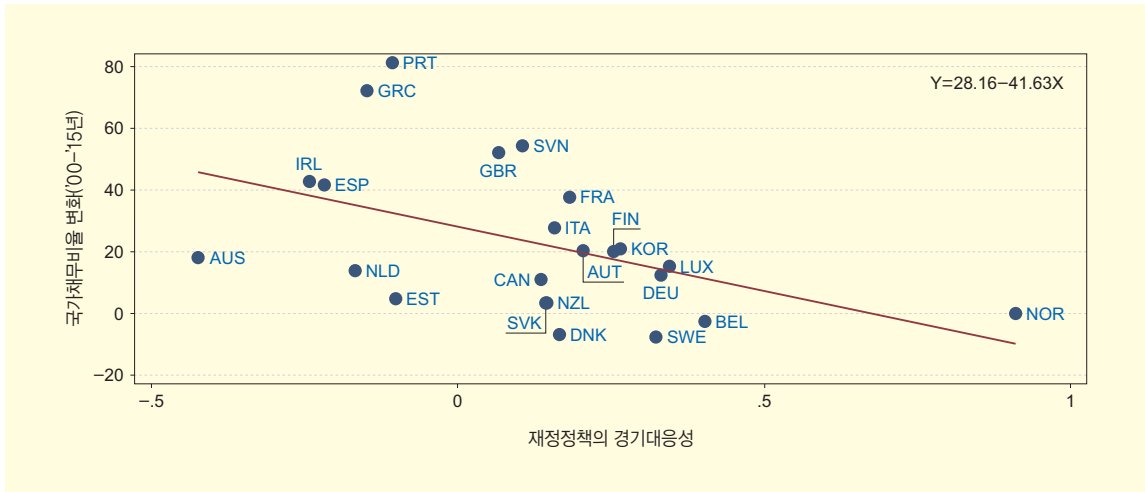
이 높을수록 국가채무비율 증가가 낮아지는 경향은 더욱 뚜렷해진다.

[그림 9] 재정정책의 경기대응성이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



주: 국가 영문명은 <표 2> 참조

[그림 10] 재정정책의 경기대응성이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일본 제외)



주: 국가 영문명은 <표 2> 참조

VI. 결론

본 연구에서는 OECD 국가별 재정정책의 경기대응성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특히 최근 들어 재정정책의 경기대응성이 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최근 재정위기를 겪었던 국가 중 상당수는 재정정책의 경기대응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후적인 비교를 통해서 경기대응적인 재정정책이 가지는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좀 더 구체적인 비교를 위해 재정정책의 경기대응성이 경기안정, 경제성장,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경기대응적인 재정정책은 경기변동의 진폭을 줄여 경기를 안정화시키고, 경제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국가채무 증가를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출산율과 가장 빠른 속도의 고령화를 기록하고 있어 향후 국가재정에 대한 우려가 크다. 정책적 관점에서 볼 경우 의무지출의 확대로 인한 국가채무의 증가가 쉽게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면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를 최소화하고 특히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노력의 핵심은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재정정책의 경기대응성이 약해지지 않는 것이다.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특히 중요한 점은 경기가 호황일 때 재정여력을 쌓아두는 것이다. 경기가 좋아 세입이 늘어날 때 재정규율 또한 느슨해져 재정이 낭비될 우려가 크다. 세금이 당장의 필요 이상으로 잘 걷히다 보니 선심성으로 세금을 인하하거나 지출을 늘리려는 경향이 있다. 국가채무 증가를 억제하고 국가채무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경기순응적 재정정책을 경계하여

“
**재정정책이
 경기대응적 성격을 가지기 위한
 정치적·제도적 요인을 밝혀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찾는 것이 중요한
 향후 과제이다.**
 ”

경기가 좋을 때 재정여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OECD국가 중 아웃풋갭과 기초재정수지 자료가 존재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에 분석에 포함된 국가 숫자가 많지 않다. 따라서 좀 더 엄밀한 통계분석을 위해서는 분석에 포함된 국가를 늘릴 필요가 있다. 향후에 OECD 선진국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까지 포함하여 분석을 할 경우 엄밀한 통계분석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경제발전 수준에 따른 다양한 분석이 가능해지기에 이는 중요한 향후 과제이다. 또한 국가별로 재정정책의 경기대응성이 다른 이유를 분석하는 것도 흥미로운 과제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경기변동의 정도, 부패의 정도, 양극화의 정도 등에 따른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차이로 이해하고 있지만, 본 연구의 추정 결과 발전수준이 비슷한 OECD국가 사이에서도 재정정책의 경기대응성은 큰 편차를 보인다. 따라서 재정정책이 경기대응적 성격을 가지기 위한 정치적·제도적 요인을 밝혀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찾는 것이 중요한 향후 과제이다. [kipf](#)

〈참고문헌〉

- Alesina, Alberto, and Tamim Bayoumi, “The costs and benefits of fiscal rules: Evidence from US states,” NBER Working Paper, No. w5614, 1996.
- Alesina, Alberto, Filipe R. Campante, and Guido Tabellini, “Why is fiscal policy often procyclical?,” *Journal of the European Economic Association*, 2008, pp. 1006–1036.
- Baum, Anja, Cristina Checherita–Westphal, and Philipp Rother, “Debt and growth: New evidence for the euro area,” *Journal of International Money and Finance*, 2013, pp. 809–821.
- Canova, Fabio, and Evi Pappa, “Does it cost to be virtuous? The macroeconomic effects of fiscal constraints,” NBER International Seminar on Macroeconomics 2004, The MIT Press, 2006.
- Checherita–Westphal, Cristina, and Philipp Rother, “The impact of high government debt on economic growth and its channels: An empirical investigation for the euro area,” *European Economic Review*, 2012, pp. 1392–1405.
- Égert, Balázs, “Public debt, economic growth and nonlinear effects: Myth or reality?,” *Journal of Macroeconomics*, 43, 2015, pp. 226–238.
- Fatás, Antonio, and Ilian Mihov, “Government size and automatic stabilizers: International and intranational evidenc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55(1), 2001, pp. 3–28.
- Fatás, Antonio, and Ilian Mihov, “The case for restricting fiscal policy discretion,”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8(4), 2003, pp. 1419–1447.
- _____. “The macroeconomic effects of fiscal rules in the US state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90(1), 2006, pp. 101–117.
- _____. “Policy volatility, institutions, and economic growth,”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95(2), 2013, pp. 362–376.
- Herndon, Thomas, Michael Ash, and Robert Pollin, “Does high public debt consistently stifle economic growth? A critique of Reinhart and Rogoff,”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2014, pp. 257–279.
- Kumar, Manmohan, and Jaejoon Woo, “Public debt and growth,” IMF working papers, 2010, pp. 1–47.
- Lane, Philip R. “The cyclical behaviour of fiscal policy: Evidence from the OECD,” *Journal of Public Economics*, 2003, pp. 2661–2675.
- Levinson, Arik. “Balanced budgets and business cycles: Evidence from the states,” *National Tax Journal*, 1998, pp. 715–732.
- Panizza, Ugo, and Andrea Filippo Presbitero. “Public debt and economic growth in advanced economies: A survey,” *Swiss*

- Journal of Economics and Statistics*, 2013, pp. 175–204.
- Panizza, Ugo, and Andrea F. Presbitero, “Public debt and economic growth: Is there a causal effect?,” *Journal of Macroeconomics*, 2014, pp. 21–41.
- Poterba, James M., “State responses to fiscal crises: The effects of budgetary institutions and politic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2(4), 1994, pp. 799–821.
- Reinhart, Carmen M., and Kenneth S. Rogoff, “Growth in a time of debt,” *American Economic Review*, 2010, pp. 573–578.
- Talvi, Ernesto, and Carlos A. Vegh, “Tax base variability and procyclical fiscal policy in developing countries,”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2005, pp. 156–190.
- Tornell, Aaron, and Philip R. Lane, “The voracity effect,” *American Economic Review*, 1999, pp. 22–46.
- Woo, Jaejoon, “Why do more polarized countries run more procyclical fiscal policy?,”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2009, pp. 850–870.



정책토론투리포트

■ 제51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 개최



제51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 개최

개요

- 주 제 상속·증여세제가 세대 간 부의 축적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
- 일 시 2017년 3월 10일(금), 14:00~16:00
- 장 소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주 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프로그램

13:30~14:00 등록

14:00~14:10 개회

▶ 개 회 사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14:10~15:50 주제발표 및 종합토론

▶ 사 회 자 곽태원 서강대학교 교수

▶ 발 표 자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패널센터장

「상속·증여세제가 세대 간 부의 축적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

▶ 토 론 자 김갑순 한국세무학회 회장·동국대학교 교수

박 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윤지현 서울대학교 교수

이용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

장경덕 매일경제 논설위원

(가나다순)

15:50~16:00 객석 토론 및 마무리

* 본 원고는 2017년 3월 10일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개최한 「제51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 개최」의 주제 발표 및 토론 요약입니다. 주제 발표 및 토론의 내용은 소속기관이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편집자 주>



주제발표

상속·증여세제가 부의 축적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

오종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패널센터장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박형수)은 제51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하여 2017년 3월 10일 오후 2시부터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상속·증여세제가 부의 축적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
 - 이번 심포지엄은 저성장·고령화 사회에 직면한 우리 경제에서 투자와 소비를 진작시키고 경제를 활성화할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고령층에 집중되어 있는 자산이 젊은 계층으로 원활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상속세 및 증여세제 운용 방안에 관하여 논의의 장을 마련
-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패널센터장이 주제발표를 맡아 「상속·증여세제가 부의 축적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주요 연구 결과를 발표

〈주요 연구 결과〉

-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제의 다음 두 가지 특징은 동일한 자산이전이라도 상속과 증여의 세 부담 차이를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
 -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반면, 증여세

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자산을 이전받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과세하여 과세방식에 차이가 존재

- 자녀에 대한 자산이전 시 상속은 5억원까지 상속세 부담이 없는 반면, 증여는 일반적으로 10년 합계 5천만원까지 세 부담 없음
- 동일한 자산이전 행위에 대해 자산이전의 시기가 다르다는 이유로 세 부담이 달라지면,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자산이전 행위에 왜곡이 발생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야기
 - 상속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증여에 대한 세 부담은 고령층으로부터 젊은 계층으로의 자산이전 시기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
-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증여세를 완화할 경우 소비가 진작되는지에 대해 분석
 - 저성장·고령화에 직면한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고령층으로부터 경제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고 소비성향이 높은 젊은 계층으로 자산이 이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존재
- 조사 결과 증여세의 완화가 실질적으로 자산이전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며, 자산이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소비 진작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움
 - 순자산이 5억원 이상인 55세 이상의 부모세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증여세제의 직계존속 공제금액을 2억원으로 확대하더라도 자산이전은 평균 2,243만원에 그칠 것으로 조사
 - 한편, 30~45세의 자녀세대의 경우 1억원의 자금을 지원받는다면 향후 1년간 약 1,261만



- 원을 소비지출에 사용하는 반면, 부채상환에는 1,750만원, 저축 및 투자에는 5,293만원 사용한다고 응답해 단기적으로는 소비보다는 저축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부채상환이나 저축 등은 미래의 예산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주된 목적은 주택자금과 결혼자금의 지원
 - 부모세대는 자녀에게 평균 1억 6,240만원가량의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1억 2,778만원이 주택자금 및 결혼자금으로 전체 지원의 약 78.68%를 차지
 - 자녀세대는 부모로부터 평균 3억 1,208만원 가량의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2억 7,217만원이 주택자금 및 결혼자금으로 전체 지원의 약 87.21%를 차지
 - 중첩세대 일반균형모형 분석을 통해 상속·증여세제가 자산이전 및 자산분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
 - 이타적 동기에 의해 자산을 이전한다는 가정하에 분석
 - 증여세제의 공제제도를 확대하는 방안과 상속세와 증여세의 전반적인 실효세율을 변화시키는 상황에 대해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
 - 증여세제의 공제제도를 확대할 경우 전체적인 자산이전이 증가
 - 증여의 상대가격이 하락하여 증여는 증가하고 상속은 감소하지만 증여의 증가폭이 상속의 감소폭보다 커 전체적인 자산이전은 증가
 - 증여세제의 공제제도를 확대하여 상속보다 증여를 유도한다면 특정한 상황에서 자산의 불평등도가 완화될 수도 있음을 발견
 - 상속·증여세제의 완화는 부의 대물림을 확대하여 자산 불평등도를 악화시킨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주장
 - 하지만 본 연구에서 증여를 유도할 경우 직관과 반대의 결과가 도출된 이유는 자산이전의 동기를 이타적 동기로 가정하였기 때문
 - 이타적 동기에 의하면 부모는 자녀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수준을 고려해 자산수준이 높은 자녀보다 낮은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하려는 유인이 존재하여 자발적인 자산의 재분배 효과가 발생하며, 증여세의 완화는 이러한 자발적 자산 재분배를 촉진
 - 반면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예측치 못한 사망으로 인한 의도치 않은 자산이전이 포함되어 있어 자발적 자산 재분배 기능이 약함
 - 자산분포에 대한 분석 결과는 이론적 결과로, 상속·증여세제가 부의 재분배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
 - 특히 자산이전의 동기가 달라질 경우 자산 불평등도에 대한 결과도 달라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와 이론적 연구가 필요



트론요약

상속증여세 완화, 세후 부모와 자식 자산의 합을 증가시킬 수 있어

김갑순 / 한국세무학회 회장 · 동국대학교 교수

국가마다 상속증여세에 관한 여러 가지 논쟁이 있고 폐지된 국가도 있다. 상속증여세에 대해 존재 문제를 논하기보다는, 국가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상속증여세가 의미가 있는 제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약한 수준 혹은 강한 수준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상속세 폐지론 중 설득력 있게 와 닿았던 것을 잠깐 소개하자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돈에 대해서만 과세하지 말고 훌륭한 외모, 좋은 목소리와 같은 능력에 대해서도 과세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발제문의 내용 중 공감하는 점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증여세법상 직계존속 공제를 증가시키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이전하는 자산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유는 부모가 자식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방법이 합법적인 증여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자산이나 소득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증여세를 완화한다고 해서 자산규모나 속도를 가속화시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자식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것은 부동산을 물려주거나 사업체를 물려줌으로써 기회를 주는 것이지 자식의 소비를 높이기 위해 이전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

둘째로, 주요 국가들의 상속증여세는 상속과 증여에 대한 부모의 의사결정에 왜곡을 주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증여가 상대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는 이전방식이다 보니 상속과 증여 사이에서 갈등을 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면 증여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은 첫 번째로, 회귀분석 결과 자산의 증가가 소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온 부분과 관련하여 발표자께서 이러한 결과가 직관적이지 않다고 해석한 점이다. 행동경제학의 연구들을 보면 심리적으로 사람들은 뜻하지 않는 작은 공돈이 생기면 이를 쉽게 소비하는 경향이 높지만 큰 공돈이 생기면 이 돈은 쉽게 쓰지 않고 길게 보며, 소비나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증여 금액이 클수록 수증자(자녀)가 소득보다는 자산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단기적으로 소비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회귀분석의 자산 증가가 소비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행동경제학의 관점에서는 타당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로, 일반모형에 의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부모는 상대적으로 자산을 적게 보유하고 있는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주는 것에 더 큰 효용을 느낀다고 분석했는데, 부모가 상대적으로 가난한 자식에게 자산을 이전하면 부모와 자식을 별개의 개인으로 보는 관점에서의 불평등은 완화되겠지만 부모와 자식을 각각의 경제주체로 보고 자산의 불평등을 분석하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경제적 부의 관점 특히, 소득보다 자산의 관점에서는 부모와 자식을 하나의 경제단위로 볼 수도 있으며 그렇게 볼 경우 상속증여세의 완화는 그 이전에 비해 세후 부모와 자식 자산의 합을 증가시킴에 따라 오히려 자산의 불평등도를 심화시킬 수도 있다.

고령세대와 자녀세대 간 소득 불균형 문제의 원인은 고성장시대의 부모세대와 저성장시대의 자녀



세대, 즉 사회구조적인 문제로부터 파생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세제를 통한 세대간 부의 이전을 목표로 할 때 그것은 부모세대 전체에서 자녀세대 전체로의 이전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헌법」 제 119조 2항에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적정한 소득분배의 유지를 위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세대간 부의 집중이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되고 있다면 상속증여세뿐만 아니라 상속증여세를 포함한 전체 세제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실제 10억원 이상의 상속, 5천만원 이상의 증여 자산에 상속증여세 적용돼

박 훈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상속증여세에 관한 실증분석은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할 경우 왜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지 숫자를 제시하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분석이다.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과 함께 경실련의 입장에서 말하겠다. 경실련은 1989년에 부동산가격이 폭등하면서 이에 따른 부의 불공평성, 경제적 불의에 대항하기 위해 시작된 시민단체이다. 중산층을 두텁게 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며 세제를 통해 부의 재분배를 해야 된다는 것이 경실련의 입장이지만 경실련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각론에 있

어서는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혀둔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모세대가 자녀에게 이전한 금액은 평균 1억 6천만원 정도 되고 자녀세대가 부모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은 약 3억 1천만원 정도가 된다고 나왔는데, 실제로는 상속받는 자산이 10억원이 넘거나 증여받는 자산이 5천만원이 넘을 경우에 상속증여세가 적용된다. 이는 등록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아 학생 때부터 빚을 지게 되는 청년들의 현실을 보았을 때, 공감되지 않는 금액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상속증여세의 완화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다른 납세자의 입장에서 반감을 살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자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생기면서 소유한 자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경우도 있다. 상속증여세의 완화가 이러한 경우에 대해 혹시라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상속증여세의 효율성의 측면에서 보면, 일본의 경우 2003년에 ‘상속 시 정산과세제도’를 도입하고 2013년에 ‘교육자금 증여 비과세’, 2015년에 ‘결혼·육아자금 비과세’를 도입함으로써 세대 간 자산이전을 촉진하는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나 제30조의 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세대 간 자산이전이 촉진되고 있는지와 그 사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에서는 상속세 폐지가 논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럴 경우 이러한 설문과 실증분석을 통한 결과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상속세가 유산세 방식을 취하는 것은 과세행정의 어려움 때문

윤지현 / 서울대학교 교수

세금이라는 주제는 독특한 측면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배경이 다양하다는 것이다. 법학에서 출발하는 사람도 있고 회계학, 경제학에서 출발한 사람들도 있는데 모두 시각이나 설명하는 방식이 다르다. 그러다 보니 종종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그만큼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도 있다고 본다. 이번 심포지엄의 패널도 다양한 배경을 가진 분들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저는 주로 법을 다루는 입장에서 생각한 내용들을 말씀 드리겠다.

발제 내용 중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상속세와 증여세 간에 차이가 있으니 이것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공감한다. 특히 유산취득세라고 하는 것이 개개인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얼마나 과세하는 것이 공평한지 감안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의미에서 이상적인 세제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세가 유산세 방식을 취하는 이유는 과세행정의 어려움 때문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의 증여세제가 어차피 개개인이 취득한 재산을 일일이 포착하여 과세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그러한 것이 가능하다면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하는 것이 꼭 행정부담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늘리는 것인지는 한 번 생각해볼 문제이다.

기본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는 서로 보완관계에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서 유산이 한꺼번에 이전되는 것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데 여기에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피상속인은 살아 있

는 동안에 조금씩 나눠서 증여할 유인이 생긴다. 그래서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대신 나중에 상속받을 때 납부한 증여세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데, 발제문에 제시된 것처럼 공제가 아닌 환급을 해주자는 아이디어는 참신하다고 느꼈다. 이렇게 환급을 해준다면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담이 사후적으로 같아지게 되고 그에 따라 의사결정의 왜곡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와 같이 하는 것이 이론적을 불가능할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든다.

꼭 발제문의 내용이 그렇다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세금을 어떤 정책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세법 그 자체에 존중되어야 할 고유한 논리가 있고, 특히 공평의 문제가 중요하므로 이를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경제정책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로 세금을 물리기도 하고 깎아주기도 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특히 상속증여세의 경우 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고 따라서 상속증여세만 가지고 실제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개선하는 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고 본다. 세제의 공평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가지는 인식도 못지않게 중요하며, 이 점에서 상속증여세는 극히 중요한 세금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세제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면 그 자체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단순히 어떤 경제정책적 이유에서 공평에 관한 고려 없이 상속증여세를 줄여주는 입법을 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앞으로 정부가 할 일이 많을 것이고 당연히 세금을 걷을 일도 많을 것이다. 증세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세제가 어느 정도 공평하다고 사람들이 인식하지 않는다면 어떤 방향으로든 증세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속증여세의 완



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의문이 남는다.

미국은 공제에 있어 증여와 상속 간 차이 없어

이용주/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

상속세는 보는 관점에 따라 논란이 있는 세제이다. 부자감세라고 말하기도 하고,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데 왜 세금을 내야 되냐고 말하기도 한다. OECD 국가 중 12개의 국가에서 상속세를 폐지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소득불평등도가 높고 소득불평등보다는 부의 불평등도가 높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1935년 의회 연설문에서 '우리나라 선조들이 정치적 세습을 거부했듯이 부의 세습도 거부한다'며 상속세의 타당성에 대해서 말했다.

우리나라 상속세의 최고세율은 50%로 일본의 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재작년 기준 상속세의 세수는 5조원이다. 이는 전체 국세 수입의 2.3%, 지방세를 포함한 총조세의 1% 수준이다. 이렇게 상속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논란은 계속 되어 왔다.

상속증여세는 주로 부모와 자식 간 자산이전이다. 조세회피가 있고 편법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증여재산 공제액은 10년간 5천만원이다. 그러나 국세청에서 자금출처조사를 할 때 그 대상은 30세 이상의 세대주가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 2억원이 기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2억 미만의 금액은 부모로부터 받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법에서는 증여재산 공제액을 5천만원으로 두지만

현실에서는 그 이상을 증여받고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있다. 국민들이 법을 잘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인지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상속세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원 이상의 재산에 대해서만 부과되므로 전체 사망자 중 상속세를 내는 사람은 2~3%이다. 증여세제가 상속세제보다 공제금액이 적은데 이는 조세의 중립성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증여공제와 상속공제를 통합해서 543만달러를 공제해준다. 즉 공제에 있어서 증여와 상속 간에 차이가 없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앞서 박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03년에 '상속 시 정산과세제도'를 도입하고 2013년에 '교육자금 증여 과세특례', 2015년에 '결혼·육아자금 과세특례'를 도입하여 증여를 용이하게 하였다.

발제문의 분석 결과 중 상속증여세의 완화가 소비보다는 부채상환이나 투자로 이어진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하자면, 현재 가계부채 때문에 소비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소비에 효과가 없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소비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지난해 통계청의 가계평균 소비성향은 71.1%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산의 증가는 소비로 이어질 것이다.



좀 더 큰 틀에서 소득세, 소비세, 재산세를 다 함께 개선해야

장경덕/매일경제 논설위원

현재 우리 사회에서 상속증여세와 부의 대물림은 가장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이다. 상속증여세를 완화해서 소비를 촉진시키고 경제성장을 끌어올려 모두가 혜택을 보는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상속증여세를 좀 더 강화해서 부의 대물림에 대해 좀 더 엄격하게 대해서 형평성을 높일 것이냐 하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선택을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발제문의 내용 중 ‘증여세 공제를 늘리면 지니계수로 측정한 경제 전체의 불평등도가 개선된다’는 내용이 가장 눈에 띄었다. 공제 확대가 소비도 높여주고 불평등도도 줄인다면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직관과 통념에 맞지 않는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해석이 필요하며 선블리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상속증여세와 관련해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보는 부분은 부의 대물림이다. 부의 대물림 문제를 주목하지 않고 이번 연구의 잠정적인 결과만을 보고 정책 선택을 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상속증여세의 완화로 소비를 활성화시킬지, 상속증여세를 강화하여 부의 불평등을 개선할지,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을 중시할지 판단을 해야 한다. 발제문의 내용 중 ‘상속증여세를 완화하면 자산의 이전만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저축에 대한 비용도 감소시켜서 경제 전체의 자산축적을 증가시킨다’고 나와 있는데 과연 자산축적을 증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적어도 단기적으로 추구해야 될 목표인지 의문

이 든다. 소비활성화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자산을 축적하지만 말고 적극적으로 소비활동을 통해 성장하고 일자리를 늘려서 모든 사람이 혜택을 보는 논리를 펼치는데, 이 경우 자산축적이 늘어난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순자산(국부 총액)이 한 해 GDP의 8배이다. 선진국들보다 아주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상당히 부의 축적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상속증여세에 대한 개선뿐만 아니라 좀 더 큰 틀에서 소득세, 소비세, 재산세를 다 함께 개선하는 정책 선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느 한 세목도 모든 정책 목적을 다 이룰 수 없고 실행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한다. 증여세를 완화한다면 재산세를 좀 더 현실화하고 장기간에 걸쳐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를 통합해서 과세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현재는 상속증여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지만, 앞으로는 본격적인 상속의 시대가 될 것 같다. 국민소득에 비해서 상속액이 얼마나 될지는 크게 세 가지 요인에 따라 결정되는데 첫째, 생존자의 평균자산에 비해서 사망자의 평균자산이 많을수록 둘째, 전체 인구에 비해 사망자가 많을수록 셋째, 국민소득에 비해서 국민총자산이 많을수록 경제규모에 비해 상속의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흡수저론이나 세습자본주의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KIP**



주요국의 조세 · 재정동향

* 이 자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의 「주요국의 조세동향」과 재정지출분석센터에서 발간하고 있는 「재정동향」 자료를 요약 · 정리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주요국의 조세동향

동향 17-3

> 아메리카

[캐나다-조세회피 방지 권고안 도입계획 및 성과 발표]

- 캐나다 재무장관은 2017년 2월 20일 재무의회 (House of committee Standing Committee on

Finance)가 발표한 '캐나다 국세청 및 조세회피 방지에 관한 제안 사항'을 모두 수용할 것이라 발표함¹⁾

- 캐나다 재무의회는 2016년 10월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권고사항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음
-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권고사항으로 14가지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주요 권고사항으로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자발적공시시스템, 국세청 행위규범 등의 검토와 파나마 페이퍼컴퍼니 세무조사 강화 및 조세조약 체결국과 세무조사 공조 등이 있음

<표 1> 캐나다 재무의회의 조세회피 방지 권고사항

번호	권고사항
1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advance income tax ruling) 검토: 적시성, 효과성을 높이고, 행정비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정 필요
2	의무보고규정 정비: 미국은 납세자뿐 아니라 조세전문가도 조세전략을 보고하도록 보고의무를 지우고 있으며, 미국의 사례를 참고해 개정할 필요성 제기
3	자발적공시제도 ¹⁾ 정비: 자발적 공시시스템에 의해 공시한 특정거래가 소송대상인지 납세자와 협의로 해결할 문제인지 판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의 검토 필요
4	역외탈세거래 제보자 정보 보안 강화
5	캐나다 국세청은 파나마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세무조사
6	국내외 공격적 조세회피 전략을 파악하기 위한 기술 및 인적자원 증가
7	조세격차 ongoing basis로 추정
8	조세 복잡성, 불명등을 줄이기 위해 소득세법 재검토
9	캐나다 국세청과 검찰 간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공조 강화
10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세청 성과통계자료 제공 계획 마련
11	92개의 조세조약과, 22개의 정보교환 협정 검토
12	조세조약 체결국과 세무조사 공조 강화
13	BEPS 프로젝트 권고사항 이행
14	국세청 행위규범 (code of conduct) 검토

출처: 캐나다 의회(House of Commons Chambre des Communes Canada), "The Canada Revenue Agency, Tax Avoidance and Tax Evasion: Recommended Actions," Chapter 4, 2016.10.

1) Tax notes, "Canada-Government Accepts Committee's Recommendations on Tax Evasion," 2017.03.06., 캐나다 국세청,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news/2017/02/government_of_canadatablesitsresponsetothestandingcommitteeonfin.html, 2017.02.23.(접속일: 2017년 3월 23일)

- 캐나다 국세청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역외탈세 관련 전문적인 세무조사를 위한 부서 신설, 전문가 위원회 구성, 탈세제보 프로그램을 통한 국제거래 분석 작업 등을 진행해옴²⁾
 - 캐나다는 납세순응 제고를 위해 자발적 공시 제도(VDP),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순응 제고를 위한 ‘Liaison Officer Initiative’, 의무보고 규정 등을 운영 중임
 - ‘Liaison Officer Initiative’는 국세청 담당자가 소규모사업자의 사업장을 방문해 조세이슈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며 신고서를 정확히 작성할 수 있도록 장부기장, 신고서 작성 실수 등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하는 제도임³⁾
 - 캐나다 국세청은 2013년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부서(Offshore Compliance Division)를 신설하므로 대기업과 역외탈세를 조사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증원함
 - 또한, 2016년 4월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전문가 위원회(OCAC)’를 신설하였으며, 역외탈세방지를 위한 방안에 대해 국세청에 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함
 - 2014년 1월 역외 탈세거래 제보 프로그램(Offshore Tax Informant Program)을 신규 도입하여 해당 제도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기반으로 현재 추가 징수를 위한 41,000개(12억캐나다달러 상당)의 국제금융거래 분석을 수행함
 - 역외 납세정보 보고제도는 10만캐나다달러 이상의 세수증가를 가져오는 전자자금이체거래(Electronic Funds Transfer)를 제보한 개인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임
- 매년 맨섬(Isle of Man), 저지(Jersey) 외 2개 국가와 관련된 거래와 1만캐나다달러를 초과하는 전자자금이체거래에 대해 세무조사를 수행함

- 캐나다 재무부는 조세회피방지를 위해 향후 5년 동안 총 444.4백만캐나다달러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캐나다 국세청은 13억캐나다달러를 회수하기 위한 역외탈세 관련 세무조사를 진행중임
- 2016년 예산안에서 조세회피방지에 편성된 예산은 세무조사를 위한 추가 인력 및 전문가 선임, 신고서 검증활동 강화 등에 사용될 목적으로 편성된 것임

(자료 수집 및 정리: 김민경 연구원)

2) 캐나다 의회(House of Commons Chambre des Communes Canada), "The Canada Revenue Agency, Tax Avoidance and Tax Evasion: Recommended Actions," Chapter 2, 2016.10.

캐나다 국세청,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news/2017/02/government_of_canadatablesitsresponsetothestandingcommitteeonfin.html, 2017.02.23. 자료를 토대로 작성(접속일: 2017년 3월 23일)

3) 캐나다 국세청, <http://www.cra-arc.gc.ca/gncy/cmplnc/thrpnpln/lsnfcntv/loi-qa-eng.html>(접속일: 2017년 3월 23일)



> 유럽

[그리스-2016년 조세피난처 국가 발표]

- 그리스는 2017년 2월 28일 2016년 조세행정예 비협조적인 조세피난처 국가(non-cooperative states) 리스트를 발표함⁴⁾
 - 그리스는 주기적으로 특혜가 과도한 조세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와 조세행정예 비협조적인 국가로 나누어 조세피난처 국가를 발표하고 있음
 - 이번 발표에서는 조세행정예 비협조적인 국가 리스트를 발표한 것이며, 특혜가 과도한 조세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2015년에 업데이트하여 발표한 바 있음

- 조세행정예 비협조적인 국가는 비EU회원국이고, 조세 정보교환과 관련하여 그리스와 협정을 맺지 않거나 12개 이상의 국가와 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를 말함

- 그리스 납세자가 조세피난처로 선정된 국가에 소재한 기업과 거래 시 비용의 손금불산입, CFC소득의 과세, 이전가격과 관련하여 국세청이 보다 정밀하게 검토함
 - 단, 조세피난처로 선정된 국가에 지급한 비용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하였으며, 정상적인 이전가격원칙에 따라 지급한 비용이라 입증하는 경우 해당비용의 공제를 허용함

<표 2> 그리스의 조세행정 비협조 국가 리스트(2016년)

국가	영문명	국가	영문명
안도라	Andorra	말레이시아	Malaysia
앤티가바부다	Antigua and Barbuda	마셜제도	Machall Island
바하마	the Bahamas	모나코	Monaco
바레인	Bahrain	나우루	Nauru
바베이도스	Barbados	니우	Niue
부르나이	Brunei	파나마	Panama
쿡제도	the Cook Islands	필리핀	the Philippines
도미니카	Dominica	세인트키츠네비스	St. Kitts and Nevis
그레나다	Grenada	세인트루시아	St. Lucia
과테말라	Guatemala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홍콩	Hong Kong	사모아	Samoa
레바논	Lebanon	우루과이	Uruguay
리비아	Liberia	미국령 버진제도	the U.S. Virgin Islands
리히텐슈타인	Liechtenstein	바나우투	Vanuatu.
마케도니아	Macedonia		

4) Tax notes, "Greece Ministry of Finance Lists Noncooperative States," 2017.03.06.

- 이번에 발표한 조세행정에 비협조적인 조세피난처 국가는 총 28개국이고 2014년에 발표된 국가와 비교해 5개 국가가 리스트에서 제외되었으며, 1개 국가가 블랙리스트 국가에 추가됨
 - 추가된 국가는 바베이도스(Barbados)이며, 제외된 국가는 저지(Jersey), 모리셔스(Mauritius), 네덜란드령 안틸리스(Netherlands Antilles), 세이셸(Seychelles), 싱가포르임

(자료 수집 및 정리: 김민경 연구원)

- 국내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5%임⁷⁾
- 거주자와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소득과 사용료소득 모두 원천징수세율이 0%이므로 원천징수세 대상에서 제외되나, 이후 거주자의 경우 일반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되는 반면 비거주자의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의무가 종결되므로 과세가 면제됨⁸⁾

(자료 수집 및 정리: 유현영 회계사)

[노르웨이-원천징수세 경정청구 기한 연장]

- 2017년 1월 1일부터 원천징수세의 경정청구 기한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⁵⁾
 - 원천징수 대상 대가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환급을 청구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2012년 2월 14일 지급한 배당금의 경우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원천징수세를 환급받기 위해 경정청구할 수 있음
- 노르웨이 국내법상 이자소득이나 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는 없으며, 배당과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만 존재함⁶⁾

[스웨덴-금융활동세 개정안 취소]

- 2017년 2월 24일 스웨덴 정부는 2016년 11월 제안한⁹⁾ 금융활동세(financial activity tax)가 금융시장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개정안을 취소하기로 결정함¹⁰⁾
 - 금융활동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 다른 산업과 비교해 조세혜택을 받고 있어 금융활동에 법인세 외에 법인세 명목으로 추가적인 세금을 과세할 예정이었음¹¹⁾
 - 집권 여당은 금융활동세를 취소하는 대신 은행서비스(banking services) 과세를 위한 다른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5) E&Y, "Norway: New statute of limitations, withholding tax refund claims," 2017.3.14.

<https://home.kpmg.com/xx/en/home/insights/2017/03/tnf-norway-statute-of-limitations-refunds-withholding-tax.html>(접속일: 2017년 3월 1일)

6) E&Y, *Worldwide corporate tax guide 2016*, p. 1067, 2016. 및 E&Y, *Worldwide Personal Tax and Immigration Guide 2016-17*, p. 1035, 2016.

7) E&Y, *Worldwide corporate tax guide 2016*, p. 1067, 2016. 및 E&Y, *Worldwide Personal Tax and Immigration Guide 2016-17*, p. 1035, 2016.

8) E&Y, *Worldwide corporate tax guide 2016*, p. 1067, 2016. 및 E&Y, *Worldwide Personal Tax and Immigration Guide 2016-17*, p. 1035, 2016.

9) 「조세동향」 16-11-2호. http://www.kipt.re.kr/TaxFiscalPubInfo/TaxFiscalPubTrends_InterTrends-View/스웨덴-금융활동세-도입-제안/524622(접속일: 2017년 3월 21일)

10) KPMG, "Sweden: Proposed tax on financial activity is withdrawn," 2017.2.27.

<https://home.kpmg.com/xx/en/home/insights/2017/02/tnf-sweden-proposed-tax-on-financial-activity-is-withdrawn.html>(접속일: 2017년 3월 16일)

11) 「조세동향」 16-11-2호. http://www.kipt.re.kr/TaxFiscalPubInfo/TaxFiscalPubTrends_InterTrends-View/스웨덴-금융활동세-도입-제안/524622(접속일: 2017년 3월 21일)



- 금융활동세가 연금과 핀테크¹²⁾ 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림
(자료 수집 및 정리: 유현영 회계사)

[스웨덴-국가별보고서 등에 관한 규정 최종 승인]

- 스웨덴 정부는 2017년 3월 3일 국가별보고서 규정을 최종 승인함¹³⁾
 - 승인된 규정은 개정안에서 제안한 내용과 동일하며, 2017년 4월 1일부터 적용됨
 - 개정안에서는 시행일을 2017년 1월 1일부터로 정하였으나 승인된 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유효함
- 2016년 4월 스웨덴 국세청¹⁴⁾은 재무부에 국가별보고서, 마스터파일과 로컬파일에 관한 규정을 제출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을 제안함¹⁵⁾
- 마스터파일과 로컬파일 제출 대상은 중소기업을 제외한 스웨덴에 소재한 다국적기업 그룹 내 기업이며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제출해야 함
 - 중소기업에 대해 마스터파일과 로컬파일의 이전 가격문서 제출 의무를 배제함
 - 중소기업이란 종업원 수 250명 미만, 매출액 450백만크로나(약 55.4백만달러) 미만이거나 자산이 400백만크로나(약 49.2백만달러) 미만

- 인 경우임¹⁶⁾
 - 소액거래에 대해 로컬파일 일부 내용의 제출을 면제함
 - 소액거래란 거래상대방과 총 거래가 5백만크로나(약 61만 5천달러) 미만인 경우임
 - 스웨덴 법인의 해외 고정사업장, 파트너십(general partnership)과 파트너십의 해외 고정사업장, 해외 법인의 스웨덴 고정사업장을 이전 가격문서화 제출 의무대상에 포함함

- 국가별보고서는 직전연도 연결매출액이 70억크로나(약 861백만달러) 이상인 스웨덴 소재 다국적기업 그룹의 최종 모회사가 제출함
 - 최종 모회사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가별보고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함
 -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유효하므로 다국적기업은 최초 2017년 12월 31일부터 국가별보고서가 제출될 것임
(자료 수집 및 정리: 유현영 회계사)

12)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인 FinTech라는 신조어로 금융과 IT의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와 금융산업의 변화를 의미함

13) E&Y, <http://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the-latest-on-beps—13-march-2017>, 2017.3.13.

14) 2015년 스웨덴 재무부는 국세청에 국가별보고서 등(OECD BEPS Action13)과 관련된 국내에 관한 개정 권한을 부여함

15) E&Y, "Sweden proposes implementation of OECD standard for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and automatic exchange of CbC reports," 2016.5.12.
<http://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sweden-proposes-implementation-of-oecd-standard-for-transfer-pricing-documentation-and-automatic-exchange-of-cbc-reports>(접속일: 2017년 3월 21일)

16) EC의 중소기업 정의에 따름

[영국-2017년 예산안 발표]

- 영국 정부는 2017년 3월 8일 2017 춘계 예산안을 발표함¹⁷⁾
 - 경쟁력 있는 세율과 안정적 세원확보를 기조로 한 조세시스템 마련을 목표로 법인세, 개인소득세, 상속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간접세 등의 개정사항이 포함됨
 - 세무행정 개선방안과 조세회피방지 방안이 포함됨
 - 예산안은 2016년 11월 발표한 2017 재정법 초안의 세부내용과 2017년 재정법 초안에 포함되지 않은 개정내용으로 구분됨

1. 법인세

- 결손금 이월공제의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일정 규모를 초과한 이익에 대한 이월공제 한도를 도입하여 이월공제를 제한함¹⁸⁾
 - 이월결손금이 다른 유형의 소득이나 동일 그룹 내 계열사 소득과 상계처리될 수 있도록 허용함
 - 현행 세법상 자본손실은 자본이득과 상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을 통해 자본손실과 일반소득 사이의 상계를 허용함
 - 기업이나 그룹의 각 과세연도 소득이 5백만파운드를 초과한 경우 5백만파운드 초과 이익의 50%만 결손금 이월공제가 허용됨
 - 이월결손금을 보유한 기업이더라도 상당한 이

익이 발생한 과세연도에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안됨¹⁹⁾

- 영국 정부는 기업의 99%는 이번 결손금 이월공제 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함²⁰⁾
 - 2017년 4월 1일부터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됨

- 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신규 전시물을 도입한 박물관과 미술관 세액의 20%나 25%를 공제함
 - 관람용 전시물에 대해 25%의 비율로, 그 밖의 전시물에 대해 20%의 비율로 세액공제가 적용됨
 - 공제한도를 두고 관람용 전시물에 대해 10만파운드까지 그 밖의 전시물에 대해 8만파운드까지로 공제를 제한함
 - 2017년 4월 1일부터 적용됨
- 2개 이상의 기업이 비용분담 약정을 체결하고 진행하는 연구개발의 경우도 특허박스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영국은 2016년 7월 1일부터 OECD BEPS Action5에서 권고한 연계접근법에 따른 특허박스제도를 마련하고 기존 특허박스제도를 대체함
 - 이번 개정안은 개정된 연계접근법하에서 원가분담약정을 체결한 납세자가 불이익이나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임
 - 개정안은 2017년 4월 1일부터 적용됨

17) 영국 정부, "Spring Budget 2017: overview of tax legislation and rates (OOTLAR)," 2017.3.8.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spring-budget-2017-overview-of-tax-legislation-and-rates-ootlar/spring-budget-2017-overview-of-tax-legislation-and-rates-ootlar#table-1>(접속일: 2017년 3월 16일)

18) 현행 영국 세법상 기간 제한 없이 결손금의 이월공제가 허용됨

19) 영국 정부,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orporation-tax-reform-of-loss-relief/corporation-tax-reform-of-loss-relief>

20) 영국 정부,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orporation-tax-reform-of-loss-relief/corporation-tax-reform-of-loss-relief>



- 이자비용 과다 법인의 이자비용 공제를 OECD BEPS Action4 보고서의 권고안을 반영하여 EBITDA의 30%까지로 제한함
 - 30%의 고정비용과 그룹비용의 사용을 허용함²¹⁾
 - 2017년 4월 1일부터 적용됨
- 영국에서 토지개발 사업을 하는 외국 사업자의 관련 소득을 영국에서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함
 - 2016 재정법에서²²⁾ 2016년 7월 5일부터 비거주자가 영국의 토지를 매각하거나 토지개발 사업 결과로 얻은 수익에 대해 과세하는 규정을 도입함²³⁾
 - 현행 세법이 2016년 7월 5일 이전 계약이 체결된 토지에는 적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한 것임
 - 계약체결일과 무관하게 2017년 3월 8일 이후 발생한 수익부터 적용됨
-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IFRS(국제회계기준) 16에 따라 신규 리스회계를 도입하더라도 현행 세법 규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리스 규정을 개정할 예정임
 - 관련된 세부 내용은 2017년 여름 중 발표할 예정임
- 연구개발세액공제 적용을 명확화·간소화하여 관련 행정비용을 감소시킬 것을 제안하였으나,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음
 - 특히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세액공제에 초점을 맞춰 개정안을 준비할 예정임
- 유럽 다자간 거래 시스템(multilateral trading facility, MTF)²⁴⁾에서 거래되는 채권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를 면세할 예정임
 - 영국 채권시장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목적에서 제안됨
 - 2009년 이후 영국 채권시장은 침체를 겪고 있으며, 특히 MTF와 같은 비규제시장에서 거래되는 영국 채권의 규모가 주변국가와 비교해 상당히 적어²⁵⁾ 거래활성화 차원에서 이러한 조치를 제안함²⁶⁾
 - 구체적인 내용은 2017-18 재정법에 포함되어 2018년 4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
- 고급 TV, 애니메이션과 비디오게임에 대한 조세혜택, 전사적관리(enterprise management incentives)에 대한 조세혜택을 제안함
 - 2018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나 아직 구체적인 내용

21) 「조세동향」 17-2호 참조(http://www.kipf.re.kr/TaxFiscalPubInfo/TaxFiscalPubTrends_InterTrends-View/영국-이자공제-제한-규정-관련-개정안-발표/524806)

22) 2016 재정법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 규정과 관련됨

23) 영국 정부,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income-tax-and-corporation-tax-disposals-of-land-in-the-uk/income-tax-and-corporation-tax-disposals-of-land-in-the-uk>

24) "a multilateral system, operated by an investment firm or a market operator, and which brings together multiple third-party buying and selling interests in financial instruments-in the system and in accordance with non-discretionary rules-in a way that results in a contract in accordance of the provisions of Title II,4" [출처: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601145/Withholding_tax_exemption_for_debt_traded_on_a_Multilateral_Trading_Facility.pdf]

25) 룩셈부르크나 아일랜드 채권의 28% 상당이 MRF에서 거래되는 데 비해 영국 채권의 1%만 MTF 시장에서 거래됨

26) 영국 정부,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601145/Withholding_tax_exemption_for_debt_traded_on_a_Multilateral_Trading_Facility.pdf

은 발표되지 않음

- 석유와 가스에 대한 투자 관련 조세혜택(Investment Allowance and Cluster Area Allowance Regulations)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운영과 리스를 위한 지출액 중 일부를 적용대상에 추가할 예정이다
 - 현행 세법상 석유와 가스에 대한 투자액의 62.5%를 공제하고 있으며²⁷⁾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운영비 등을 공제 대상에 추가할 방침임
 -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음

2. 개인소득세 및 상속세

- 배당소득공제 금액을 현행 5,000파운드에서 2,000파운드로 하향 조정함
 - 배당소득에 적용되던 면세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대신, 모든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인적공제와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s) 납입한도를 상향 조정함²⁸⁾
 - 2016년 11월 발표한 추계예산안에서 2020년까지 인적공제 금액을 현행 1만 1,500파운드에서 1만 2,500파운드로 상향 조정하고 ISA 납입한도도 현행 15,240파운드에서 2만파운드로 인상할 방침을 밝힘²⁹⁾
 - 2018년 4월 1일부터 적용됨
- 자본이득과 부동산소득에 적용되는 소득공제를 도입함
 - 자본이득과 부동산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은 각각 1,000파운드이며 실제 지출비용을 대신 소득공제를 선택하는 방식임
 - 자본이득의 경우 모든 자본이득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자산이나 서비스 공급에 대한 대가로 얻은 잡수익에 한해 적용됨
 - 의결수립 이후 개정안이 확정될 것임
- 현행 세법상 주거용 임대인에게 적용되던 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을 축소하여 주거용으로 장기 임대한 임대인만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함
 - 현행 세법상 주거용으로 임대한 모든 자가 연간 7,500파운드까지 소득공제를 적용받음
 -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발표되지 않음
- 상속세(inheritance tax) 개정안을 발표하고, 20년 중 15년의 기간 동안 영국 거주자(resident)인 경우나 영국에서 출생(domicile) 후 해외 거주자였다 다시 영국 거주자가 된 경우도 상속세법상 영국 거주자로 간주함
 - 2017년 4월부터 적용됨
- 현물 수당(benefits in kind)에 적용되던 소득세와 사회보장세의 혜택을 폐지함
 - 다만 고용주 부담 연금, 연금관련 자문료, 양육보

27) 영국 정부,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investment-allowance-for-oil-and-gas-companies/investment-allowance-for-oil-and-gas-companies>

28) 영국 정부,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income-tax-dividend-allowance-reduction/income-tax-dividend-allowance-reduction>

29) 「조세동향」 17-2호 참조(http://www.kipt.re.kr/TaxFiscalPubInfo/TaxFiscalPubTrends_InterTrends-View/영국-이자공제-제한-규정-관련-개정안-발표/524806)



조금, 고용주 제공 보육료나 보육시설 관련 비용, 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혜택이 유지됨

- 이와 관련한 세부내용은 추가 발표할 예정이며, 2017년 4월 6일부터 적용됨

- 퇴직위로금(termination payment)에 대해 세무처리를 명확하게 하고 일부 금액에 대한 사회보장세를 면세하는 개정안을 포함함
 - 3만파운드 이하 퇴직위로금에 대해 소득세와 사회보장세를 모두 면세함
 - 2018년 4월 6일부터 적용됨

- 고용주가 보전하지 않는 업무추진비(employees' expenses) 명목의 급여와 주거비용에 대한 소득세 경감을 제안함
 -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발표할 예정임

- 2018년 4월 6일부터 8,060파운드를 초과하는 자영업자(class 4)의 사회보장세 세율을 9%에서 10%로 인상하고, 2019년 4월 6일부터 11%로 인상할 것을 제안함
 - 그 밖에 연소득 5,965파운드 미만인 자영업자(class 2)에게 사회보장세 납부를 면제하는 규정을 폐지함

3.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위한 매출액 한도와 사업자등록을 포기할 수 있는 한도금액을 상향 조정함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는 매출액 기준을 연간 8만 3,000파운드에서 8만 5,000파운드로 상향 조정함
 - 기존 사업자로 등록된 납세자 중 사업자등록을 포기할 수 있는 매출액 기준을 연간 8만 1,000파운드에서 8만 3,000파운드로 상향 조정함
 - 2017년 4월 1일부터 적용됨

- 국내 재화를 판매하는 해외 온라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탈세를 개선하기 위하여 'split payment' 모델을 개발하고, 구매시점에 부가가치세가 자동적으로 징수할 예정임

- split payment는 소비자가 재화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에 영국 과세당국이 실시간 부가가치세를 확보하도록 돕는 시스템임³⁰⁾
 - 이미 멕시코, 에콰도르, 페루와 도미니칸 공화국은 split payment 시스템을 이용하여 해외 온라인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있음³¹⁾
 -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국세청으로 이관하는 주체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음³²⁾
- 영국은 국내 재화를 판매하는 해외 온라인사업자가 직접 영국 내 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

30) 영국 정부,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601027/Alternative_method_of_VAT_collection_-_Call_for_evidence.pdf

31) 영국 정부,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601027/Alternative_method_of_VAT_collection_-_Call_for_evidence.pdf

32) 영국 정부,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601027/Alternative_method_of_VAT_collection_-_Call_for_evidence.pdf

를 납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split payment를 통해 해외 온라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탈세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split payment의 운영 주체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발표할 예정임

- 국내 해외 사업자가 영국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모바일폰 서비스의 공급장소 판단 시 적용되던 '사용 및 향유되는 장소(use and enjoyment)' 기준을 폐지함

- 개정 이후 영국 소비자가 영국 역외에서 사용되거나 향유하는 모바일폰 서비스도 영국에서 20%의 부가가치세로 과세됨
- 2017년 8월 1일부터 적용됨

4. 그 밖에 간접세

- 담배세 최저한세(minimum excise tax)를 도입하고 영국에서 판매되는 담배 1,000개비당 268.83파운드를 최저한세로 납부하도록 제한함

- 최저한세는 초저가 담배판매를 제한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지속가능한 재정을 이루기 위해 제안됨
- 2017년 3월 20일부터 적용됨

- 쓰레기매립세(landfill tax)의 과세대상에 허가받은 쓰레기매립지에서 불법적으로 물품을 처분하여 세금을 회피한 경우를 추가함

- 그 외에 쓰레기매립세와 관련하여 과세대상 처분의 정의를 변경하고 납세자 이해도 증진과 법 간 소화를 위하여 법을 재구성하는 방안이 포함됨

- 기존 '부가가치세 회피 방지를 위한 공개 규정'의 적용대상을 모든 간접세로 확대하여 '간접세 회피 방지를 위한 공개 규정(disclosure of indirect tax avoidance schemes)'을 마련함

- 간접세 납세의무를 회피하려는 자나 이를 자문하는 자(promoters)는 영국 국세청(HMRC)에 신고하고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의무가 있는데 규정의 적용대상을 모든 간접세로 확대하는 방안임
- 2017년 9월 1일부터 적용됨

5. 조세행정

- 담배의 불법 생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국 내 담배 제조 기계의 소유와 사용을 통제하기 위한 방안을 도입함

- 법률상 담배 제조 기계에 대해 라이선스를 발급하고, 라이선스 없는 기계를 통해 생산된 제품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임

- 국세청은 대기업(large businesses)의 세무위험과 관련한 국세청의 정보수집 절차를 담은 보고서를 발행할 예정임

- 국세청이 발행할 보고서에는 저위험군으로 분류되는 기준이 제시될 것이며, 저위험군으로 분류되는 기업은 국세청의 검토(enquiry)를 받지 않음
- 보고서를 통하여 기업이 저위험군 기준에 맞추기 위해 노력하여 대기업의 납세순응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됨
- 2017년 여름 중 발행할 예정임



- 현금주의 세무처리와 관련된 두 가지 개정사항이 포함됨
 - 현금주의 세무처리를 선택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현행 매출액 8만 3,000 파운드에서 15만파운드 이하인 사업자로 변경함
 - 단, 매출액이 30만파운드를 초과한 사업연도로부터 현금주의 세무처리 대상에서 제외됨
 - 2017년 4월 6일부터 적용됨
 - 현금주의 세무처리의 이해를 돕고 비용 공제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현금주의를 선택했을 때 비용으로 공제받지 못하는 목록을 제시할 방침임
 - 2017년 4월부터 적용됨
- 그 밖에 디지털세무행정과 관련 논의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방안이 예산안에 포함됨
 -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자와 임대업자의 디지털 세무행정의 이행 시기를 2019년 4월까지 1년 연기했다는 내용 등도 포함됨
 - 조세회피 방지를 위하여 조세회피에 가담한 기업이나 개인에게 가산세를 도입하고 일반적 조세회피 방지규정(the General Anti Abuse Rule, GAAR)의 적용 시점과 방법을 구체화하는 방안이 포함됨

〈자료 수집 및 정리: 유현영 회계사〉

[이탈리아-국가별보고서 관련 시행령 발표]

- 이탈리아 경제재정부는 2017년 3월 8일 국가별보고서 관련 시행령을 발표함³³⁾
 - 이탈리아는 2015년 12월 2016 개정세법(Stability Law for 2016)에 국가별보고서 신고의무를 입법 하였으나, 당시에는 제도 시행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지 않았음
 - 동 시행령은 국가별보고서의 최초 신고대상 사업연도, 신고의무자, 신고 대상 정보, 신고기한 등에 제도 시행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 최초 신고대상 과세연도는 2016년으로 하며, 신고의무자는 연결기준 매출액이 7억 5천만유로 이상인 이탈리아 소재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법인으로 하되 대리신고를 허용함³⁴⁾
 - 다국적기업그룹 최종 모법인의 거주지국에서 국가별보고서 신고제도를 도입하지 않았거나, 국가별보고서 자동교환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대리 모법인(surrogate parent entity)을 통하여 국가별보고서를 신고할 수 있음
 - 다국적기업그룹이 대리 모법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이탈리아 현지법인이 직접 신고하여야 함
- 국가별보고서는 BEPS프로젝트 Action 13의 권고에 따라 조세관할지역별 재무 및 세무 정보와 사업현황 그리고 조세관할지역별 다국적그룹의 현지법

33) Italy-BEPS Action Point 13 and Directive 2016/881/EU-Ministerial Decree on CbC reporting published (09 Mar. 2017), News IBFD. https://online.ibfd.org/document/Ins_2017-03-09_it_1(접속일: 2017년 3월 20일)

34) KPMG, Italy: Ministerial decree enacting the Italian CbCR regulations, Tax Alert, 10 March 2017. <https://home.kpmg.com/content/dam/kpmg/xx/pdf/2017/03/Inf-italy-march10-2017.pdf>(접속일: 2017년 3월 20일)

인 현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함³⁵⁾

- 국가별보고서 신고서식은 아직 확인되지 않음

- 국가별보고서 신고기한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2개월로 하되, 2016 과세연도 신고분에 한해 신고기한을 18개월로 연장함³⁶⁾

- 한편,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9개월 내에 국가별보고서 제출자(최종 모법인, 대리 모법인, 또는 이탈리아 현지법인)를 지정하여 과세당국에 보고하여야 함
- 미신고 또는 신고오류에 대해서는 1~5만유로의 가산세가 적용됨³⁷⁾

(자료 수집 및 정리: 흥민옥 회계사)

[프랑스-헌법재판소의 CFC규정 관련 면책조항 확대 적용 결정]

-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일 개인납세자에게 적용되는 현행 CFC(Controlled Foreign Company)규정 중 일부 조항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관련 조항의 개정을 결정함³⁸⁾
- 본 헌법재판소(Conseil constitutionnel)의 판결은 2016년 12월 프랑스 행정대법원(Administra-

tive Supreme Court, Conseil d'Etat)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짐³⁹⁾

- 헌법재판소는 프랑스의 개인납세자에게 적용되는 현행 CFC규정이 유럽연합(EU) 회원국에 소재한 피지배법인에 한해서 면책조항(safe harbour)을 적용하는 것은 프랑스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함⁴⁰⁾

- 개인납세자에게 적용되는 CFC규정은 프랑스 개인에게 직간접적으로 10% 이상의 지분이 소유된 해외 피지배법인 중 법인의 소재국가가 저세율 국가이며 자산이 주로 금융자산으로 이루어진 법인에 대해 적용함

- CFC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해외 피지배법인이 프랑스 개인에게 배당을 실제 지급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지배법인의 유보소득을 프랑스에서 과세함

- 다만, EU 소재 피지배법인에 대해서는 해당 투자구조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서만 CFC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면책조항을 두었음
-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상기 EU 소재 피지배법인에만 적용되는 면책조항이 프랑스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으로 판결함

35) Ibid.

36) Ibid.

37) Italy-Stability Law for 2016-other measures (13 Jan. 2016), News IBFD. https://online.ibfd.org/document/tns_2016-01-13_it_5(접속일: 2017년 3월 20일)

38) France-CFC rules for individuals-scope narrowed by Constitutional Court (03 Mar. 2017), News IBFD. https://online.ibfd.org/document/tns_2017-03-03_fr_1(접속일: 2017년 3월 21일)

39) France-CFC rules for individuals-preliminary ruling on constitutionality requested (28 Dec. 2016), News IBFD. https://online.ibfd.org/document/tns_2016-12-28_fr_2(접속일: 2017년 3월 21일)

40) France-CFC rules for individuals-scope narrowed by Constitutional Court (03 Mar. 2017), News IBFD. https://online.ibfd.org/document/tns_2017-03-03_fr_1(접속일: 2017년 3월 21일)



- 헌법재판소는 면책조항의 적용을 EU 소재 피지배 법인으로 제한하는 조항을 폐지하여 비EU국가에 소재한 피지배법인에 대해서도 면책조항이 적용되도록 함⁴¹⁾
 - 위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피지배법인이 EU 회원국에 소재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프랑스 개인이 소유하는 해외 피지배회사에 대한 투자구조가 조세회피 목적의 인위적 투자구조가 아닌 경우 CFC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다만, 피지배법인이 비협조적 조세관할지역 (non-cooperative state or territory) 또는 프랑스와 조세행정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 2016년 기준 비협조적 조세관할지역에 해당하는 국가로는 보츠와나, 브루나이, 과테말라, 마살룬도, 나우루, 니우에 등 총 6개국이 있음
- (자료 수집 및 정리: 흥민옥 회계사)

- 을 현행 30만위안에서 50만위안으로 상향조정하여 법인세 저세율 적용 범위를 확대함⁴³⁾
 - 과학기술 중소기업의 R&D비용 공제율은 현행 50%에서 75%로 상향조정함
- 사업관련 수수료 부담 2,000억위안 경감방안
 - 기업의 명목성 비용부담을 야기하는 사업의 행정비용 수취항목 35개를 취소, 중지 등으로 절반 이상으로 감소하고, 비용수취 기준을 인하할 예정임

- 기업의 연간 이윤총액의 12%를 초과하는 공익성 기부금에 대해 이월공제가 신설되어 2월 24일부터 시행됨
- 개정 전 법인세법 제9조의 기업이 지출한 공익성 기부금은 과세대상소득에서 연간 이윤총액의 12% 한도로 공제가능하였음
- 법인세법 개정으로 12% 초과 지출 기부금에 대한 3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함

(자료 수집 및 정리: 정경화 전문연구원)

▶ 아시아

[중국-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수수료 등의 경감방안 발표]

- 중국의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2017년 3월 5일 양회에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발표함⁴²⁾
 - 법인세 부담 3,500억위안 경감방안
 - 20%의 저세율이 적용되는 소기업의 과세표준

[홍콩-2017/18 예산안 발표]

- 홍콩 재무장관은 2017년 2월 22일 연설을 통해 2017/18 예산안을 발표함⁴⁴⁾
 - 민생안정을 목표로 소득세 면세점 확대, 소득세 감면 및 소득공제 금액 인상과 주택자금대출이자 공제기간 연장이 주요 내용임

41) Ibid.

42) Taxnotes, "China-Government to Reduce Business Tax Burden".

43) 중국의 기본적인 법인세율은 25%이며, 저세율이 적용되는 소기업은 과세표준 50만 위안 미만, 상시고용인원 100명 미만, 순자산 10백만위안 미만인 경우임(제조업) China (People's Rep.)-Corporate Taxation sec. 1., Country Surveys IBFD (accessed 28 Mar. 2017).

44) 홍콩 국세청, <http://www.ird.gov.hk/eng/tax/budget.htm>(접속일: 2017년 3월 17일)

- 소득세 개정사항은 소득세 면세기준 확대, 인적공제 금액의 확대 등이 있음
 - 2017/18 과세연도에 개인소득세 면세점 기준을 4만 홍콩달러에서 4만 5,000 홍콩달러로 인상하여 130만명의 납세자의 소득세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 인적공제 중 형제자매공제(dependent brother or dependent sister allowance), 장애인공제(disabled dependant allowance) 금액을 인상하고, 본인교육비(self-education expenses) 특별공제를 인상함
 - 형제자매공제: 현행 3만 3,000 홍콩달러에서 37,500 홍콩달러로 인상
 - 장애인공제: 현행 6만 6,000에서 7만 5,000 홍콩달러로 인상
 - 본인교육비공제: 현행 8만 홍콩달러에서 10만 홍콩달러로 인상
 - 적격 대출기관의 주택자금대출이자(home loan interest deduction)에 대한 소득공제기간이 현행 15년에서 20년으로 확대
 - 연간 공제한도는 10만 홍콩달러로 현행 유지
 - 한시적으로 2만 홍콩달러(약 290만원)을 한도로 하여 소득세 납부세액의 75%를 감면하며, 약 184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함⁴⁵⁾

(자료 수집 및 정리: 정경화 전문연구원)

[싱가포르-2017/18 예산안 발표]

- 싱가포르 재무장관은 2017년 2월 20일 2017/18 예산안을 발표함⁴⁶⁾
 - 2017/18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2% 증가한 750억 싱가포르달러 규모이며, 예산안 부속서에는 법인세, 소득세, 탄소세 등의 세법 개정사항을 담고 있음
- 경기부양책으로 법인세 환급 상한금액 인상, 중소기업 지원보증, 노년층 고용 임금보조 확대 등이 포함됨
 - 기업의 불확실성 해소 등을 이유로 법인세 환급세액을 일시적으로 확대함
 - 2017년에는 법인세 환급세액(Corporate Income Tax Rebate) 한도를 현행 2만 싱가포르달러에서 2.5만 싱가포르달러(약 2천만원)로 상향 조정하며, 환급률은 납부세액의 50%임⁴⁷⁾
 - 2018년부터 법인세 환급세액 한도는 1만 싱가포르달러로 인하되며, 환급률도 납부세액의 20%로 제한됨
 - 중소기업 운영자금 대출(SME Working Capital Loan)의 50%까지 정부가 보증함(기업당 30만 싱가포르달러 한도)
 - 기업이 55세 이상의 노년층을 고용하는 경우 특별고용지원금(Special Employment Credit)에 추가하여 추가특별고용지원금(Additional Special Employment Credit)을 연장함
 - 월 임금이 4,000 싱가포르달러 이하의 노년 근

45) 2017년 3월 24일 1HK\$=144.57(KEB하나은행)

46) 싱가포르 재무부, http://www.singaporebudget.gov.sg/budget_2017/Home.aspx(접속일: 2017년 3월 17일)

47) 2017년 3월 24일 1S\$=801.97(KEB하나은행)



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임금의 8%를 특별고용지원금으로 지원하고, 고용대상연령을 2017년 7월 1일부터 현행 65세 이하에서 67세 이하로 확대함

- 노년층 근로자 채용시 추가특별고용지원금을 2019년까지 연장하고, 월 임금의 3%를 기업에 추가 지원함
- 추가특별고용지원금 예산은 약 160백만싱가포르달러이며, 노년층근로자 12만명과 5만 5,000고용주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가계지원대책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적격대상자인 저소득 가구에 일회성 특별 환급을 실시하고, 거주자에게 2016년 소득세 납부세액의 20%를 환급하는 일시적인 소득세 환급을 실시함

- 부가가치세의 일회성 특별 환급을 1인당 200싱가포르달러를 한도로 실시하며, 약 2.8억싱가포르달러의 예산이 소요되며 1.3백만명이 수혜받을 것으로 예상됨
- 2016년 과세가능소득이 2만 8,000싱가포르달러 이하인 21세 이상 거주자로 주택가치(2016년 12월 31일 기준)가 1만 3,000싱가포르 이하인 경우 200싱가포르달러, 주택가치가 13,001~21,000싱가포르 이하인 자는 100싱가포르달러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
- 소득세 환급금액은 2016년 소득세 납부세액의 20%를 환급하며, 납세자 1인당 500싱가포르달러(약 40만원)을 한도로 함

■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경유세(Diesel Taxes), 탄소세 등 세법 개정이 있음

- 경유 차량과 택시에 대한 유류세 부과를 종가세 방식에서 사용량에 비례(volume based)하여 부과하는 종량세 방식으로 변경함
- 경유 사용을 줄이기 위해 2017년 2월 20일부터 자동차용 경유, 산업용 경유 등에 1리터당 0.1싱가포르달러를 부과함
- 파리협약에 따라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05년 대비 36% 감축을 목표로 2019년에 탄소세를 도입함
- 이산화탄소 저감대책으로 이산화탄소를 직접 배출하는 발전소, 기업 등에 온실가스 배출 1톤당 10~20싱가포르달러로 탄소세를 부과할 예정임

(자료 수집 및 정리: 정경화 전문연구원)

국제기구

[EU-혼성불일치규정 개정 합의]

- EU경제재무이사회(Economic and Financial Affairs Council)는 2017년 2월 21일 EU 조세회피방지 지침상의 혼성불일치규정을 EU회원국과 제3국간의 거래에도 확대 적용하는 개정안에 합의함⁴⁸⁾
- EU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16년 6월 조세회피방지지침(Anti-Tax Avoidance Directive)에 합의한 바 있으나, 당시 지침은 혼성불일치규정의 적용을 EU회원국 간의 거래로 한정하였음⁴⁹⁾

48) European Commission, <http://data.consilium.europa.eu/doc/document/ST-6595-2017-INIT/en/pdf>(접속일: 2017년 3월 22일)

49) European Commission,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6-1886_en.htm(접속일: 2017년 3월 22일)

- 이후 EU집행위원회는 2016년 10월 법인세 개혁 패키지 제안서(corporate reform package proposal)에 혼성불일치규정을 비EU국가와의 거래에도 확대 적용하는 개정안⁵⁰⁾을 제시하였음⁵¹⁾
- EU집행위원회의 개정안은 혼성불일치규정의 상기 확대 적용 외에도 혼성양도, 혼성고정사업장불일치, 이전불일치, 이중거주자불일치 등에 대한 규정을 추가로 제안함
 - 2016년 6월의 조세회피방지지침상의 혼성불일치 규정은 EU회원국 간의 혼성금융상품과 혼성체 거래만을 다루었음
- 동 개정안은 EU의회(European Parliament)의 자문을 거쳐 EU이사회(the Council of EU)에 의해 공식 채택될 계획이며, EU회원국은 2019년 말까지 관련 입법절차를 완료하고 2020년부터 시행하여야 함
 - 단, 역혼성체(reverse hybrid mismatches) 관련 규정은 2021년까지 입법하고 2022년부터 적용하여야 함

(자료 수집 및 정리: 홍민옥 회계사)

50) European Commission, Proposal for a COUNCIL DIRECTIVE amending Directive (EU) 2016/1164 as regards hybrid mismatches with third countries, Strasbourg, 25.10.2016 COM(2016) 687 final.

51) European Commission,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business/company-tax/corporate-tax-reform-package_en(접속일: 2017년 3월 2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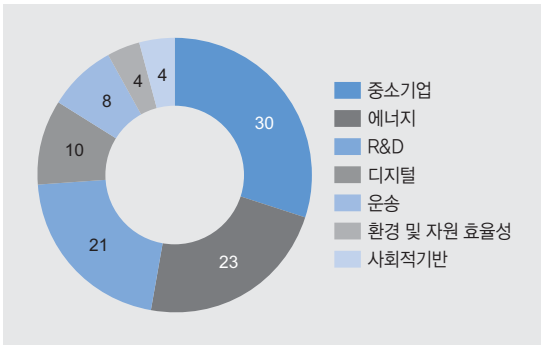
주요국의 재정동향

EU

- EU 집행위, 유럽투자계획 추진실적 발표(2017.2.7.)^{1) 2)}
 - (투자유발 기대금액) ‘전략적 투자를 위한 유럽기금(European Fund for Strategic Investment)’은 향후 3년간 최소 3,150억유로의 투자를 유치하고자 함
 - (유럽투자은행 실적) 유럽투자은행(EIB)은 190여개 프로젝트에 230억유로의 투자를 승인하였으며, 유럽투자펀드(EIF)은 250여개 중소기업 지원 프로젝트에 80억유로의 투자를 승인³⁾

[그림 1] 분야별 EFSI 투자 비중

(단위: %)



출처: European Commission, Investment Plan for Europe

- EU 집행위, 2017 겨울 EU 경제전망 발표(2017.2.13.)⁴⁾
 - (경제성장) 10년 만에 처음으로 EU 소속 모든 국가들이 2016~2018년 사이에 경제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됨. 지난 15분기 동안 연속적으로 실질 유로 GDP가 올랐으며, 취업률은 증가하고 실업률은 감소함
 - 유로지역의 GDP 성장률이 2017년 1.6%, 2018년 1.8%으로 예측되며 이는 가을에 발표된 경제전망에(2017년 1.5%, 2018년 1.7%) 비하여 높음
 - (물가) 급격한 에너지 가격 하락에 따라 지난 2년간 매우 낮았던 인플레이션은 에너지 가격의 상승에 따라 금년과 내년에 상승할 것으로 보이어나 아직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함
 - 유로지역의 인플레이션은 2016년 0.2%, 2017년 1.7%, 2018년 1.4%로, EU의 인플레이션은 2016년 0.3%, 2017년 1.8%, 2018년 1.7%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 (실업률) 경제회복이 노동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며 실업률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유로지역의 실업률은 2016년 10.0%, 2017년 9.6%, 2018년 9.1%로, EU의 실업률은 2016년 8.5%, 2017년 8.1%, 2018년 7.8%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1) EU 집행위, http://ec.europa.eu/priorities/publications/brochure-investment-plan-europe_en

2) 유럽투자계획(Investment Plan for Europe)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 장기적인 경제 수요와 경쟁력 강화, 유럽의 생산성과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실제 경제 성장을 위한 투자를 이끌어내는 공동 협력적 노력의 내용을 담고 있음. 이를 위하여 유럽연합의 프로젝트를 통하여 투자를 지원하고,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장벽들을 거두며, 공공 및 민간 자원들을 활용하여 투자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 벨기에 · 유럽연합대사관, 유럽투자계획 실적발표

4) EU 집행위, https://ec.europa.eu/info/files/winter-2017-economic-forecast-overview_en

- (재정수지) 2017년과 2018년의 유로지역의 공공 재정적자와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적자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유로지역의 공공재정적자는 2017년 GDP의 1.7%에서 2018년 1.4%로 하락할 전망이며 이는 낮은 금리로 인한 낮은 이자 지출과 노동시장의 향상에 따름
 -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적자는 2016년 91.5%, 2017년 90.4%, 2018년 89.2%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함
- (주요 리스크) 대내외 요인으로 인한 리스크 증대
 - (리스크) 아직 확실시되지 않은 미국 새 정부의 주요 정책들과 금년에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치러질 선거들, 영국과의 'Article 50'에 관한 협상으로 인하여 리스크가 있음

- (리스크의 균형) 단기적으로 미국의 경기부양 재정정책으로 인하여 현재 전망보다 큰 경제 성장의 가능성이 있음. 중장기적으로 영국의 EU 탈퇴, 무역 장벽 심화, 미국의 급속한 통화 긴축, 증가하는 중국의 채무가 시장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

〈표 1〉 유로존 및 EU의 경제전망

(단위: %)

국가	실질GDP 성장률			인플레이션			실업률			재정수지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벨기에	1.2	1.4	1.6	1.8	2.0	1.8	8.0	7.8	7.6	-2.9	-2.2	-2.3
독일	1.9	1.6	1.8	0.4	1.9	1.5	4.1	4.1	4.1	0.6	0.4	0.4
에스토니아	1.1	2.2	2.6	0.8	2.8	2.8	6.9	7.9	8.7	0.1	-0.5	-0.2
아일랜드	4.3	3.4	3.3	-0.2	0.9	1.0	8.0	7.0	6.7	-0.9	-0.6	-0.6
그리스	0.3	2.7	3.1	0.0	1.3	1.0	23.4	22.0	20.3	-1.1	-1.1	0.7
스페인	3.2	2.3	2.1	-0.3	1.9	1.7	19.6	17.7	16.0	-4.7	-3.5	-2.9
이탈리아	0.9	0.9	1.1	-0.1	1.4	1.3	11.7	11.6	11.4	-2.3	-2.4	-2.6
키프루스	2.8	2.5	2.3	-1.2	1.2	1.1	13.3	12.0	11.0	0.0	-0.2	0.4
라트비아	1.6	2.8	3.0	0.1	1.9	2.0	9.7	9.5	9.0	0.0	-1.0	-1.0
리투아니아	2.2	2.9	2.8	0.7	2.1	1.9	8.0	7.5	7.1	-0.5	-0.7	-0.7
룩셈부르크	3.8	4.0	3.9	0.0	2.0	2.1	6.3	6.2	6.2	1.6	0.2	0.3
몰타	4.0	3.7	3.7	0.9	1.6	1.8	4.8	4.9	4.9	-0.7	0.6	-0.6
네덜란드	2.1	2.0	1.8	0.1	1.4	1.4	6.0	5.2	4.7	-0.1	0.2	0.3
오스트리아	1.5	1.6	1.6	1.0	1.8	1.6	6.0	6.1	6.2	-1.4	-1.2	-0.9
포르투갈	1.3	1.6	1.5	0.6	1.3	1.4	11.2	10.1	9.4	-2.3	-2.0	-2.2
슬로베니아	2.5	3.0	3.0	-0.2	1.1	2.3	7.9	7.0	6.2	-2.0	-1.7	-1.4




〈표 1〉의 계속

(단위: %)

국가	실질GDP 성장률			인플레이션			실업률			재정수지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슬로바키아	3.3	2.9	3.6	-0.5	0.9	1.4	9.7	9.0	7.9	-2.2	-1.4	-0.6
핀란드	1.5	1.2	1.5	0.4	1.5	1.2	8.8	8.6	8.3	-2.2	-2.3	-1.8
유로지역	1.7	1.6	1.8	0.2	1.7	1.4	10.0	9.6	9.1	-1.7	-1.4	-1.4
불가리아	3.3	2.9	2.8	-1.3	0.8	1.2	7.7	7.1	6.8	-0.4	-0.5	-0.3
체코	2.4	2.6	2.7	0.6	2.0	1.8	4.0	3.9	3.8	0.3	0.1	0.2
덴마크	1.0	1.5	1.8	0.0	1.4	1.6	6.2	5.9	5.7	-1.6	-1.6	-0.9
크로아티아	2.8	3.1	2.5	-0.6	1.7	1.6	12.8	10.8	9.3	-1.8	-2.1	-1.8
헝가리	1.9	3.5	3.2	0.4	2.2	3.1	5.2	4.8	4.5	-1.8	-2.4	-2.5
폴란드	2.8	3.2	3.1	-0.2	2.0	2.1	6.3	5.6	4.7	-2.3	-2.9	3.0
루마니아	4.9	4.4	3.7	-1.1	1.6	2.9	6.0	5.7	5.6	-2.8	-3.6	-3.9
스웨덴	3.3	2.4	2.1	1.1	1.7	1.8	6.9	6.5	6.4	0.5	-0.2	0.2
영국	2.0	1.5	1.2	0.7	2.5	2.6	4.9	5.2	5.6	-3.4	-2.8	-2.5
EU	1.9	1.8	1.8	0.3	1.8	1.7	8.5	8.1	7.8	-1.9	-1.7	-1.6
미국	1.6	2.3	2.2	1.3	2.4	2.5	4.9	4.6	4.5	-4.8	-5.1	-5.7
일본	0.9	1.0	0.5	-0.1	0.4	0.6	3.1	3.1	3.0	-3.7	-4.0	-3.8
중국	6.7	6.4	6.2	:	:	:	:	:	:	:	:	:
세계	3.0	3.4	3.6	:	:	:	:	:	:	:	:	:

출처: EU 집행위, https://ec.europa.eu/info/files/winter-2017-economic-forecast-overview_en

〈자료 수집 및 정리: 이소영 연구원〉

 **캐나다**

- 통계청, 2016년 3분기 재정통계(GFS: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발표(2017.1.11.)⁵⁾
 - 캐나다 통계청은 캐나다 정부 모든 부문의 IMF 기준 재정통계(GFS)를 발표, 정부부문에는 연방 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캐나다 및 퀘벡 연금 제도를 포함
 - FY2016 3분기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0억

캐나다달러 증가한 약 1,931억캐나다달러
- FY2016 3분기 비용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7억
캐나다달러 증가한 약 2,005억캐나다달러

5) 캐나다 통계청, <http://www.statcan.gc.ca/daily-quotidien/170111/dq170111b-eng.htm>

〈표 2〉 캐나다 2016년 3분기 재정통계

(단위: 백만캐나다달러)

	2015			2016		
	Q2	Q3	Q4	Q1	Q2	Q3
수입 (Revenue)	195,492	191,094	192,063	200,917	198,615	193,165
비용 (Expense)	192,771	196,275	198,781	208,437	198,208	200,569
총운영수지 (Gross operating balance)	19,049	11,425	9,966	9,253	17,091	9,471
순운영수지 (Net operating balance)	2,721	-5,181	-6,718	-7,520	407	-7,404
비금융자산 순취득 (Net acquisition of non-financial assets)	1,152	4,910	3,630	75	2,035	5,069
순융자/순차입 (Net lending or borrowing)	1,569	-10,091	-10,348	-7,595	-1,628	-12,473
금융자산 순취득 (Net acquisition of financial assets)	41,557	21,613	16,922	2,243	7,985	18,345
부채의 순부담 (Net incurrence of liabilities)	40,146	32,395	27,803	9,595	9,959	31,403
통계적 불일치 (Statistical discrepancy)	158	692	533	-243	346	585
지출 (Total expenditure)	193,923	201,185	202,411	208,512	200,243	205,638
순자산 (Net worth)	-17,968	-102,999	-122,022	-136,150	-155,355	-139,364
비금융자산 (Non-financial assets)	908,470	834,120	819,790	821,374	822,909	842,633
금융자산 (Financial assets)	1,311,961	1,335,360	1,359,577	1,346,374	1,371,059	1,400,859
부채 (Liabilities)	2,238,399	2,272,479	2,301,389	2,303,898	2,349,323	2,382,856
순금융가치 (Net financial worth)	-926,438	-937,119	-941,812	-957,524	-978,264	-981,997

출처: 캐나다 통계청,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Table 385-0032



■ 의회예산처(PBO), Economic and Fiscal Monitor 2016-17 발표(2017.2.3.)⁶⁾

* 캐나다 의회예산처는 Economic and Fiscal Monitor를 정기적으로 발간할 계획

• 캐나다 의회예산처는 지난 10월 발표한 Economic and Fiscal Outlook-October 2016에 2017년 1월까지의 데이터를 포함한 2016년 캐나다 GDP 추정치와 캐나다정부의 2016-17 재정수지 발표

- (경제) 실질GDP는 4분기에 연율 기준 1.8% 상승한 것으로 추정, 의회예산처의 지난 October Outlook에 비교할 때 2016년 하반기 실질GDP 성장률은 평균적으로 변동 없었음

☞ 명목GDP는 October Outlook에서 전망한 것보다 약간 높은 2조캐나다달러를 넘어섬

- (재정) FY2016-17 재정적자는 GDP의 1.0%로 예상, 의회예산처의 재정수지 전망치는 2016년 11월 재무부가 발표한 전망치보다 재정수지가 46억캐나다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

☞ 2017년 1월 말까지 발표된 재정데이터 및

명목GDP 추정치에 근거하여 수입은 지난 10월 전망치보다 약간(9억캐나다달러) 더 높게 예상

☞ 연방정부의 가장 큰 단일 수입원인 개인소득세는 의회예산처의 전망에 미치지 못했으나 예상을 웃도는 법인세 및 기타수입으로 상쇄

☞ 지출은 October Outlook 전망치보다 약간 낮고(-10억캐나다달러), 프로그램지출 및 공공채무비용은 하향조절(-5억캐나다달러)

〈표 3〉 FY2016-17 재정 모니터링

(단위: 십억캐나다달러)

	의회예산처(2017년 2월 기준)	의회예산처(2016년 10월 기준)	캐나다 재무부(2016년 11월 기준)
총수입	293.7	292.8	291.1
프로그램 지출	290.7	291.3	291.3
공공채무 비용	23.5	24.0	24.9
총지출	314.2	315.2	316.1
재정수지	-20.5	-22.4	-25.1

출처: 캐나다 의회예산처, Economic and Fiscal Monitor 2016-17

〈자료 수집 및 정리: 강성지 연구원〉

6) 캐나다 의회예산처, http://www.pbo-dpb.gc.ca/en/blog/news/EFM_2016_17

프랑스

- 2016년 12월 31일 『정부예산 월별재정집행보고서에서(Monthly Statement of the State Budget)』 2016 회계연도 예산 결산 발표(2017.2.7.)⁷⁾
 -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부의 재정수지는 -689.8억유로로, -705억유로를 기록하였던 2015년 말에 비하여 15억유로 향상되었음
 - 2016년 말을 기준으로 지출은 3762억유로이며, 이는 2015년 12월을 기준으로 0.5% 적음. 총예산 수입은 3,040억유로이며, 2015년 말의 2997억유로에 비하여 상승함
- (자료 수집 및 정리: 이소영 연구원)

독일

- 경제에너지부, 2017년 『경제전망보고서(Jahreswirtschaftsbericht 2017)』 발표(2017.1.25.)⁸⁾
 - * 『2017 경제전망보고서』는 '독일과 유럽의 포용적 성장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발간
 - (경제전망) 2017년 GDP(price adjusted)가 1.4%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성장률 또한 지속될 것으로 예측
 - (실업률 감소) 작년의 실업률은 독일의 통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며 금년에 들어 32만여명이 추가적으로 취업을 할 것으로 예상
 - 노동자의 실제 순임금이 2013년에 비하여 1.5% 정도 상승

- (정책방향) '모두를 위한 성장(growth for all)'과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표 4〉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추이

(단위: %)

	2015년	2016년	2017년(전망)
GDP 성장률	1.7	1.9	1.4
실업률	6.4	6.1	6.0

출처: 에너지경제부, 『2017년 경제전망보고서(Jahreswirtschaftsbericht 2017)』.

(자료 수집 및 정리: 이소영 연구원)

일본

- 내각부, 2016년 4분기 GDP 1차 속보치 발표(2017.2.13.)⁹⁾
 - 2016년 4분기 실질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0.2%(연율1.0%), 명목GDP 성장률은 0.3%(연율 1.2%) 기록
 - (국내수요 증가) 민간소비는 음식 서비스 등의 증가와 야채, 의류 등의 감소에 기인해 -0.0%를 기록하였으며, 주택투자는 0.2% 증가를 기록하며 4분기 연속 증가
 - (공적수요 증가) 정부소비는 0.4% 증가로 2분기 연속 증가
 - (수출·수입 증가) 수출은 기업 서비스, 전자 부품 등의 기여로 2.6% 증가하며 2분기 연속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기업 서비스, 비철금속

7) 재무부예결산

<http://www.performance-publique.budget.gouv.fr/actualites/2017/situation-mensuelle-budget-etat-31-decembre-2016#.WKKpTVWLSuk>

8) 에너지경제부, 『2017년 경제전망보고서』, <http://www.bmwi.de/Redaktion/DE/Pressemitteilungen/2017/20170125-fuer-inklusive-wachstum-in-deutschland-und-europa-jahreswirtschaftsbericht-2017-der-bundesregierung-verabschiedet.html>

9) 내각부, 『2016(平成28)年10~12月四半期別GDP速報(1次速報値)』, 2017.2.13.

http://www.esri.cao.go.jp/jp/sna/data/data_list/sokuhou/files/2016/qe164/pdf/qepoint1641.pdf



등의 증가에 기인해 1.3% 증가로 5분기 만에
 증가율 기록
 - (GDP 디플레이터) 전기 대비 0.1%로 3분기 만

에 상승하였으며, 전년 동기 대비는 -0.1%로
 2분기 연속 감소 기록

〈표 5〉 2016년 4분기 실질GDP 성장률 1차 속보치(계절조정)

(단위: 전기 대비, %)

항목	2015년	2016년					2016년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기여도	4분기 연율환산
국내총생산(GDP)	-0.3	0.6	0.4	0.3	0.2	-	1.0
국내수요(내수기여도)	-0.3 (-0.3)	0.2 (0.2)	0.5 (0.5)	-0.1 (-0.1)	-0.0 (-)	- (-0.0)	-0.0 (-)
민간수요	-0.5	0.0	0.9	-0.1	0.0	(0.0)	0.0
민간최종소비	-0.6	0.4	0.2	0.3	-0.0	(-0.0)	-0.0
주택투자	-0.1	1.4	3.3	2.4	0.2	(0.0)	0.7
설비투자	0.5	-0.3	1.3	-0.3	0.9	(0.1)	3.8
민간재고증감 ¹⁾	(-0.1)	(-0.2)	(0.2)	(-0.3)	-	(-0.1)	-
공적수요	0.3	0.9	-0.7	0.0	-0.0	(-0.0)	-0.2
정부소비	0.7	1.4	-1.1	0.3	0.4	(0.1)	1.6
공적투자	-1.5	-1.1	1.1	-0.7	-1.8	(-0.1)	-6.9
공적재고증감 ¹⁾	(0.0)	(0.0)	(-0.0)	(-0.0)	-	(0.0)	-
재화·서비스 순수출 ²⁾	(0.0)	(0.3)	(-0.0)	(0.4)	-	(0.2)	-
수출	-0.8	0.9	-1.2	2.1	2.6	(0.5)	11.0
수입	-0.8	-1.1	-1.0	-0.2	1.3	(-0.2)	

주: 1) ()안은 국내총생산에 대한 기여도를 나타냄

2) 재화서비스 순수출=재화서비스 수출-재화서비스 수입

출처: 내각부, 「2016(平成28)年10~12月期四半期別GDP速報(1次速報値)」, 2017.2.13.

〈자료 수집 및 정리: 강성지 연구원〉

 영국

- 재무부, 추가경정예산안(Supplementary Estimates 2016-17)¹⁰⁾에서 본세출예산 대비 879억파운드 증가한 6,392억파운드의 추경예산을 편성

- 부처별 지출한도(DEL)는 본예산 대비 105억파운드 증가한 3,179억파운드, 연간관리지출(AME)은 769억파운드 증가한 2,622억파운드임
- 총 순현금소요액은 본예산 대비 28억파운드 감소한 4,795억파운드임

〈표 6〉 FY2016-17 추가경정예산

(단위: 백만파운드)

	2016-17 예산 (A)	2016-17 추경안 (B)	증감(B-A)
부처별 지출 한도 (DEL)	307,425	317,941	10,516
연간 관리 지출 (AME)	185,247	262,224	76,976
총순예산(Total Net Budget)	492,672	580,164	87,492
총비예산지출(Total Non-Budget Expenditure)	58,621	59,049	428
총지출(Total Resource and Capital in Estimates)	551,294	639,214	87,920
현금주의 조정 (Resource to cash adjustment)	-68,921	-159,670	-90,749
총순현금소요액(Total Net Cash Requirement)	482,373	479,543	-2,830

출처: 영국 재무부, Supplementary Estimates 2016-17

〈자료 수집 및 정리: 이소영 연구원〉

 미국

- 책임연방예산위원회(CRFB), 향후 8년간 주요 3개 신탁기금(HTF, SSDI, HI)의 지불불능 전망¹¹⁾
 - 주요 3가지 신탁기금이 지불불능에 임박한 재정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
 - 도로 신탁기금(HTF, Highway Trust Fund)
 - ☞ (현황) 현재 도로관련 연방지출은 정부의 가스 세입 및 기타 전용수익(other dedicated revenues)을 훨씬 초과, 의회에서 2008년

- 이후로 일반세입으로 신탁기금을 메꿔왔지만 의회예산처는 FY2021에 기금소진, FY2022에는 비용의 3분의 1 삭감 전망
- ☞ (정책방안) 휘발유세를 인상하여 인플레이션에 연동(chained CPI)하고 새로운 도로 지출을 30% 줄여 인플레이션에 연동하며 지출감소나 수입증가 혹은 둘을 병행함으로써, 도로 신탁기금의 구조적 불균형 해소
- 사회보장장해보험 신탁기금(SSDI, 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 Trust Fund)

10) 재무부, 추가경정예산안(Supplementary Estimates 2016-17)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590911/PU2028_Supplementary_Estimates_2016-17_print.pdf

11) 미국 책임연방예산위원회, <http://www.crfb.org/blogs/three-trust-funds-face-insolvency-next-eight-ye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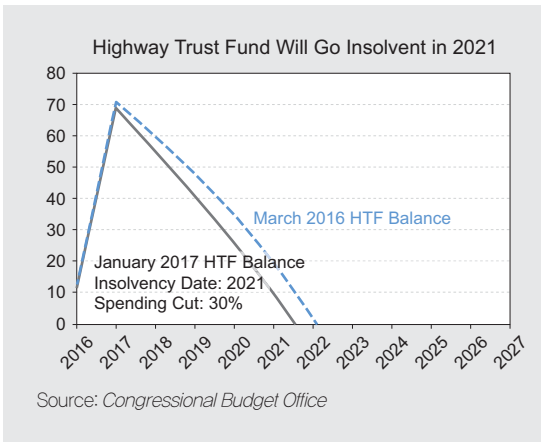
☞ (현황) 2016년 말에 지불불능이 전망되었으나 2015년 예산합의에서 지불불능 방지를 위해 노인·유족보험 신탁기금(OASD) 수익을 SSDI신탁기금으로 재할당(reallocation)하고 프로그램을 소폭 수정, 의회예산처는

재할당으로 FY2023까지 기금지불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정책방안) 세금 혹은 지출 옵션으로 지불능력 개선, 장애 프로그램의 비용의 간접적인 감축을 포함한 전반적인 개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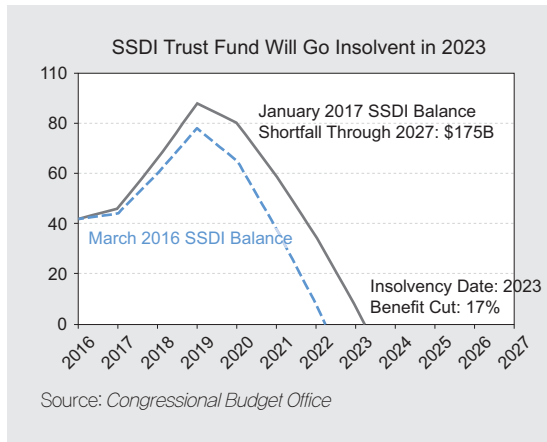
[그림 2] 도로신탁기금 전망

(단위: 십억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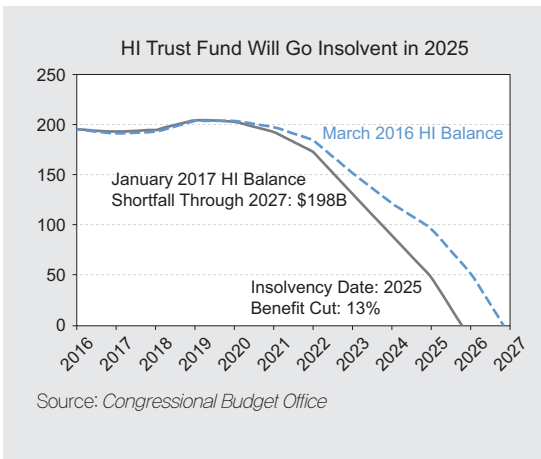
[그림 3] 사회보장장애보험 신탁기금 전망

(단위: 십억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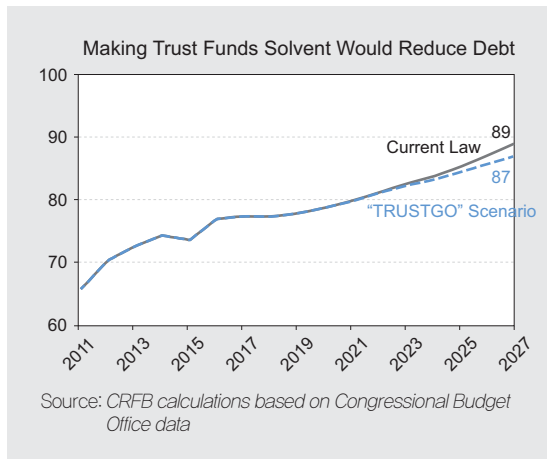
[그림 4] 메디케어 병원보험 신탁기금 전망

(단위: 십억달러)



[그림 5] 채무축소 전망

(단위: % of GDP)



출처: 미국 책임연방예산위원회

- 메디케어 병원보험 신탁기금(HI, Medicare Hospital Insurance Trust Fund)

☞ (현황) 메디케어의 일부인 병원보험 신탁기금(HI)은 2025년에 지불불능 전망, 도로신탁기금이나 장애보험신탁기금보다 크게 웃도는 연간 적자에 직면할 전망

☞ (정책방안) 정책입안자들의 세율인상, 메디케어 공급자에 대한 지급 감축, 수혜자의 비용 분담 인상 및 몇몇 조합을 통한 지불불능 모면

• 프로그램별 이러한 재정보호 및 채무상환 정책을 실시할 경우, 2027년 GDP 대비 채무를 2%p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미 하원 예산위원회, 적자 감축방안으로 경제성장 언급¹²⁾

• CBO가 1월에 발표한 자료¹³⁾에 따르면, 현행법 하에 수년간 소폭의 적자감소를 보이다가 이후 10년간 현저히 증가하여 2027년에 1조 4천억달러의 적자 전망

• 미 하원 예산위원회는 적자감소 및 연방예산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경제성장의 중요성을 언급
- 주요 정책방안으로 경제성장 촉진, 일자리창출 제고 및 균형예산을 위한 노력을 위한 세제, 규제개혁, 에너지생산 분야 확대, 혁신 등을 언급하고 있음

(자료 수집 및 정리: 강성지 연구원)

12) 미 하원 예산위원회, <http://budget.house.gov/news/documentsingle.aspx?DocumentID=394499>

13)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17 to 2027, 2016.1.24.



| 정책 흐름 |

- 1/4분기 재정조기집행 목표 초과달성
-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의결
-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선 방향 논의
- 「2017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수립
- 지출효율화로 4대 핵심분야에 중점 투자

1/4분기 재정조기집행 목표 초과달성

* 본 자료는 2017년 4월 6일 부처 공동으로 발표한 「1/4분기 재정조기집행 목표(31.0%) 초과달성」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 재정조기집행 1/4분기 목표인 87.4조원 대비 1.8조원 초과한 89.3조원 집행: (계획) 31.0% → (실적) 31.7%
- 지방재정 및 지방교육재정도 각각 집행목표 초과달성
 - * 지방재정: +7.4조원(26.0 → 30.3%), 지방교육: +1.0조원(28.4 → 33.1%)

- ① 정부는 내수부진, 통상현안 및 美 금리인상 속도 등 대내외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 작년 말 '17년 경제정책방향 수립 시('16.12.29) 확정된 1/4분기 집행계획 31.0%(87.4조원) 대비 0.7%p(1.8조원)를 초과 집행한 31.7%(89.3조원)를 달성하였다.

- 이를 통해 건설기성*이 회복세를 보이고 경기지수**가 개선되는 등 일부 가시적 성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건설기성(전년동월비, %): ('16.12)12.2 → ('17.1)13.4 → ('17.2)22.6

발주자별 건설기성(%), 1 → 2월: (민간)1.7 → 7.4, (공공)△6.0 → 11.2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16.12)100.5 → ('17.1)100.7 → ('17.2)100.8

**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16.12)100.6 → ('17.1)100.7 → ('17.2)100.9

- 중앙부처는 74.6조원을 집행하여 계획대비 1.9조원을 초과한 반면, 공공기관은 14.7조원을 집행하여 0.1조원 미달하였다.
 - 특히, 복지부, 미래부에서는 사업순서 조정, 집행시기 단축 등을 적극 추진하여 집행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1/4분기 재정집행 실적

구분	'17년 계획	1분기 계획(A)	1분기 실적(B)	차이(B-A)
[합계]	281.7	87.4 (31.0%)	89.3 (31.7%)	1.8 ¹⁾ (0.7%p)
• 중앙부처	233.8	72.6	74.6	1.9 ¹⁾
- 예산	192.7	60.7	62.4	1.7
- 기금	41.1	11.9	12.2	0.2
• 공공기관	47.9	14.8	14.7	△0.1

주: 1분기 계획, 실적의 ()는 연간계획 대비 집행률

1) 반올림 단수 차이

* (복지부) 보조사업 간 집행 진도에 맞춰 집행순서 조정 및 집행 독려

(미래부) 규모가 큰 사업 중심으로 조기집행 사업 추가 발굴 및 집행 독려

- 앞으로는 정부는 경기회복 모멘텀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계획(58.0%)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 경기회복에 대한 민간의 체감도가 높은 부문 중 조기집행 성과가 큰 사업 중심으로 사례 확산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② (지방재정 등) 지방재정은 1/4분기 점검결과 52.1조원을, 지방교육재정은 7.1조원을 집행하여 계획 대비 각각 7.4조원, 1조원을 초과 달성하였다.

* (지방재정) 1/4분기 계획 44.7조원(26.0%) → 실적 52.1조원 (30.3%)

(지방교육재정) 1/4분기 계획 6.1조원(28.4%) → 실적 7.1조원 (33.1%)

- 조기집행 10대 추진지침(17.2) 시달, 학교회계 전출금 조기교부 등 중앙과 지방 및 교육청 간 협업을 통해 조기집행을 추진하여 이번 목표 달성에 적극 협조하였다.

* 지방재정 1/4분기 집행률(%): ('13)24.8, ('14)25.0, ('15)22.7 ('16)29.9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의결

* 본 자료는 2017년 4월 3일 기획재정부 부서 공동으로 발표한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의결」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 재정수지는 경제지표 개선 및 세입기반 확충노력 등에 따라 GDP의 1%p 수준의 개선효과 달성
 - 통합재정수지: 16,9조원 흑자로 전환('15년 △0.2조원)
(GDP 대비 비율 1.0%p 개선, 전년 대비 +17.1조원)
 - 관리재정수지: 22.7조원 적자('15년 △38조원)
(GDP 대비 비율 1.0%p 개선, 전년 대비 +15.3조원)
- ◇ 국가채무(D1)는 전년(591,5조원, GDP 대비 37.8%) 대비 35.7조원 증가한 627,1조원(GDP 대비 38.3%)임
 - 세입실적 개선 등으로 예산(637.7조원) 대비로는 10.6조원 감소하였고, 전년 대비 국가채무 증가규모*도 1.4%p 축소되었음
 - * 국가채무 증가추이(조원, GDP 대비 %p) : ('14) 43.4 (+1.6) → ('15) 58.3 (+1.9) → ('16) 35.7 (+0.5)
- ◇ 발생주의에 의한 재무제표 결산결과, 국가 자산은 1,962.1조원, 부채는 1,433.1조원, 순자산은 529.0조원임

■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헌법과 국가회계법에 따라 작성된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해 심의·의결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총세입·총세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결과, 총세입은 345.0조원, 총세출은 332.2조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이 12.8조원 발생하였다.

• **(이월·불용)** 차년도 이월액은 4.8조원, 불용액*은 11.0조원으로 전년 대비 이월액은 1.2조

원 감소, 불용액은 0.2조원 증가하였다.

* 예산현액(예산액+전년도 이월액)-총세출-차년도 이월액

■ **(세계잉여금)** 국세수입 증가 등으로 세계잉여금(결산상잉여금-차년도 이월금)은 일반회계 6.1조원, 특별회계 1.9조원으로총 8.0조원 발생하였다.

•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지방교부세(금) 정산, 국가채무 상환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 특별회계 세계잉여금(19,396억원)은 각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처리 예정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처리순서 및 규모

(단위: 억원)

세계잉여금	① 지방 교부세(금) 정산	국가채무상환		④ 세입이입 등
		② 공적자금 상환	③ 채무 상환	
60,920	38,091	6,849	4,794	11,186

- **(기금)** 65개 기금의 수입액과 지출액은 각각 643.0조원으로 전년 대비 59.7조원이 증가하였다.

2016년 국가결산 세입세출 현황

(단위: 조원)

구분		'15년	'16년	증감	
세출 세입	회계 (일반·특별)	총세입(A)	328.1	345.0	16.9
		총세출(B)	319.4	332.2	12.8
		차년도이월액(C)	5.9	4.8	△1.2
		세계잉여금(A-B-C)	2.8	8.0	5.2
	기금	수입·지출	583.2	643.0	59.7

- **(재정수지)** 경제지표 개선 및 세입기반 확충노력 등으로 세수가 증가하여 GDP 대비 1% 수준의 개선효과를 달성하였다.

- 통합재정수지는 16.9조원 흑자로 전년 대비 17.1조원(GDP 대비 비율 +1.0%p), 예산 대비 14.4조원 개선(GDP 대비 비율 +0.9%p)되었다.

-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22.7조원 적자이나, 전년 대비 15.3조원(GDP 대비 비율 +1.0%p), 예산 대비 16.3조원 개선(GDP 대비 비율 +1.0%p)되었다.

*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 및 예방기금, 고용보험기금

- **(국가채무)** 중앙정부 채무는 전년(556.5조원) 대비 35.4조원 증가한 591.9조원(GDP 대비 36.1%)이나, 예산 대비(603.2조원)로는 11.3조원 감소하였다.

* 지방정부 채무 포함 국가채무(D1, 잠정치)는 627.1조원(GDP 대비 38.3%)

- 전년 대비 주요 증가요인은 일반회계 적자보전(31.2조원) 및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외평기금 예탁(12.0조원)증가 등이다.

2016년 재정수지 결산

(단위: 조원)

구분	2015년 결산(A)	2016년		증감	
		예산 ²⁾ (B)	결산(C)	전년 대비(C-A)	예산 대비(C-B)
1. 총수입	371.8	401.0	401.8	30.0	0.8
2. 총지출	372.0	398.5	384.9	12.9	△13.6
3. 통합재정수지(1-2)	△0.2	2.5	16.9	17.1	14.4
(GDP ¹⁾ 대비, %)	(△0.01)	(0.2)	(1.0)	(1.0%p)	(0.9%p)
4. 사회보장성기금수지	37.8	41.5	39.6	1.8	△1.9
(GDP 대비, %)	(2.4)	(2.6)	(2.4)	(0.0%p)	(△0.1%p)
5. 관리재정수지(3-4)	△38.0	△39.0	△22.7	15.3	16.3
(GDP 대비, %)	(△2.4)	(△2.4)	(△1.4)	(1.0%p)	(1.0%p)

주: 1) '16년 명목GDP(잠정, 한국은행): 1,637.4조원

2) 추경 기준

2016년 국가채무 결산

(단위: 조원)

구분	2015년 결산(A)	2016년		증감	
		예산(B)	결산(C)	전년 대비(C-A)	예산 대비(C-B)
◇ 중앙정부(A)	556.5	603.2	591.9	35.4	△11.3
(GDP ¹⁾ 대비, %)	(35.6)	(37.2)	(36.1)	(0.5%p)	(△1.1%p)
▪ 국채	551.5	598.8	587.5	36.0	△11.3
- 국고채권	485.1	528.4	516.9	31.8	△11.5
- 외국환평형기금채권	7.1	7.1	6.7	△0.5	△0.5
- 국민주택채권	59.3	63.3	64.0	4.7	0.6
▪ 차입금	3.3	3.9	3.9	0.6	△0.0
- 국고채무부담행위	1.7	0.5	0.5	△1.3	0.0
◇ 지방정부(B, 잠정) ²⁾	34.9	34.4	35.2	0.3	0.7
□ 국가채무(A+B, 잠정 D1)	591.5	637.7	627.1	35.7	△10.6
(GDP 대비, %)	(37.8)	(39.3)	(38.3)	(0.5%p)	(△1.0%p)

주: 1) '16년 명목GDP(잠정, 한국은행): 1,637.4조원
 2) 지방정부 채무는 지자체 결산이후 7월경 확정 예정

- **(재무제표)** 발생주의 국가결산 결과, 국가 자산은 1,962.1조원, 부채는 1,433.1조원이며, 순자산(자산-부채)은 529.0조원으로 전년 대비 34.0조원 감소하였다.
 - **(자산)** 1,962.1조원으로 전년(1,856.2조원) 대비 105.9조원 증가하였다.
 - **(부채)** 1,433.1조원으로 국채 발행(38.1조원)과

연금충당부채* 증가(92.7조원) 등으로 전년(1,293.2조원) 대비 139.9조원 증가하였다.

* 미래 지급할 연금액을 추정하고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산정
 - 연금충당부채 증가는 주로 할인을 하락*, 재직자 수와 수급자 수 증가** 등에 기인한다.

* 저금리에 따른 할인을 하락으로 총당부채 52.5조원 증가

2016년 자산·부채 현황

(단위: 조원)

구분		2015년	2016년	증감	
재무제표	자산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795.2	878.6	83.4
		토지·건물 등	1,061.0	1,083.5	22.5
		소계	1,856.2	1,962.1	105.9
	부채	국채·주택청약저축 등	633.3	680.5	47.2
		연금충당부채	659.9	752.6	92.7
		- 공무원연금충당부채	531.8	600.5	68.7
		- 군인연금충당부채	128.1	152.1	24.0
		소계	1,293.2	1,433.1	139.9
		순자산(자산-부채)	563.0	529.0	△34.0

** 재직자 수: ('15) 1,274 → ('16) 1,289천명
 연금수급자 수: ('15) 515 → ('16) 543천명

-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의 결산 검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 결산 결과는 2017년 예산편성 등 향후 재정운용에 활용하고,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2016회계연도 국가결산 주요 내용

1 세입세출

- **(총괄)** 총세입 345.0조원, 총세출 332.2조원, 결산상 잉여금은 12.8조원, 세계잉여금(결산상 잉여금-차년도 이월액)은 8.0조원

2016년 총세입과 총세출 결산 현황

(단위: 조원)

구분	총세입 (A)	총세출 (B)	결산 상잉여금 (A-B)	차년도 이월액 (C)	세계잉여금 (A-B-C)
합 계	345.0	332.2	12.8	4.8	8.0
일반회계	281.7	274.0	7.7	1.6	6.1
특별회계	63.3	58.2	5.1	3.2	1.9

주: 일반회계: 52개 중앙관서(조달청, 특허청은 특별회계), 특별회계: 18개

- **(총세입)** 345.0조원으로 예산(341.9조원) 대비 3.0조원 초과
 - **(일반회계)** 281.7조원으로 예산(279.4조원) 대비 2.2조원 초과
 - **(특별회계)** 63.3조원으로 예산(62.5조원) 대비 0.8조원 초과

- **(총세출)** 332.2조원으로 예산현액(348.0조원) 대비 95.5% 집행

- **(세계잉여금)** 8.0조원(일반회계 60,920억원, 특별회계 19,396억원)

-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교부세(금) 정산(38,091억원), 국가채무 상환(11,643억원), 세입이입 등 (11,186억원)에 사용 예정

*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각 개별법에 따라 해당 특별회계의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할 계획

2 기금 수입지출

-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65개의 수입·지출액은 각각 643.0조원

2016년 기금 수입·지출 결산 현황

(단위: 조원)

수입		지출	
내역	금액	내역	금액
자체수입	146.9	사업비	109.9
정부내부수입	193.1	기금운영비	2.2
차입금	124.9	정부내부지출	175.3
여유자금회수	178.1	차입금 원리금상환	123.4
		여유자금 운용	232.2
합 계	643.0	합 계	643.0

3 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는 16.9조원 흑자(GDP 대비 비율 1.0%)로, 전년(△0.2조원) 대비 17.1조원 개선

-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2.7조원 적자(GDP 대비 비율 △1.4%)이나, 전년(△38.0조원) 대비 15.3조원 개선

*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 및 예방기금, 고용보험기금

2016년 재정수지 결산

(단위: 조원)

구분	2015년 결산(A)	2016년		증감	
		추경(B)	결산(C)	전년 대비(C-A)	추경 대비(C-B)
1. 총수입	371.8	401.0	401.8	30.0	0.8
2. 총지출	372.0	398.5	384.9	12.9	△13.6
3. 통합재정수지(1-2)	△0.2	2.5	16.9	17.1	14.4
(GDP 대비, %)	(△0.01)	(0.2)	(1.0)	(1.0%p)	(0.9%p)
4. 사회보장성기금수지	37.8	41.5	39.6	1.8	△1.9
(GDP 대비, %)	(2.4)	(2.6)	(2.4)	(0.0%p)	(△0.1%p)
5. 관리재정수지(3-4)	△38.0	△39.0	△22.7	15.3	16.3
(GDP 대비, %)	(△2.4)	(△2.4)	(△1.4)	(1.0%p)	(1.0%p)

주: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이하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4 국가채무

- 국가채무(중앙정부)*는 591.9조원(GDP 대비 36.1%)으로 전년 대비 35.4조원 증가, 예산 대비 11.3조원 감소

*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영하는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

- 세입실적 개선에 의한 국고채 감소 등에 기인

- 지방정부 포함 국가채무(D1)*는 627.1조원(GDP 대비 38.3%)

* 지방정부 채무(35.2조원은 잠정치, 7월경 지방정부 결산 이후 확정 예정

2016년 국가채무 결산

(단위: 조원)

구분	2015년 결산(A)	2016년		증감	
		예산(B)	결산(C)	전년 대비(C-A)	예산 대비(C-B)
◇ 중앙정부(A)	556.5	603.2	591.9	35.4	△11.3
(GDP ¹⁾ 대비, %)	(35.6)	(37.2)	(36.1)	(0.5%p)	(△1.1%p)
■ 국채	551.5	598.8	587.5	36.0	△11.3
- 국고채권	485.1	528.4	516.9	31.8	△11.5
- 외국환평형기금채권	7.1	7.1	6.7	△0.5	△0.5
- 국민주택채권	59.3	63.3	64.0	4.7	0.6
■ 차입금	3.3	3.9	3.9	0.6	△0.0
■ 국고채무부담행위	1.7	0.5	0.5	△1.3	0.0
◇ 지방정부(B, 잠정) ²⁾	34.9	34.4	35.2	0.3	0.7
□ 국가채무(A+B, 잠정 D1)	591.5	637.7	627.1	35.7	△10.6
(GDP 대비, %)	(37.8)	(39.3)	(38.3)	(0.5%p)	(△1.0%p)

주: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이하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1) '16년 명목GDP(잠정, 한국은행): 1,637.4조원

2) 지방정부 채무는 지자체 결산이후 7월경 확정 예정

- 전년(591.5조원, GDP 대비 37.8%) 대비 35.7조원 증가, 예산(637.7조원, GDP 대비 39.3%) 대비 10.6조원 감소

5 재무제표

◇ 국가 재무제표는 발생주의 기준에 따라 정부 자산과 부채 등을 정리한 결과로서 기업의 연결 재무제표와 유사한 개념

* 54개 중앙관서 재무제표를 통합하고, 내부거래 제거 등을 통해 작성

- **(재무결산 결과)** 자산은 총 1,962.1조원, 부채는 1,433.1조원, 순자산(자산-부채)은 529.0조원으로 집계
- **(자산)** 전년 대비 105.9조원 증가한 1,962.1조원
 - 기금여유자금 증가 등으로 인한 유동·투자 자산 79.0조원, 건물 취득 등에 기인한 일반

유형자산 19.1조원 증가

- **(부채)** 전년 대비 139.9조원 증가한 1,433.1조원
 - 재정적자 보전 등을 위한 국채 발행잔액 증가(38.1조원)와 연금충당부채 증가(92.7조원)등에 기인

붙임 2 2016회계연도 국가결산 주요 내용

- 2016회계연도 재무제표상 부채는 1,433.1조원으로 전년 대비 139.9조원(10.8%) 증가
-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 발행잔액 증가(38.1조원) 등으로 국·공채와 차입금이 32.4조원 증가
- 충당부채 등 발생주의 부채는 107.5조원 증가
 -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가 92.7조원 증가하고, 주택도시기금 청약저축이 6.8조원 증가한 데 주로 기인

2016년 재무결산 현황

(단위: 조원)

구분	2015년(A)	2016년(B)	증감액(B-A)	비고
◇ 자 산(A)	1,856.2	1,962.1	105.9	
유 동 자 산	352.6	369.3	16.7	• 현금 및 예금 등
투 자 자 산	664.8	727.1	62.3	• 장기성예금, 유가증권
일 반 유 형 자 산	523.1	542.2	19.1	• 토지, 건물, 구축물 등
사 회 기 반 시 설	306.6	313.4	6.8	• 도로, 철도, 항만, 댐 등
무 형 자 산	1.2	1.2	-	• 소프트웨어 등
기타비유동자산	7.9	8.9	1.0	• 장기매출채권, 장기미수금
◇ 부 채(B)	1,293.2	1,433.1	139.9	
유 동 부 채	132.8	137.0	4.2	• 1년미만 국고채, 차입금 등
장 기 차 입 부 채	421.0	456.5	35.5	• 국고채, 공채, 차입금 등
장 기 충 당 부 채	707.9	805.9	98.0	• 연금·퇴직수당충당부채 등
기타비유동부채	31.5	33.7	2.2	• 장기미지급금(BTL 시설임대료)
◇ 순자산(A-B)	563.0	529.0	△34.0	

2016회계연도 재무제표상 부채 증감 요인

(단위: 조원)

	'15년(A)	'16년(B)	증감(B-A)
■ 부채 총계(1+2)	1,293.2	1,433.1	139.9
1. 국공채 등(①+②)	480.7	513.1	32.4
① 국·공채(a+b-c)	476.4	508.8	32.4
a. 국채	556.9	595.0	38.1
b. 공채	28.8	25.6	△3.2
c. 자기국·공채	109.3	111.8	2.5
② 차입금	4.3	4.3	-
2. 발생주의 부채(③+④)	812.5	920.0	107.5
③ 연금충당부채	659.9	752.6	92.7 ¹⁾
④ 기타부채	152.6	167.4	14.8 ²⁾

주: 1) 공무원연금충당부채(68.7조원), 군인연금충당부채(24.0조원) 증가
 2) 주택도시기금 청약저축(6.8조원), 퇴직수당충당부채 등 기타 발생주의 부채(8.0조원)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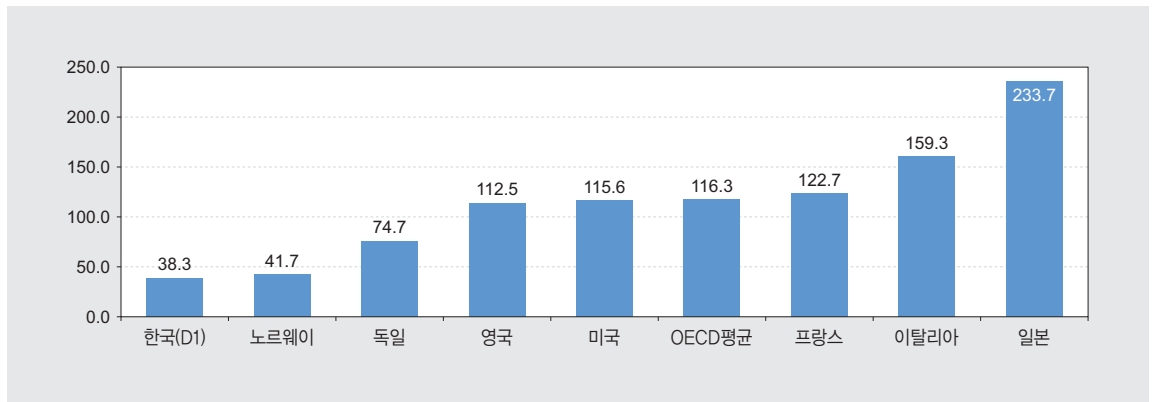
붙임 3 국가채무 국제비교 및 유형별 분류

- '16년 결산(잠정)결과 국가채무(D1) 비율은 30%대 후반(38.3%) 수준이며, 국제적으로 양호*한 수준
- (규모) OECD 국가 대비 낮은 수준
 - * 국가채무('16년, GDP 대비 %): 한국(D1, 38.3), OECD 평균(116.3)
 - ※ 국제비교에 사용되는 D2 기준의 '16년 실적은 집계 중

- (증가속도) 증가속도도 낮은 수준
 - * 우리나라 : ('07) 28.7% → ('16) 38.3%, 9.6%p 증가
 - OECD 평균 : ('07) 74.4% → ('16) 116.3%, 41.9%p 증가
- (평가) 국제기구*와 신용평가사(Moody's, S&P)도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높이 평가
 - * IMF('15.6.)는 '재정여력이 충분한 국가'로, OECD('15.11.)는 '추가적인 재정건전화 필요없는 수준'으로 평가

국가채무 국제비교('16년, OECD)

(단위: GDP 대비, %)



주: 한국은 D1 기준(D2 기준 43.2% ['15결산 기준]), OECD 회원국은 D2 기준
 출처: OECD Economic Outlook('16.11.)

■ 국가채무의 유형별 분류

유형	포괄범위	산출기준	활용
국가채무(D1)	중앙 및 지방정부의회계·기금	국가재정법, 현금주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일반정부 부채(D2)	D1+비영리공공기관	국제지침, 발생주의	국제비교(IMF, OECD)
공공부문 부채(D3)	D2+비금융기업	국제지침, 발생주의	공공부문 재정 건전성 관리

붙임 4 2016회계연도 결산자료 특이사항

1 국유 건물 중 재산가액이 가장 높은 것은?

- 2016년 말 현재 국가보유 건물 중 장부가액이 가장 큰 재산은 작년과 동일하게 ‘정부세종청사 1단계’ 4,716억원임
- 2013년 말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2단계’는 4,263억원으로 건물 중 2위를 차지

건물 장부가액 순위

(단위: 억원)

순위	건물명	장부가액		비고
		'16년	'15년	
1	정부세종청사 1단계	4,716	4,819	세종특별자치시
2	정부세종청사 2단계	4,263	4,354	세종특별자치시
3	국립아시아문화전당	3,008	3,043	광주광역시 동구
4	국회의원회관	2,264	2,36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5	정부대전청사	2,263	2,336	대전광역시 서구

2 국가 무형자산 중 재산가액이 가장 높은 것은?

- 2016년 말 무형자산 중 취득가액이 높은 것은 관세청이 보유한 4세대 국가종합정보망으로 1,007억원임

(단위: 억원)

순위	무형자산	취득가액	취득년월	부처명
1	4세대 국가종합정보망	1,007	'16.05월	관세청
2	차세대 국제행정시스템 (1단계, 2단계)	875	'15.07월	국세청
3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53	'06.12월	기획재정부
4	취업 후 학자금상환전산시스템	301	'11.12월	국세청
5	나라장터(G2B)시스템	172	'03.09월	조달청

3 고속국도의 재산 가치는?

- 2016년말 현재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10.9조원, 서해안고속도로 6.5조원 순으로 금액이 높음

고속도로 장부가액 순위

(단위: 억원)

순위	도로명	장부가액	비고
1	경부고속도로	109,480	서울~부산
2	서해안고속도로	65,391	서울~목포
3	남해고속도로	62,891	부산~순천
4	통영·대전 중부고속도로	53,659	하남~통영
5	당진·영덕 고속도로	52,716	당진~영덕

4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 중 가장 비싼 것은?

- 2016회계연도 결산결과 물품 중 가장 비싼 것은 기상청의슈퍼컴퓨터 4호기(누리과 미리)가 442억원임

물품 장부가액 순위

(단위: 억원)

순위	물 품 명	장부가액	부처명
1	슈퍼컴퓨터 4호기(누리과 미리)	442	기상청
2	국가종합정보망 운영서버 1호기	402	관세청
3	국가종합정보망 운영서버 2호기	120	관세청
4	엑스레이 화물검색기	73	관세청
5	3차원 스캐너	58	행정자치부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선 방향 논의

* 본 자료는 2017년 3월 31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10주년 학술 심포지엄」 주요 토론내용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토론자들은 경영평가 등 기존 공운법에 근거한 관리체계의 성과를 인정하고 보완방안을 모색해서 공공기관의 책임경영과 자율성, 투명성, 공공성 등을 제고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토론하였다.

- 또한 공공기관 지정과 유형분류, 내외부 지배구조 등 주요 이슈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바 관리체계 개선에 있어 전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 3월 31일(금)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행정학회가 주최하고 기획재정부가 후원하는 「공운법 10주년 학술 심포지엄」에서 「공운법 10년간 운영성과 점검평가 및 향후 나아갈 방향」, 「지정·분류 개선 방향」 등 6개 분과별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 학술 심포지엄의 주요 토론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토론 내용】

① 「공운법 10년간 운영성과와 향후 나아갈 방향」에서 홍길표 백석대 교수, 옥동석 국가인재개발원장, 이원희 한경대 교수, 조희순 연세대 교수, 정

기준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이 패널로 토론에 참여하였다.

- 공공기관의 관리 사각지대를 제거할 필요가 있으며, 상장공기업 등 시장의 자율적인 통제 여부를 기준으로 차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 또한 공공성 저해를 이유로 시장성을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직접 통제보다는 경영 계약 등을 통한 간접적인 관리를 제안하였다.
- 공공기관의 통합관리에서 맞춤형 관리, 직접관리에서 간접관리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이사회 권한 강화를 통한 자율적 통제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법정 요건에 부합함에도 공공기관에 누락된 기관이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과 함께, 상장 공기업에 대한 별도 관리체계가 필요하고, 기관 평가에 있어 이사회가 자체평가를 하고 정부가 메타평가를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공공기관에 국가 어젠다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공공기관 경영효율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공공성이 중시되는 기관과 효율성이 중시되는 기관을 차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발언하였다.

- 또한 과도한 제도화를 지양하고 가치, 신뢰, 규범에 기초한 운영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또한, 공공기관 관리 사각지대 해소, 스마트한 맞춤형 관리체계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 투명성 · 효율성 · 공공성 · 책임성 등 다양한 가치의 조화가 중요하며, 제도 변화뿐 아니라 운영을 통한 개선노력도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②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기능조정」에서 조임곤 조세재정연구원 공공센터 소장, 원숙연 이화여대 교수,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실장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순기능 감안시 경영평가는 보완해가면서 반드시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핵심기능 위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 또한, 지난 30년간 경영평가가 진화하고 진보된 점은 인정해야 하며, 평가의 속성상 피평가기관의 불만과 문제제기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발언하였다.

- 다만, 경영 평가의 주체, 대상, 궁극적 목적에 대하여 재정립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다.

• 공공기관은 환경변화에 신속히 변화하지 못하는 속성이 있어 주기적인 기능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 '15년 OECD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경쟁중립성 개념을 활용하여 시장기능이 침해되지 않도록 기능조정 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 기능조정에 있어서 공공성과 효율성 간의 조화, 사회적 효율성과 경제적 효율성 간의 관계 설정

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발언하고,

- 공공기관이 적절한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점검하면서, 기능조정에서 공운위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③ 「공공기관 지정 및 분류 개선방향」에서 김완희 前 조세재정연 소장, 박석희 카톨릭대 교수, 오재인 단국대 교수, 김완희 국조실 평가관리관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 공공기관 유형분류에 있어서 분류기준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으며, 유형분류 기준 재편은 구체적인 관리방식을 어떻게 차별적으로 적용할지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하였다.

• 공공기관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공기업은 상장형, 비상장형, 공사형으로 세부 유형을 구분하고,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연구기관형, 의료기관형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지정 및 유형구분에 따라 지배구조가 상이하게 적용되므로 중요한 이슈라고 강조한 후, 공공기관의 명확한 정의와 자체수입비율 등 객관적 기준과 함께 공공기관의 목적과 성격을 반영한 지정이 필요하다고 발언하였다.

④ 「공공기관 외부 지배구조 운영성과와 개선방향」에서 최경규 동국대 교수, 이종욱 신구대 교수, 조경호 국민대 교수, 엄태호 연세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하였다.

•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가치사슬(value chain)과 공공기관의 역량과 거래비용 등을 감안하여 기능조정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하고,

- 공운위를 상설화하기보다는 거래소(KRX) 산하의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지배구조평가시

스텝 등을 참고하여 내부지배구조를 규율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 한국의 공공기관 외부지배구조는 역사와 변화과정에 있어 특수성이 인정되며 향후 공운법 개정 논의 시에는 외부 지배구조의 책임과 권한, 기능과 역할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과 공론화를 언급하였다.

⑤ 「공공기관 내부 지배구조 운영성과와 개선방향」에서 조임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박진 KDI 교수, 오철호 숭실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 공공기관 임원 임기가 짧아 장기적 비전 설정 및 계획수립이 어려워 단기적·가시적 성과에 편향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임원 임기 연장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 공공기관의 자율성·책임성 강화의 핵심 수단인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주무 부처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정부이사 제도를 부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 또한, 내부 지배구조의 문제는 대부분 법제도상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임을 환기하고,
 - 개별 사항에 따라 일일이 개선하는 것보다는 내부지배구조의 목적을 분명하게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도록 전체적 관점에서 실질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국민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 안정적 공공기관 운영을 위해 임원의 임기 연장이 필요하며 임원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수 축소 등도 바람직한 개선방향이라고 언급하였다.

⑥ 「마무리 종합 토론」에서 이용걸 세명대 총장, 광채기 동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순애 경영평가단장, 이상철 부산대 교수, 조규홍 기획재정부 재정관리

관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 급격한 법·제도의 변경보다는 점진적 제도 개선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발언하고, 금융공업·소규모 기관 등에 적합한 경영평가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또한 임원 선출제도를 단순화하고 공운위의 위상·역할 재정립도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 기능조정은 공정성의 정도, 경쟁 가능성, 사회편익 크기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하되 경영평가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였다.
- '07년 공운법 제정을 통해 체계적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개선 등 개혁성과를 창출한 것을 높게 평가하였다.
 - 향후 공공기관의 책임경영과 자율성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논의가 필요하고 지배구조 개선, 경영평가 개편 등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 그간의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를 공운법에 반영하고 현행 공공기관 관리체계의 근본적 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후,
 - 오늘 논의된 내용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를 거쳐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017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수립

* 본 자료는 2017년 3월 28일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발표한 「2017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수립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 '17.3.28.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2017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
- ◇ 기획재정부는 3월 말까지 동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 말까지 조세지출 건의서 및 평가서를 제출받을 계획

- 정부는 '17.3.28.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2017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함
 -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기획재정부 장관이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하는 조세특례 및 제한에 관한 계획으로서,
 - 조세지출 현황, 운영성과 및 향후 운영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각 부처가 조세특례에 대하여 신규 건의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
- 「2017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2016년 조세지출 현황 및 운영성과
 - '16년 국세감면액(추정)은 36.5조원 수준이며, 지속적인 비과세·감면 정비 등으로 국세감면율*은 하락 추세

* 국세감면율(%): ('13)14.3, ('14)14.3 ('15)14.1, ('16 추정) 13.1, ('17 전망)13.2

[국세감면율=국세감면액/(국세감면액+국세수입총액)]

- '16년에는 비과세·감면을 지속 정비*하되, 신성장산업·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 등에 대한 지원은 강화**

* 대기업 R&D 세액공제 축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재설계 등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개편, 세제지원 대상 서비스업종 확대 등

② 2017년도 조세지출 운영 방향

- **(운영원칙)** 조세지출의 예측가능성·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조세지출 신설은 일자리 창출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
- **(예비타당성조사·심층평가)** '17년도 조세지출 예비타당성조사 및 심층평가를 차질없이 수행하여 세법개정안에 반영
 - * '15년부터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 조세특례 도입시 예비타당성조사,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 조세특례 일몰기한 도래시 심층평가를 의무화
- **(성과관리 체계 정비)** 예비타당성조사·심층평가·부처 자율평가를 내실화하고, 조세지출 내역의 정확성을 제고
- **(분야별 운영방향)** 고용·투자·R&D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되, 효과성 분석을 통해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지출효율화로 4대 핵심분야에 중점 투자

* 본 자료는 2017년 3월 28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에서 발표한 「내년도 예산, 민생안정과 미래 대비를 위해 지출효율화로 4대 핵심분야에 중점 투자, 주요 토론내용」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정부는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3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 하였음
- 예산안 편성 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2018년도 예산안 편성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됨

【재정운용 여건】

- 내년도 국내 경제는 세계경제 회복세, 정책효과 등으로 수출 및 내수가 점차 개선되며 완만한 성장세가 전망되나,
 - 기업구조조정, 가계·기업부채 부담 등은 위험 요인
- 세수는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등은 안정적 세입 확보를 제약할 가능성
 - 아울러, 의무지출 증가, 미래 대비 재정소요 증가 등 세출 소요 확대로 지속적인 재정효율화 노력이 필요한 상황

【재원배분 중점】

- ① 일자리 창출·양극화 완화·일가정 양립 우선 지원
 -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사업 및 청년 창업 지원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 강화

- 저소득층·취약계층의 소득기반 및 일자리 지원 확대로 양극화를 완화하고, 직장어린이집 지원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 도모

② 4차 산업혁명·신흥시장 진출·신산업 투자 강화

-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핵심 기술개발, 인력양성, 인프라 조성 등 투자 확대
- 동남아·중남미 등 신흥시장 진출 지원, 유망기업 발굴 및 육성 등을 통해 수출역량 제고

③ 국방 투자·치안서비스·재난 예방으로 안심사회 구현

- 북한 핵·미사일 등 비대칭위협에 대비한 핵심 전력 투자 및 테러 대비 등 치안서비스 확충
- 미세먼지 등 환경위해 대응 및 지진·가축전염병·신종 감염병 등 다양한 재난 대비 강화

⇒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대응, 저출산 극복, 양극화 완화' 4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적·선제적 투자 확대

【재정운용 전략】

⇒ 4대 핵심분야 투자 확대를 위해 10대 재정운용 전략을 활용하여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

방안 1

유사중복 및 의무지출 철저한 관리로 효율성 제고

- ① 유사중복 사전차단 등 신규사업 관리 강화
 - 신규사업 요구 시 관계부처의 유사중복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을 의무화
- ② 의무지출 적정소요 점검
 - 의무지출은 불용액 규모, 부정수급 사례 등을 감안한 적정 소요를 산정하고, 신규사업은 증장기(10년) 재정소요 점검

방안 2

수요자 및 성과 중심 사업재편으로 효과성 제고

- ③ 부처간막이를 해소하는 융합예산 편성
 - 대학창업, 관광, ODA 등 3대 분야에 대해 관계 부처간 사전협의(4~5월)를 거쳐 수혜자 중심의 융합예산 편성
 - * 시범사업 효과, 부처 협업정도 등을 감안하여 향후 사업 확산 추진
- ④ 주요 재정사업을 성과중심으로 재편
 - 일자리, 수출, R&D 등 3대 분야는 심층평가 등을 통해 정책 효과를 검증하고, 성과가 높은 사업 위주로 투자

방안 3

촘촘한 사업관리로 재정누수 방지

- ⑤ 보조사업 전면 점검
 - 전체 보조사업에 대해 연장평가 및 부처 자체 사전점검('17년 연장평가 미대상 보조사업)을 실시
 - * 각 부처는 지속 지원, 감축, 폐지 등을 구분하여 요구
- ⑥ 출연사업 관리 강화
 - 1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사전 적격성 심사 도입, 특별한 노력을 통해 자체수입 확대 시 인센티브 제공 등
- ⑦ 용자사업 관리체계 개선
 - 사업별로 복잡·다양한 용자조건을 개선하고, 공통지침 마련
- ⑧ 대규모 사업의 연계시스템 강화
 - 예타-총사업비 관리범위를 일치시키고, 타당성재조사 실시기준을 사업규모별로 차등화*
 - * (현행) 총사업비 20% 이상 증가 → (개선) 사업규모별 15~20% 차등화

방안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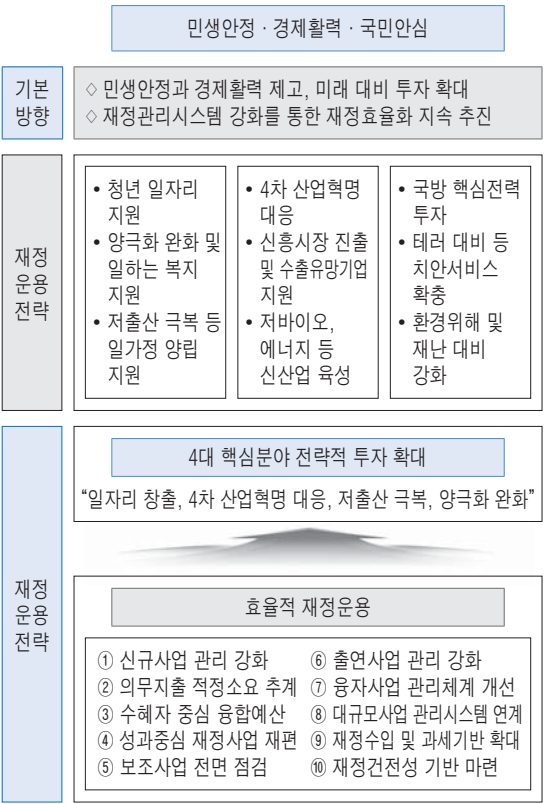
재정건전성 기반 마련

- ⑨ 재정수입 및 과세기반 확대
 - 재정외자금의 국고 편입*, 전문기관 활용을 통한 장기·고액 체납액 감축 등 재정수입 기반 강화
 - * 경륜·경정 공익사업적립금, 종독예방 치유부담금 등
- ⑩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
 - 4대 연금을 중심으로 장기재정추계(70년) 실시하고,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채무·수지 준칙 등 마련

【향후 계획】

- 이번 지침은 3.31일까지 부처에 통보될 예정이며, 각 부처는 예산요구서를 5.26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
 - 기획재정부는 부처협의를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18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9.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
- 또한, 동 지침은 중앙정부, 지자체 및 공공부문이 2018년 예산안 편성시 준수 또는 준용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됨
 - * 보다 구체적인 사업별 절차, 작성요령, 각종 기준·단가 등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통해 별도 배포 예정

참고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



재정포럼

2017년 4월호 통권 제250호

- 발행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발행인 /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편집위원 /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명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원종학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강성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이동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한중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담당연구위원 / 김준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 편집·제작 / 최병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책임전문원)
신지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문원)

■ 월간 재정포럼

2017년 4월 17일 발행 / 제21권 제4호(통권 제250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세종라00007
발행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 414-2130~2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편집디자인 / 상일인쇄(주) TEL: (02) 2269-6770

■ 인쇄 / 상일인쇄(주) TEL: (02) 2269-6770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정기구독회원이 되시면

원하시는 곳에서 매달 책을 받아보시게 되며, 도중에 책값이 오르더라도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우송료는 본원이 부담하며 1년 구독 시 두 달치의 책값이 절약됩니다.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셔서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044) 414-2114
- FAX: (044) 414-2509
- E-mail: pub@kipf.re.kr
- 주소: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지원팀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 지로이용: 본원 소정의 지로용지나 은행 비치 지로용지(지로번호 6923437)를 이용하십시오.
- 온라인 입금: 우리은행 가락중앙지점
 - 계좌번호: 441-05-000011
 - 예금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